

한 눈에 보는  
OECD 사회지표 2005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10s

20s

30s

40s

50s

60s

70s

80s

OECD



Society at a Glance-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은 영어와 불어로 OECD에서 발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 원본의 저작권은 OECD에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은 파리의 OECD와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에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문과 일치 여부는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Originally published by the OECD in English and French under the titles:

English title: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French title: Panorama de la société: Les indicateurs sociaux de l'OECD Edition 2005

© 2005 OECD

All rights reserved.

© 2005 : OECD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ety Policy for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OECD, Paris.

The quality of the Korean translation and its coherence with the original tex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 OECD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한 눈에 보는 OECD 사회지표 2005**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지구촌화(globalisation)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을 역점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30개 민주정부가 함께 일하는 유일한 포럼이다. OECD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정보경제 및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발전과 관심사에 대응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리고 국내정책과 국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장치(setting)를 제공한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다. 유럽공동체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도 OECD 작업(work)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conventions), 지침(guidelines), 기준(standards)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에 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이 보고서의 원본은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다. 여기서 표현된 견해와 채택된 논의가 OECD와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제목으로 프랑스어 판이 있음 :

**Panorama de la société**

LES INDICATEURS SOCIAUX DE L'OCDE

ÉDITION 2005



## 역자 서문

OECD는 2001년부터 격년으로 회원국의 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핵심지표를 ‘Society at a Glance’로 요약하여 출판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말로 처음 번역되는 ‘Society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5’는 Society at a Glance의 세 번째 판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건강, 단합이 다소간 개선되는지 악화되는지에 관한 계량적 근거에 대하여 날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번에 ‘Society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5’를 ‘한 눈에 보는 OECD 사회지표’로 이름 하여 발간하게 된 것은 2005. 9월 OECD와 아시아 지역 비회원국간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시아 국가에 대한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지원과 함께 OECD 주요 성과물에 대한 우리말 번역사업도 하고 있는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RCHSP)로서 매우 의미 있고, 기쁜 일이라 할 수 있다.

번역작업을 하면서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정보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읽기 편하게 하고자 여러 번에 걸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문맥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쓰면서도 번역 하기 어색하거나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궁금할 수 있는 용어, 복합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용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붙여 놓았다.

이 번역은 RCHSP의 임달오 책임연구원 책임 하에 최재식 책임연구원이 전문번역을 담당하였고, 고경환, 송석수, 배성일, 최윤정 책임연구원이 분야별로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윤석명 연구위원께서 큰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자문과 조언을 주셨다. 원고의 교정 및 편집에 박소진, 신수아 연구원이 수고하였고, 그리고 한상래 부소장, OECD의 최종균 과장, Willem Adema 박사도 많은 지도를 주셨다.

아무쪼록 이 책이 OECD 국가의 사회복지분야 주요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및 발전과 관련분야의 정책담당자, 연구자, 종사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2006년 8월 31일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임 달 오  
소 장 이 영 호

# 서 문

**이** 책은 OECD가 사회지표의 요약본으로 격년 발간하는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의 세 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다소간 불평등해지고 있는지, 건강해지고 있는지 또는 통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가하고 있는 계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판은 2001판과 2002판에 있는 지표 일부를 업데이트하였고, 주관적 웰빙 측정을 처음으로 넣는 등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였다.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지표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OECD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www.oecd.org/els/social/indicators](ht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 이 보고서는 2005.3.31-4.1일까지 개최된 OECD 사회정책 장관회의의 논의사항을 알리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OECD(2005) 보고서, “기회의 확장 - 어떻게 하면 사회정책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Extending Opportunities -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s Us All)의 분석내용을 보완한다([www.oecd.org.socialmin2005](http://www.oecd.org.socialmin2005) 참조).

이 보고서는 Marco Mira d'Ercole가 David Dowey, Maxime Ladaique와 협력하여 준비하였다.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OECD 사회정책과 내부와 외부의 많은 사람의 공헌 없이는 완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Willem Adema, Galle Balestat, Anna d'Addio-Devaux, Manfred Huber, Herwig Immervoll, Gaetan Lafortune, Monika Queisser, Noura Takrouri, Cecile Thoreau, 그리고 Edward Whitehouse가 포함된다. OECD 사회정책과장 Mark Pearson이 이 프로젝트의 개발을 주도하였다. 이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 책임 하에 출판되었다.



# [ 목 차 ]

<b>본문 요약</b> .....	7
Part I. 일러두기 .....	11
1. 사회지표의 목적 .....	12
2. OECD 사회지표의 기본 틀 .....	12
3. 지표의 이용 .....	14
4. 지표의 기술 .....	15
5. 이 책에 포함된 사항 .....	19
참고문헌 .....	20
Part II. OECD 사회지표 .....	21
GE1. 1인당 국민소득 .....	22
GE2. 연령-부양비 .....	24
GE3. 출산율 .....	26
GE4. 외국인파 외국출생인구 .....	28
GE5. 결혼과 이혼 .....	30
SS1. 고용 .....	32
SS2. 실업 .....	34
SS3. 실직가구 .....	36
SS4. 취업모 .....	38
SS5. 실업급여 .....	40
SS6. 최저생계급여 .....	42
SS7. 교육수준 .....	44
SS8. 퇴직연령 .....	46
SS9. 청년실업 .....	48





**Table of Contents**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EQ1. 상대빈곤 .....	50
EQ2. 소득불평등 .....	52
EQ3. 아동빈곤 .....	54
EQ4. 노인소득 .....	56
EQ5. 공공사회지출 .....	58
EQ6. 민간사회지출 .....	60
EQ7. 총사회지출 .....	62
EQ8. 노령연금대체율 .....	64
EQ9. 연금약정 .....	66
HE1. 기대여명 .....	68
HE2. 건강보정기대여명 .....	70
HE3. 영아사망 .....	72
HE4. 국민의료비 .....	74
HE5. 장기요양 .....	76
CO1. 주관적 웰빙 .....	78
CO2. 사회적 고립 .....	80
CO3. 단체참여 .....	82
CO4. 10대 출산 .....	84
CO5. 약물이용과 관련사망 .....	86
CO6. 자살 .....	88

# 본문 요약





**여**러 다른 사회의 웰빙(well-being)상태에 대한 논의는, GDP와 1인당 GDP 수준을 살피는 것과 같이 흔히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 물론 경제적 자원의 많고 적음이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하지만,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발전을 측정하고, 가능한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여러 국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표 또한 다양할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건강, 결속이 다소간에 악화 또는 완화되고 있는가와 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측면의 계량적 근거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격년으로 발간되는 사회지표에 대한 요약본이다. 이번 판은 이전 판의 지표를 업데이트한 것도 있고, 연금약정(pension promises), 최저생계급여(benefits of last resort),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같이 새로이 추가된 것도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지표는 두 가지 주요 이슈: 사회개발 관점에서 OECD 국가가 얼마나 진보되었는가; 그리고 이 진보가 어느 정도 정부 또는 사회기관의 의도적 사회정책의 결과였는가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선정되었다. 후자가 전자보다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비록 관련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해 두 가지 이슈 모두 어렵기는 하지만). 정책목표(예: 실업) 영역의 사회발전 양상에 관한 지표를 보고, 그 지표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변화가 어느 정도 정부정책의 결과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투입된 자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 결과가 투입비용을 정당화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 국가간 비교는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해 준다. 예를 들면 지표는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과연 빈곤이 완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단순한 비교는 왜 어떤 국가의 성과가 다른 국가보다 나쁜 지를 설명할 수는 없다. 더구나, 해결방안 제시는 더욱 할 수 없지만 어디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는 밝혀 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광범위한 지표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눈에 보는 사회’는 지표를 다섯 개 주요 영역으로 묶었다. 첫째는 사회정책이 적용되는 전체 환경(예: 인구구조)에 대한 배경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지표는 통상적으로 사회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단기 또는 중기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전체인구 중 노인의 비율은 정책이 노인의 생활수준과 그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표로는 1인당 국민소득; 연령-부양비; 출산율; 외국인과 외국출생인구; 결혼과 이혼이 있다.

나머지 네 영역은 사회정책의 주요 목표, 즉 자활(self-sufficiency), 형평성(equity), 건강과 사회 통합(health and social cohesion)을 반영하도록 선정되었다. 이들 각 영역에는 두 가지 주요 지표가 포함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사회적 상태” 지표(indicators of “social status”)로 분류함으로써, 정책에서 대상으로 삼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다양한 성과(실업, 빈곤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대응” 지표(indicators of “societal responses”)로 분류함으로써, 사회가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 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후자는 정부정책의 입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비정부단체의 활동도 포함한다. 비록 정의상 차이와 이용가능 자료의 상이함으로 국가간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는 하나 대응지표를 상태지표와 비교하면 대략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 더구나 좋은 질의 사회적 대응지표는 사회적 상태지표보다 적다.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지표들은 하나 이상 여러 영역에 관련된다: 예를 들면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통합, 자활, 건강 모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각 영역의 특정 지표를 상술하였고, 다른 곳에 수록한 관련 지표는 주석 처리하였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는:

- 자활 관련: 고용; 실업; 실직가구; 취업모; 교육수준; 퇴직연령; 청년실업(사회적 상태); 그리고 실업급여; 최저생계급여(사회적 대응)
- 형평성 관련: 상대적 빈곤; 소득불평등; 아동빈곤; 노인소득(사회적 상태); 공공사회지출; 민간사회지출; 총사회지출; 노령연금대체율; 기대연금소득(사회적 대응)
- 건강 관련: 기대여명; 건강보정기대여명; 영아사망(사회적 상태); 그리고 국민의료비; 장기요양(사회적 대응)
- 사회통합 관련: 주관적 웰빙; 사회적 고립; 단체참여; 10대 출산; 약물이용과 관련사망; 자살(사회적 상태)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각 이슈에 관하여 본문에서 관련 지표의 범위와 정의를, 각 기초자료에서 무엇을 도출할 수 있는 지, 또한 있다면 무슨 측정상 문제가 있는지도 기술하였다.









**PART I**

# 일 러 두 기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 1. 사회지표의 목적

이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 주요 문제에 답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주고자 한다.

- ▶▶ 사회발전에 있어서 OECD 국가들은 어떠한 진보를 하였나?
- ▶▶ 사회발전을 심화시키는데 있어 사회적 중재는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이슈 전반에 관한 지표를 필요로 한다. 사회발전이 보건, 교육,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필요로 한다면, 이 지표들은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의미가 제기된다. 사회는 보통 정부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었나 하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첫 단계는 사회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의 변화를 이에 소요된 자원의 규모와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이 비교가 특정 사회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지표는 심층적인 조사가 어디서 필요한지를 밝힐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지표는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가 사회적 성과 또한 좋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표가 왜 성과가 나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OECD 사회지표의 기본 틀

이 책에 사용된 구조가 사회통계의 수집과 발표를 위한 완전한 틀에는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지표를 일차원적으로 단순 나열만 한 것은 아니다.

OECD는 사회영역외의 지표에 관하여 그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다른 접근방법을 따라 왔다. 이러한 경험은 이 책에서도 지침이 되었다. 예를 들면, 한 눈으로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OECD, 2004b)에서 OECD 지표는 내용(context), 투입(inputs), 산출(outputs)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과학과 기술에 관한 OECD 지표(OECD, 2003)는 지식의 생성과 전달; 정보화 사회; 경제적 세계화; 생산성과 경제구조라는 네 가지 주요 표제에 따라 묶었다.

OECD 환경지표(OECD, 2001)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sup>1</sup>으로 알려진 기본 틀에 기초한 다른 방법을 따랐다. 이 기본 틀에서 인간 활동은 환경에 압력을 주고, 천연자원의 질과 양 그리고 환경조건에 영향을 미치고(상태), 사회로 하여금 환경적, 일반적 영역별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도록 촉진한다(사회적 대응). PSR들은 이러한 연계를 밝히고, 의사결정자와 일반 사람이 환경적 문제와 다른 이슈간 상호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압력지표는 관련되는 영역별 활동(예: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과 이와 관련있는 오염, 쓰레기 발생, 자원사용을 포함한다. 환경의 상태지표는 대기, 수질, 토양의 질과 생태계의 건강 척도이다. 대응지표의 예로는 환경지출과 환경세와 같은 환경목적을 위한 정책중재의 정도에 대한 척도를 들 수 있다. PSR접근방법은 정부와 사회가 하는 일(대응지표)과 의도하는 변화의 대상(상태 및 압력 지표)을 연결시킨다.

사회지표에 관한 이 보고서는 유사한 방법을 따른다. 지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 **사회환경(social context).** 적어도 단기 또는 중기에는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 변수이다. 그렇지만 사회정책이 입안되는 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체인구 중 노인의 비율은 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노인의 생활수준과 같은 사회적 결과 및 그 비용에 특정 정책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규정한다.
- ▶▶ **사회상태(social status).**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를 기술하는 지표이다. 선택된 지표는 해석이 쉽고 분명한 것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빈곤율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을 원한다.
- ▶▶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 사회는 사회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태도뿐 아니라, 민간과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에 관한 지표를 포함한다. 사적연금의 발전이나 노인과 아동을 돌보기 위한 개인과 가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각 사회지표가 위에 기술된 세 그룹의 하나로 분류되었지만, 환경과 상태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이 어떤 국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사회정책환경의 일부분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가족해체는 어떤 국가에서는 공공정책의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명확한 정책적 관심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지표를 분류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 2.1. 자료에 대한 고려

OECD 30개 회원국은 통계수집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 지표를 선정함에 있어 모든 국가에 가능한 지표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이 원칙을 얼마나 벗어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 책에 제시된 지표는 국가간 절대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조건을 준수할 경우, 완전한 국가간 표준을 벗어나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소득분배와 빈곤에 관한 대부분의 지표는 제외될 것이다. 가능한 한 독자에게 자료의 성격이나 잠재적 문제점을 경고할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책에서는 적어도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해당 가능한 지표만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데이터는 흔히, 연령, 가족 형태, 성별과 같은 하위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가능한 분류의 형태(예: 개인과 가구별 특성)는 지표에 따라 다르다. 하위 지역단위나 행정단위에 따른 지표는 이 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단일 단위로 기록하려는 시도 역시 하지 않았다, 즉 사람수, 통화단위, GDP 비율 등이 혼용되었다.

### 3. 지표의 이용

사회환경 및 사회상태 지표는 전체인구의 사회조건을 기술한다. 사회상태 지표는 사회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의 특정 측면(dimension)을 측정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응지표는 사회정책 중재의 규모와 본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한다. 대응지표와 상태지표를 비교하면 정책의 효과성을 일차적으로 알 수 있다.

사회환경지표(social context indicators)는 정책의 효과성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표는 정책적 측면과는 무관하게, 국가간 사회적 상태 차이의 일부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사-외생 변수(quasi-exogenous)를 계량화한다; 이러한 지표의 목적은 국가간에 공공정책이 시행되는 환경의 차이를 독자에게 알려준다. 상태 및 대응지표와 달리, 사회환경지표가 언제나 분명하게 “좋고” 또는 “나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편부모 가구수에 있어 국가간 차이는 비록 모든 국가에서 사회정책 결정자는 그 파급효과에 대응하여야 하지만, 문화적 요인의 반영일 수도 있다.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회지표는 담당하는 정책분야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목표를 둔다.

- ▶ 자활(self-sufficiency)의 강화는 사회정책의 기본 목표로서 사회정책 장관회의의 성명서(OECD, 1999a)에서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개인과 가족의 자활은 경제와 사회에 능동적 참여, 그리고 일상생활의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증진된다.
- ▶ 여기서 형평성(Equity)은 대개 결과로서 사회 및 노동시장에서 불리함 극복, 기회의 균등 및 개인의 자율 증진을 모색하는 정책을 말한다. 결과의 형평성은 주로 가구의 가용자원으로 측정한다.
- ▶ 보건정책의 기본목표는 국민의 건강상태(health status)의 향상이다. 이는 초점이 단지 질병 및 그 치료만이 아니라, 사망과 발병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을 포함한다.
- ▶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국가 사회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자주 대두된다. 그렇지만 사회정책의 목표와 상관있는 다양한 병리는 사회적 통합의 결여 상태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범죄, 수감, 자살, 노사분규, 가족해체가 해당된다.

사회적 대응이 사회정책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응지표는 여러 부류에 동시에 속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적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통합, 자활, 건강의 지표이다. 마찬가지로 마약복용은 사회적 결속 결여의 신호인 동시에 열악한 보건 상태이기도 하다. 지표가 여러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사회정책에서 일만은 아니다. 본 내용에서는 각 부류에 지표를 반복 수록하지 않고, 네 부류 각각에 관련된 지표를 제시한다. 이하, 각 지표에 부여된 괄호 안의 약자(예: GE1)는 (아래 표와 같이) 정책분야나 지표의 부류를 나타내는데 쓰이고, 지표 옆 숫자는 참조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지표의 이름과 약자는 이전 판의 ‘한 눈에 보는 사회’와는 다르지만 다루는 분야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였다.

## 4. 지표의 기술

모든 선정된 지표에 대해, 정의와 측정에 관한 일반적 정보와 주요 자료를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표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은 다른 OECD 출판물에 정기적으로 수록된다. 여기에 소개된 대부분의 지표는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되었고, 흔히 다른 국제기구(예: 노동력 통계,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의 협조 하에 이용된다. 시설 거주 노인에 관한 정보와 같은 다른 지표는 필요에 따라 수집되었다. 본 보고서 준비를 위해 새로운 대규모 데이터 수집 활동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태에 비해 사회적 대응에 속하는 양질의 지표가 적다. 이는 민간사회지출, 그리고 사용자와 비정부단체(NGOs)에서 제공하는 사회급여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가구수와 같은 공공 및 민간 활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늘리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1. 상황지표(Context indicators)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지표를 비교할 때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또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되기 쉽다. 이러한 것은 보다 넓은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OECD 국가간 국민소득은 차이가 있다. 소득과 건강 간에 관련이 있다면, 사회적 대응에 상관없이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 비해 건강수준이 높을 것이다. 소득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잘사는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 비해 보건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할 것이다(GDP 대비). 이것은 건강수준과 의료비 지출의 지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표를 해석할 때 데이터 배경의 일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판물에 포함된 몇몇 지표를 해석하는 데에 많은 상황지표가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보호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GE1)뿐만 아니라 연령-부양비(GE2), 출산율(GE3), 외국인과 외국출생인구(GE4), 그리고 결혼과 이혼(GE5)인 것이 사실이다. 상황지표는 사회정책의 네 가지 기본 목표인 형평, 자활, 건강, 사회통합 중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국민소득을 제외하고 선정된 지표들은 보통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추이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 일반 상황지표 목록

GE1. 1인당 국민소득
GE2. 연령-부양비
GE3. 출산율
GE4. 외국인과 외국출생인구
GE5. 결혼과 이혼

Note: OECD 홈페이지([www.oecd.org/els/social/indicators](ht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에서 추가적인 지표를 볼 수 있음.

### 4.2. 자활(Self-sufficiency)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에 의지한다. OECD 국가의 대부분 제도는 사회적 급여의 수급자격을 취업과 가입기간에 연결시킴으로써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연령(working age)에 있는 인구 다수의 취업이 필요하다(SS1). 노동은 사회 전반에 유용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자원, 정체성, 사회적 교류, 지위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근로를 통해서 자신과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것은 현실이기보다 희망인 경우가 많다(SS2, SS3).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특히 취업모(SS4)는 국가간 차이가 심하고, 이는 여성이 근로와 양육을 모두 수행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의 효과성과 사회적 차이를 반영한다. 많은 국가에서 장기실업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학교에서 직장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갖는다(SS9). 노동시장에서 불리함은 대개 비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는데, 모든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동료들에 비해 그들은 실업자, 비고용자, 또는 저소득자가 되기 쉽다(SS7). 노동시장에서 조기퇴출은 퇴직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택이라기보다는 자격수준이 낮거나 재취업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SS8).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전통적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현금급여와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통합을 위한 중재의 조합이다. 잘못 설계되면, 이 두 조치는 상호 모순이 되기도 한다. 사회보호제도에 의하여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급여가 의도와는 다르게 때때로 직장을 가지게 하는 재정적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SS5), 그 급여는 대개 가난을 벗어날 만큼 관대하지 않다(SS6). 또한 근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호제도는 근로에 대한 조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 표는 OECD 국가가 개인과 가족의 자활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관련된 사회적 상태지표와 사회적 대응지표를 열거한다. 이탤릭체로 쓰인 지표는 다른 소분류에 제시되었지만(4.3절에서 4.5절), 자활과도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 자활지표 목록<sup>1</sup>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SS1. 고용	SS5. 실업급여
SS2. 실업	SS6. 최저생계급여
SS3. 실직가구	
SS4. 취업모	
SS7. 교육수준	
SS8. 퇴직연령	
SS9. 청년실업	
<i>EQ1. 상대빈곤</i>	<i>EQ5. 공공사회지출</i>
<i>EQ3. 이동빈곤</i>	<i>EQ6. 민간사회지출</i>
<i>EQ4. 노인소득</i>	<i>EQ7. 총사회지출</i>

1. 이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는 다른 목록에 소개되어 있지만, 자활의 평가에 관련된 것임. 지표목록은 자료의 현존여부에 따라 제한됨.

### 4.3. 형평성(Equity)

형평성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경제적 기회, 결과를 포함한다. 무엇이 정확하게 공정한 자원의 재분배이고 무엇이 정당한 기회의 배분을 구축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국가내에서도 국가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형평의 모든 측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은 당연하다. 자료의 제한은 사회 서비스가 정부의 하위조직이나 비정부단체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나 결과의 형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상태지표의 대부분은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에 한정되어 있다.

상대적 빈곤(EQ1), 건강과 기타 사회 서비스 접근성 제한, 높은 문맹률, 교육수준은 상호간, 그리고 개인 및 가족의 노동시장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SS2, SS3). 사회 내의 현재 노동의 분배는 특히 가족 내의 아동과 같은 특수집단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EQ3). 퇴직 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노인의 노후소득은 대체로 충분하지만, 노인 중 일부 집단(특히 연금 수령 못하는 여성 노인)은 계속적으로 심하게 빈곤에 노출되어 있다(EQ4). 이러한 많은 빈곤의 현상들은 개인 및 가족 간의 소득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EQ2).

사회보호제도는 이러한 형평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요 도구이다. 무엇이 공정한 사회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국가간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OECD 국가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사회 내에서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제도를 개발(또는 개발 중)하였다. 이러한 중재 중 많은 경우 공공사회지출(EQ5)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가구는 민간부문을 통해서 제공되는 공공부조(EQ6)를 받기도 하고 조세제도(EQ7)를 통하기도 한다. 모든 OECD 국가에서 퇴직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는 자원의 큰 부분이 할당되고 있다. 즉 노령연금대체율(EQ8)과 연금약정(EQ9)에 대한 지표는 기존 연금규정과 매개변수(parameters)가 미래의 퇴직자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표시한다. 최근 대다수 OECD 국가의 사회정책은 직장을 갖는 것이 보다 공평한 자원 배분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고용지향 사회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형평지표와 자활지표는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종합해 보면, 항시 되풀이 되는 정책 딜레마, 즉 지속가능한 제도 하에 적절한 급여의 제공과 개인의 자활증진의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국가의 사회보호제도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 형평지표 목록<sup>1</sup>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EQ1. 상대빈곤	EQ5. 공공사회지출
EQ2. 소득불평등	EQ6. 민간사회지출
EQ3. 아동빈곤	EQ7. 총사회지출
EQ4. 노인소득	EQ8. 노령연금대체율
	EQ9. 연금약정
SS2. 실업	
SS3. 실직가구	SS6. 최저생계급여
SS4. 취업모	HE4. 국민의료비
SS9. 청년실업	

1. 이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는 다른 항목에 소개되어 있지만, 형평의 평가에 관련된 것임.

## 4.4. 건강(Health)

사회와 건강상태(health conditions)의 관계는 밀접하다. 사실 보건의료에 더 나은 접근과 의료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수반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은 그 지표가 출생시 또는 노령의 기대여명(HE1), 건강보정기대여명

(HE2), 영아사망(HE3) 어느 것이든 건강상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빈곤한 국가는 낮은 건강수준을 일관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각 국가 내에서 사회의 가장 열악한 집단의 일부 빈민, 저학력, 무직자는 높은 이환율(morbidity)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대개 수명도 가장 짧다. 그 결과, 국가의 건강지표가 향상되더라도 특정집단의 건강수준은 높아지지 않기도 한다.

총의료비지출(HE4)은 전체인구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건강수준을 고려한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부이다. 시설내 또는 공공부조로 자택에서 장기수발을 받는 노인의 비율에 관한 지표(HE5) 또한 본 절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의료체계 밖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정책과제를 의료체계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이나 주택부족 등의 관련 사회환경 때문에 건강수준이 악화된 것에는 의료정책 단독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의료시설의 이용은 지출규모 자체보다 의료보험의 낮은 적용범위나 본인부담금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

건강수준과 정책에 관한 훨씬 광범위한 지표는 격년으로 출판되는 OECD Health Data (OECD, 2004e)와 이 보고서의 자매판 Health at a Glance (OECD, 2005b)에 제공되고 있다.

#### 보건지표 목록<sup>1</sup>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HE1. 기대여명	HE4. 국민의료비
HE2. 건강보정기대여명	HE5. 장기요양
HE3. 영아사망	
EQ1. 상대빈곤	EQ7. 총사회지출
CO5. 약물이용과 관련사망	

1. 이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는 다른 절에 소개되어 있지만, 형평의 성과 평가에 관련된 것임.

#### 4.5.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막는다는 것이 여러 OECD 국가의 사회정책의 중심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합의된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적합한 지표를 찾기가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 택한 방법은 국민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얻는 정도를 식별하는 지표를 통해서 통합을 평가하는 것이다. 친목활동을 통한 타인과 접촉빈도(CO2) 그리고 집단이나 단체의 참여(CO3)가 개개인의 사회생활에 잘 융화하고 참여하는 정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차원(dimensions)이다. 주관적 생활만족도에 관한 조사 자료(CO1) 또한 개개인의 웰빙(well-being)과 사회 전체적인 통합을 “직접” 측정하는데 중요하며, ‘한 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에 처음으로 이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자료의 타당성과 비교가능성에 대해 상당수의 문헌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생활만족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의미가 있고 여러 집단 구성원간과 국가간에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의 개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배제될 위험을 더 크게 하는 다양한 병리와 양상에 대한 지표를 찾는 것은 보다 수월하다. 자살율(CO6), 약물이용과 관련사망(CO5) 모두 단지 개인의 와해(breakdown)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표시한다. 마찬가지로 10대 출산(CO4)의 만연은 대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교육시스템에서 이탈하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는 관련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 모두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과 사회적 고통을 표시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태지표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상황을 설명하는 환경지표는 특히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큰 사회 내부에 여러 집단과 가정이 있음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사회통합관련 대응지표를 찾아내기는 훨씬 더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 규정한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차원에 관한 결과를 특별히 완화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중재는 거의 없고, 반대로 사회정책의 다른 차원(자활, 형평성, 건강)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 역시 사회통합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회통합 지표 목록<sup>1</sup>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CO1. 주관적 웰빙	
CO2. 사회적 고립	
CO3. 단체참여	
CO4. 10대 출산	
CO5. 약물이용과 관련사망	
CO6. 자살	
SS2. 실업	
SS3. 실직가구	EQ5. 공공사회지출
EQ1. 상대빈곤	EQ6. 민간사회지출
SS9. 청년실업	EQ7. 총사회지출

1. 이탤릭체로 표기된 지표는 다른 절에 소개되어 있지만, 형평의 성과 평가에 관련된 것임.

## 5. 이 책에 포함된 사항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각 이슈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해당 지표의 범위와 정의, 기초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측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기술한다. 어떤 지표를 정확하게 정의하기에는 국가간에 여러 측면이 너무나 달라서 불가피하게 국가간 자료의 질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본문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에 제시된 빈곤지표가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두 국가 사이 지표 값의 작은 차이는 그 기초가 되는 조건의 실질적 차이라기보다는 “통계적 소음”(statistical noise)일 수 있다. 반면 보통 한 국가 내부에서 경시적 변화는 보통 상당히 신뢰할만하다.

각 절마다 지표의 추세와 국가간 차이를 기술하는 “정의와 국가간 차이”의 글상자가 붙어 있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다. 각국의 경험을 장황하게 기술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각 지표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1년 그리고 모든 OECD 국가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단의 국가들의 추세를 제시한다. 어떤 경우에는 성, 연령 등에 의한 지표 값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이는 자료의 존재유무에 따라 다르다. 각 지표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지표들 간의 연관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각 절에서는 다른 사회지표(상황지표 제외)를 상호 참조하고 있다. 근거가 도표와 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 각 절에는 “추가 읽을거리”(further reading)를 위한 선별 참고문헌과 그 지표를 도출한 간행물의 전체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 5.1.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사항

이 책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지표에 대해서 도표와 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개인의 연령, 성, 가족 형태별로 분류할 수 있다. 거의 항상 시계열자료가 있다. 유별나게 두꺼운 책을 만들지 않는 한, 수집한 모든 지표의 모든 면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각 개별 지표의 기초가 되는 원자료는 OECD 웹사이트([www.oecd.org/els/social/indicators](ht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 또는 “전자서적”(electronic books)에서 각 표 및 그림의 “출처”(source)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다.

#### Notes

1. PSR 분석들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원인-상황-대응”(DSR)의 모형과 유럽 환경처에서 사용하는 “원인-압력-상황-영향-대응”을 탄생시킨 접근방법의 한 변형임.
2. 이 분류는 PSR모형과 조금 상이함. 환경지표에서는, 압력지표가 환경적 척도(수질이나 대기의 상태, 생태계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흐름(배기, 쓰레기 양산, 자원사용)인 반면에, 대응지표는 이러한 흐름이나 척도 양자 모두 해당될 수 있음.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이에 상응하는 비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흐름과 척도의 구분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급여대상의 흐름” “특정 시점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 이러한 것이 모든 정책 분야에서 언제나 그러하지는 않음.
3. 예를 들어, 비행 기기로부터의 공해의 배출은 대기, 토양, 그리고 수자원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임(OECD, 2004d).
4. 특정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의 부족은 보다 나은 지역 계획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5. 따라서, 이러한 두 지표는 사회적 자본, 즉,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의 협조를 촉진하는 공유 규범, 가치, 그리고 이해”의 중요한 측면을 설명한다(OECD, 2001).

#### Bibliography

-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aris.
- OECD (2003),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Benchmarking Knowledge-based Economies, OECD, Paris.
- OECD (2004a), Benefits and Wages - OECD Indicators, OECD, Paris.
- OECD (2004b),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OECD, Paris.
- OECD (2004c),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 OECD (2004d), Key Environmental Indicators, OECD, Paris.
- OECD (2004e), OECD Health Data 2004, first edition, OECD, Paris.
- OECD (2005a),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aris.
- OECD (2005b), Health at a Glance, forthcoming, OECD, Paris.
- OECD (2005c), Extending Opportunities: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 OECD, Paris.



**PART II**

# **OECD 사회지표**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국민 1인당 GDP는 국가간 생활수준을 나타내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과 사회 복지에 대한 부분적 측정일 뿐이며, 사회상태에 대하여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본 책자의 나머지 부분에 제시된 다른 지표들로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민 1인당 GDP는 개인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의 상거래에 기반을 둔 측정이며 안전, 여가, 비공식적 활동, 아동보육과 같은 가사 영역은 제외된다. 한편, 국민 1인당 GDP는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지 않고 단지 경제성장의 결과를 누그러뜨리는 공해를 줄이는 것에 관련되거나 법적 소송과 연관된 것들과 같은 “방어적”(defensive) 지출을 포함한다. 사회생활 수준의 지표로서, 1인당 GDP는 경제과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모든 생산과 비생산된 자산(예: 천연자원)의 소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산정된 것처럼, 1인당 GDP의 측정은 GDP의 지출 기반 측정 즉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을 제외한 국내 공급에서 총 최종지출의 합에 기초한다(SNA, 1993). 지출은 보조금을 제외한 재화와 서비스에서 간접세의 가치를 포함한 시장가격에 의해 측정된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 각국의 국내 화폐로 계산된 GDP의 가치는 구매력평가(PPP)에 기초한 공통 단위로 변환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1달러로 구입 가능한 같은 재화를 각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국내 화폐의 규모를 반영한다. 구매력평가(PPP) 지수에서 GDP의 명목가치는 각국의 총 주거 인구수의 추정치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2000년 ‘한 눈에 보는 사회’ 이전 판에서 제시 비교된 이후, 2003년 1인당 GDP의 국가간 차이가 OECD 지역에서 약간 증가되었다(그림 GE1.1 참조).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수준의 터키와 멕시코 두 국가가 약간의 증가를 보였고, 2000년 이후 높은 소득의 일부 국가 증가율이 15% 또는 그 이상에 근접하였다. 2003년 OECD 국가의 약 2/3는 1인당 GDP가 25,000 US달러 이상이였다. 반면, 2000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1/3에 근접하였다.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이러한 평균 수준의 거의 2배인 반면 터키는 단지 평균 수준의 1/4를 약간 상회하였다.

1인당 GDP는 각 국가의 사회 상태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단지 일부 간접적이지만, 1인당 GDP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을 제공한다. 실제로 그림 GE1.2 (왼쪽의 패널) 에서 보이는 것처럼 1인당 GDP 수준과 1인당 총사회지출(EQ5, EQ6) 수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의 두 OECD 국가,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는 2001년에 1인당 공공사회지출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기대된 1인당 GDP 수준보다 1인당 공공사회지출이 약간 많게 지출되었다. 반대로 미국, 일본, 한국, 아일랜드는 그들의 주어진 소득수준 하에서 예상보다 사회지출이 훨씬 적게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총지출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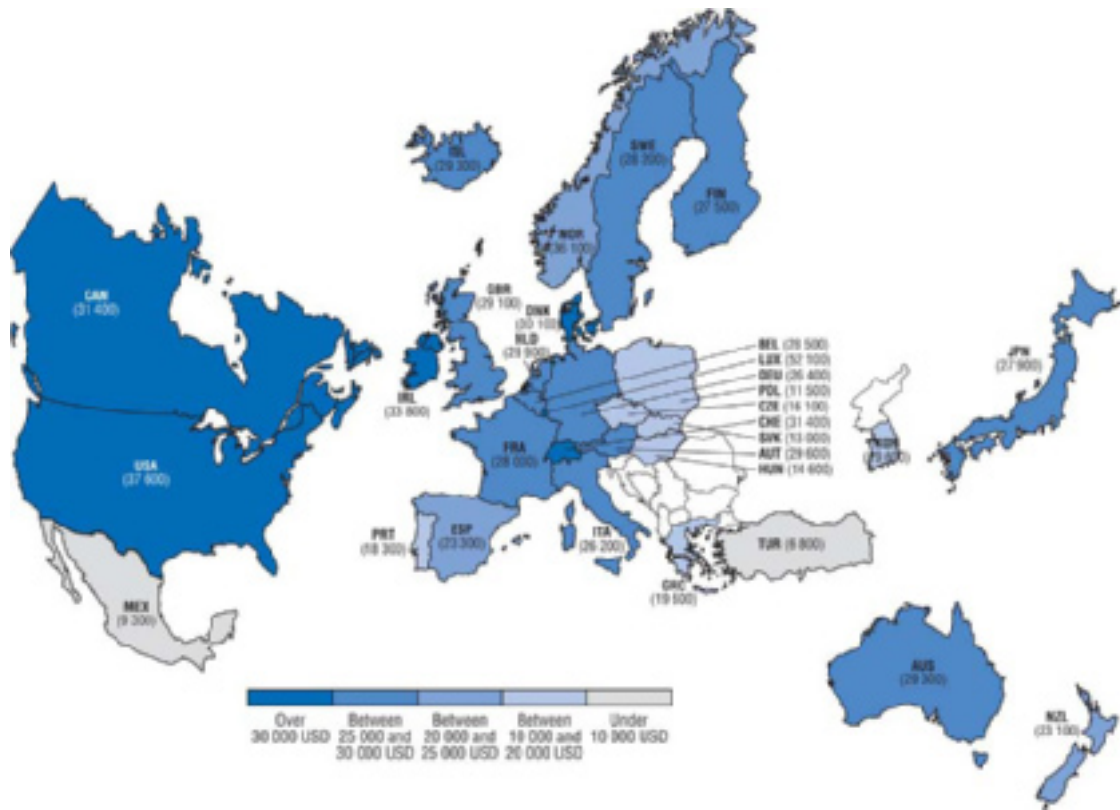
사회목적(예: 사적연금에 관계되는)에 의해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제외하였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그 부분이 매우 크다(EQ7).

1인당 총사회지출과 1인당 GDP 간의 매우 밀접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다. 사회지출의 많은 부분이 소득 대체 (실업자나 고령자에 대한 급여) 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 국가가 부유해짐에 따라 급여가 증가한다. 사실상 다른 형태의 사회지출은 서비스의 비용 (예: 의료나 보육) 을 반영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이 1인당 소득과 함께 증가할 때 사회 지출 또한 함께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1인당 GDP가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실제로, 몇몇 사회지출의 항목들 (예: 건강관리) 은 높은 소득 탄력성을 갖고 있다. 즉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보장에 대한 개인적 수요가 증가한다.

총사회지출 측정의 대안으로 GDP 백분율 대비 지출이 있다. 오른쪽 그림 GE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덴마크, 프랑스와 더불어 스웨덴이 다른 모든 국가 보다 가장 많이 지출한다. 이 지표는 국가간에 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1인당 GDP와 총사회지출이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일지라도 몇몇 이상치(outliers)가 존재한다.

GE1.1. OECD 국가간 1인당 GDP,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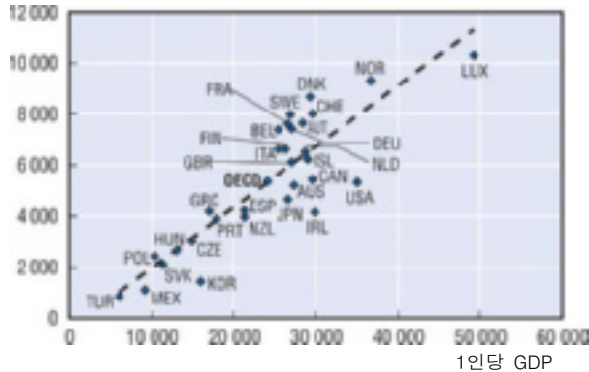
OECD unweighted average GDP per capita in current US dollars using PPPs: 25 600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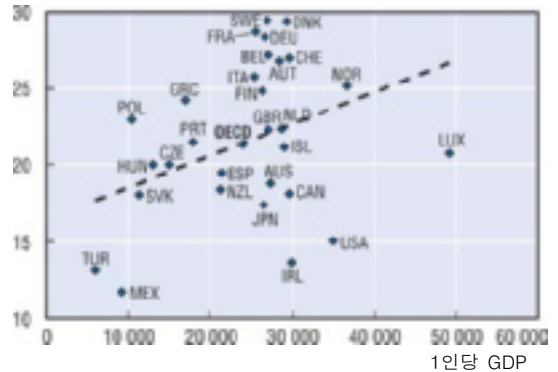
GE1.2. 총사회지출과 1인당 GDP

In current US dollars using PPPs, 2001

1인당 사회지출



GDP(%)대비 사회지출



Note: 총사회지출은 공적 및 의무적 민간지출을 포함.

Source: OECD (2004),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Main Aggregates, Vol. 1, OECD, Paris; OECD (2004),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1, OECD,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773776625503>

**Further reading:** ■ Arjona, R., M. Ladaique and M. Pearson (2001), "Growth, Inequality and Social Protec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51, OECD, Paris. ■ SNA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CEC-EUROSTAT, IMF, OECD, UN and the World Bank, Brussels/Luxembourg, New York, Paris and Washington DC.

## 정의와 국가간 차이

노령연금과 같이 연령과 관련된 사회 프로그램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수는 인구학적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퇴직 후 기대여명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등과 같은 개인적 고령화와 인구 중 증가하는 고령층 비율이다. 인구의 고령화 정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방법은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이다. 이것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생산가능(working-age)인구를 비교하는 것이다. 유사하게 유년부양비(youth dependency ratio)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15세 이하의 인구 비율인데, 향후 연령 불균형의 지표로서 제공된다. 유년부양비가 감소되리라는 전망은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될 것임을 나타낸다.

연령부양비(age dependency ratio)는 사회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특정 문제보다는 사회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환경을 정의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 자체는 미래의 사회보장에 기여할 인구수를 나타내는 데에 불완전한 지표이며, 장래의 연령에 관련된 지출(보건과 장기요양비용과 같은)은 추정하기가 어렵다. 본 절에서 제시된 부양비의 추계는 유엔세계인구전망(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3)에서 발췌한 것이다.

연령-부양비(age-dependency ratio)는 향후 50년 동안 전체 OECD 지역에서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2050년에 예상되는 부양비의 수준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과정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보건, 장기요양에 더하여 가족 급여, 유년세대의 교육비에 대한 재정조달은 각국의 인구학적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변화를 움직이는 요인들은 대부분 OECD에서 발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과 노인의 기대여명을 포함한다.

2000년도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는 10% 미만을 보였고,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일본에서는 25% 이상을 나타냈다. OECD 전체 지역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 5명당 65세 이상 인구 1명이 었다. 이러한 비율은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2명당 65세 이상 노인 1명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면서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GE2.1, 왼쪽 패널). 노년부양비의 가장 급격한 증가는 2010-30년 동안 나타난다. 일본에서 노년부양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2050년에 7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영향은 미국의 노년부양비의 증가 과정(path)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노년부양비는 2010-30년 동안 급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반대로 출산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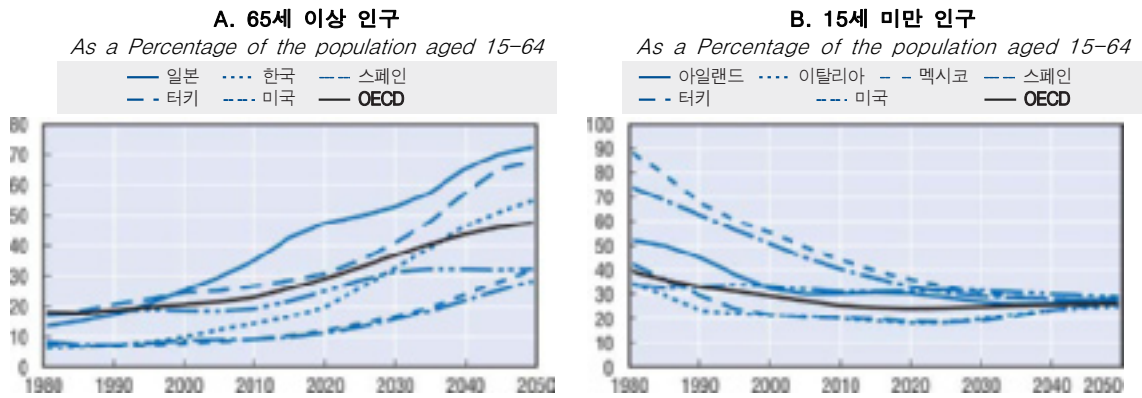
감소가 나타나는 스페인에서는 노년부양비는 2025년 이후 신속하게 증가하는데, 2050년에는 70% 가까운 수준에 도달한다. UN의 추계에서 한국과 같이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터키와 멕시코의 경우는 노인부양비가 후반에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낮은 출산율은 1980년 이후 유년부양비의 빠른 감소를 의미하며, 그러한 것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그림 GE2.1 오른쪽 패널). 유년부양비 또한 아일랜드에서 지난 20년 동안 심각하게 감소하였고, 생산가능인구 4명당 유년인구 1명 정도인 OECD 평균에 근접하였다. OECD 전지역에서 유년부양비는 향후 50년 동안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국가가 이 기간 동안 그러한 수준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예상 노년부양비의 증가율은 2000년도와 비교했을 때보다 향후 50년 동안 OECD 국가간에 더 다양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그림 GE2.2).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세 국가(한국, 터키, 멕시코)에서 예상 증가율이 가장 크고, OECD 국가 평균으로 수렴한다. 노년부양비는 일본, 스페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에서 거의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학적 토대를 변화시켜 사회정책과 조세구조의 개혁이 요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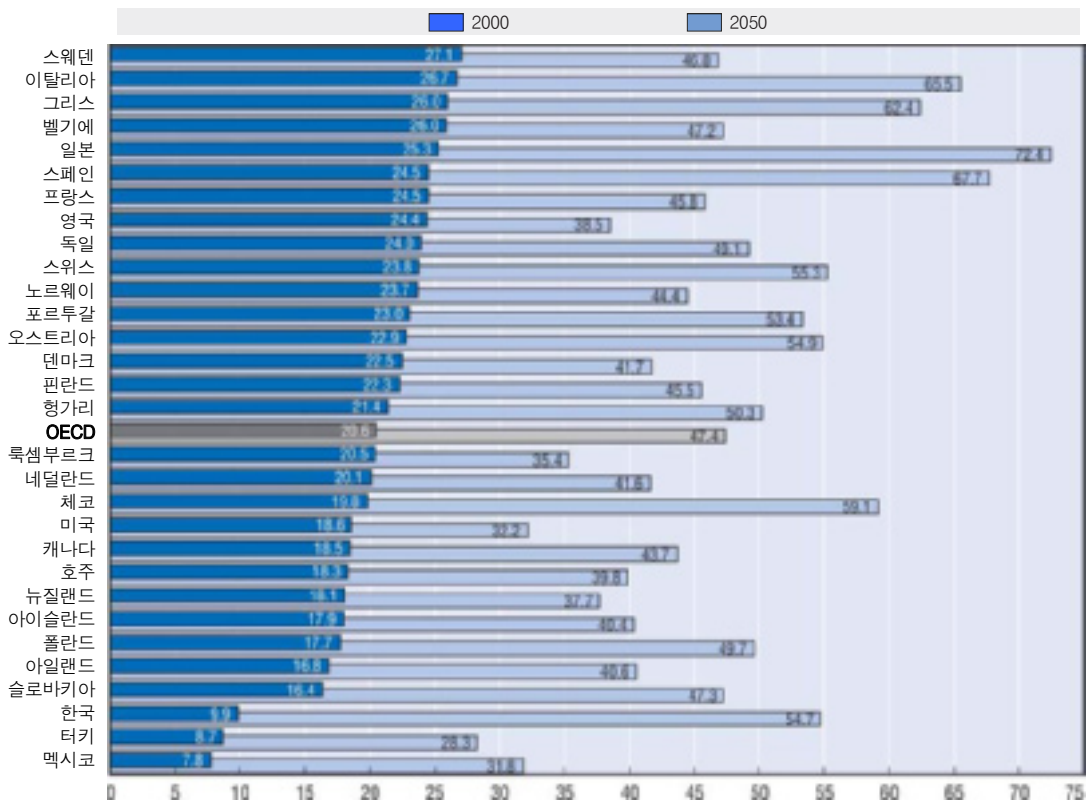


GE2.1. 연령-부양비 추계, 1980-2050



GE2.2. 2050년까지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이 되는 OECD 국가가 거의 50%가 될 것임

Population aged 65 and over, relative to the population aged 15-64, 2000 and 2050



Note: 국가는 노년-부양비 감소 순임, 2000.

Source: United Nations (200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s (Medium variant), New York.

StatLink: <http://dx.doi.org/10.1787/484207813736>

**Further reading:** ■ Dang, T.T., P. Antolin and H. Oxley(2001), "The Fiscal Implications of Ageing: Projection of Age-Related Spending",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305,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특정 연도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고, 매년 평균 출산율에 맞추어서 출산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여성이 출산할 아이의 수를 나타낸다. 여성 1인당 2.1명의 합계출산율은 이민이나 사망의 감소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인구의 전반적인 안정을 확보한다. 각국의 합계출산율은 연령구조와 무관한 반면 출산시기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평균 초산연령”(mean age of mothers at first birth)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산모가 첫째 아이를 출산할 날짜에 산모의 연령을 나타낸다. 각국의 인구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완결출산율”(completed fertility rate)이며, 이것은 가임기를 마친 여성 집단이 가임기간 동안 출산한 아이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완결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까지 주어진 여성 집단에서 특정 연령의 출산율을 누적하는 것으로 측정된다.

합계출산율, 완결출산율 및 평균 초산연령에 대한 자료는 유럽협약체(2003), Eurostat 및 국가별 자료의 연도별 출판물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가임가능 여성 1인당 2.7명에서 2002년에 1.6명으로 과거 수십 년 동안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GE3.1). 2002년까지 합계출산율은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2.1명의 대체수준(replacement level) 이하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개인행태(사회계층간, 예: 소득, 교육, 종교)와 각 국가의 사회·역사적 배경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국은 낮은 출산율에 이르는데 서로 다른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일부 요인은 출산율 감소에 다른 요인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의 증가, 결혼의 지연, 새로운 생활방식의 확산, 젊은이의 가족으로부터 늦은 독립(특히 남부 유럽에서 현저함)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남부 유럽의 낮은 출산율은 매우 늦은 혼인과 낮은 혼외 출산의 결합 때문이다. 북부 유럽에서는 혼외 출산이 매우 높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젊은 여성층의 출산율은 감소해온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증가하여 왔다. 임신의 지연은 평균 초산연령 증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그림 GE3.2 오른쪽 패널). 그러한 지연·사회에서 특히 유급직업과 관련한 여성 지위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Lestaege and Moors (2000)에 의해 OECD 국가의 “두 번째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으로서 일컬어 왔던 것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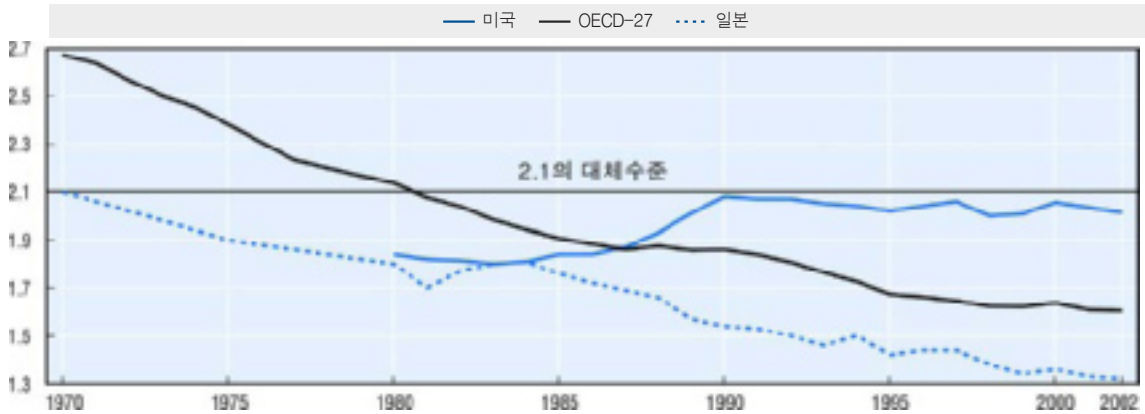
더 낮은 출산이 주로 출산 시점의 변화를 주로 반영했던 만큼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한 출산 만회가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기도 하나 젊은층의 출산 행태에 대한 변화는 앞으로는 낮은 출산이 계속될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1960 - 65년 동안에 태어난 연령층의 완결출산율은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대체수준 이하이다.

이러한 영향을 이유로, 많은 OECD 국가는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출산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고려하고 있다. 여성이 그들의 교육과 직장에 임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정책이 간접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세금, 교육, 사회적 보조와 퇴직에 관한 정책 또한 여성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각국의 정부에서 분명한 출산촉진정책을 가져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OECD 국가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각국에서 각기 다른 요인들이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책이 모든 국가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GE3.1. 대부분 OECD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 이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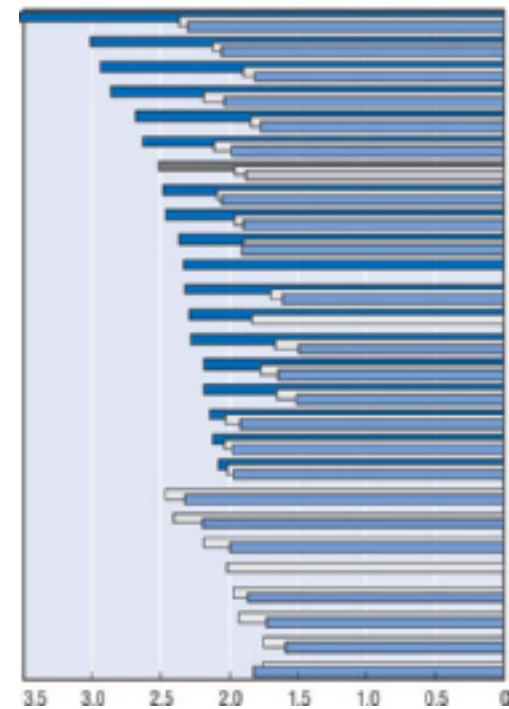
Total fertility rates from 1970 to 2002



GE3.2. 완결출산율의 감소와 평균 초산연령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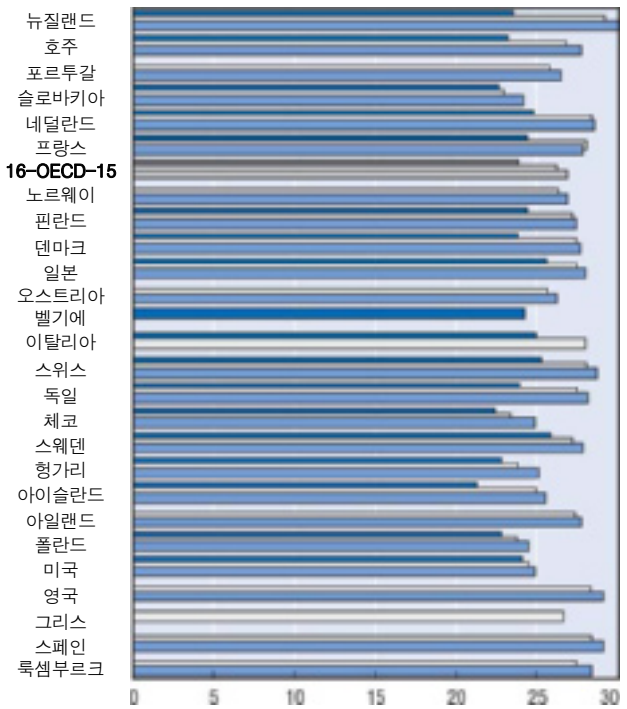
A. 완결출산

1930 1960 1965



B. 평균 초산연령

1970 1995 2000



Note: 국가는 1930년 완결출산의 감소 순임.

Source: Council of Europe (2003), Recent Demographic Development in Europe, 2002: Eurostat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426518142513>

**Further reading:** ■ Lestaeghe, R. and G. Moors (2000),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Household Formation in Industrialised World",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No. 9, Tokyo. ■ Sleebos, J. (2004),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 OECD, Paris. ■ United Nations(2000), Below Replacement Fertility, New York.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이민은 OECD 사회의 필수적인 특징이며 그 중요성은 향후 더 크게 부각될 것이다. 여러 면에서 이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이민자를 정의하는 방법에 주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때로는 이민자는 이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민자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며 이는 그들의 귀화나 출산이 이민자의 숫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외국출생인구의 비율과 1992-2002년 동안 변화의 두 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불법 이민자는 이러한 통계에 분명하게 포함되지 않는다. OECD는 매년 OECD 국가의 최근 추세와 이민정책에 대한 통합분석을 제공하는 국제이민의 동향(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을 출판한다.

“이민” 인구의 크기는 OECD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외국출생인구의 비율은 호주에서 특히 높고, 거주인구의 거의 1/4에 해당한다(그림 GE4.1). 미국에서는 그 비율이 약 11%이나 멕시코에서는 그 비율이 1% 미만이다. 외국 국적의 인구 비율에서도 국가간 차이가 크다. 유럽 국가 중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큰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20% 또는 그 이상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는 그 범위가 8-10%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4-5%이며, 이민이 최근에 나타나는 국가는 3% 미만 정도이다. 한국과 일부 동유럽 국가는 외국인이 1%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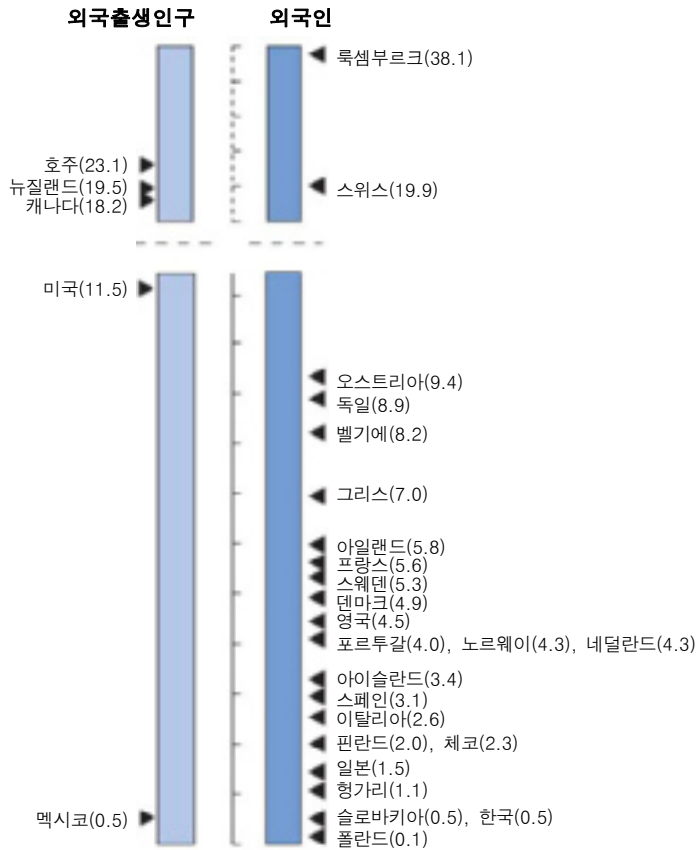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외국출생인구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해왔다(그림 GE4.2). 이러한 증가는 특히 체코, 한국,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 뚜렷하다. 한국에서 4배 증가는 부분적으로 낮은 귀화 비율과 이웃 국가에서 순유입의 증가에 기인한다. 반면, 남부 유럽 국가는 새로운 이민국가가 되었다. 10년 동안 외국인 수가 3배가 된 스페인에서는 동 기간 동안 귀화의 증가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 외국인이 2배가 된 것은 모로코, 알바니아, 이전의 포르투갈 식민지로부터 이민을 반영한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은 이러한 증가에서 부분적으로 예외적인 국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들에서 높은 귀화비율(2002년 외국인구의 5-9% 정도)이 높은 유입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헝가리에서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의 감소는 출생한 국가로 회귀하는 이민을 반영한다(예: 루마니아, 이전의 유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인구추계(GE2)에 따르면, 외국 노동자들의 높은 유입은 OECD 국가 노동인구의 장기감소 경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민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얻는 것으로서, 높은 이민은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공공지출 부담을 단지 부분적으로 줄일 뿐이다. 게다가, 외국인의 현존은 때때로 이민자들이 이민국에 대한 적응이나 융화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사회적 긴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긴장은 높은 실업을 경험하는 지역에서 악화될 수도 있으며 이민 2세대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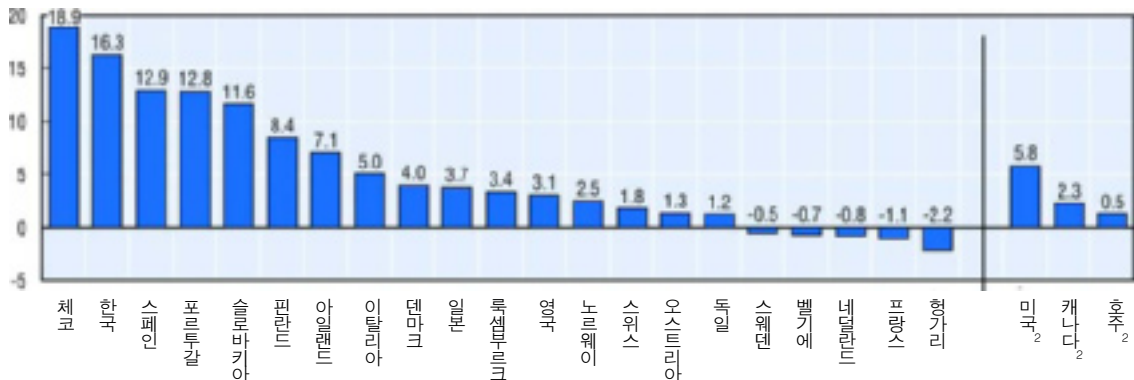
GE4.1. OECD 국가간 외국인/외국출생인구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음

Foreign population/foreign-born population,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2



GE4.2.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외국인/외국출생인구의 증가, 1993-2002

Annual average change between 1992 and 2002,<sup>1</sup> in percentage



1. 캐나다(1991-2001), 프랑스(1990-99), 헝가리(1994-2002), 슬로바키아(1995-2002), 미국(1994-2002)을 제외하고, 1992- 2002 년간 연평균 변화.  
 2. 호주, 캐나다, 미국의 경우, 외국출생인구의 변화.

Source: OECD (2004),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migration](http://www.oecd.org/els/migr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755816181665>

Further reading: ■ United Nations (200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2 Revisions, New York. ■ OECD (2005),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결혼과 이혼의 지표는 사회 안에서 가족구조에 대하여 불안정한 관점 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총인구 대비 매년 법적 결혼수를 표현한다. 유사하게 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전체 인구규모 대비 특정 연도의 해체된 법적 결혼수를 나타낸다. 두 측정은 혼외 동거커플이나 결혼한 별거커플을 고려하지 않는 등 비공식적인 관계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법적 기록자료에 근거한 지표들이 이상적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결혼과 이혼에 대한 조사에 기초한 대안적 측정은 자료의 유용성과 통계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혼 100건당 이혼수는 동일 해의 결혼 대비 이혼을 비교한 비율이다. 이러한 정의는 기간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혼한 해의 이혼율보다 국가간에 좀 더 표준화되어 있다. 반면 이러한 지표는 그 비율이 혼인과 이혼율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보고되는 결혼기간은 별도로 표시된 지역을 제외하고 이혼시까지 평균동거년수이다.

1960년과 1970년대에 사회경제적 요인의 현저한 변화는 OECD 국가의 사회적 규범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왔다. 높은 부의 수준, 가정에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변화, 여성 노동력의 시장참여 증가, 결과적인 여성의 경제적 독립 등이 가족형성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에 관계되어 관습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 동안 결혼과 이혼의 변화하는 추세와 OECD 국가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비공식적 가구형태와 사실상 동거(de facto union)가 좀 더 일반화됨에 따라 1970-2001년 동안 혼인율은 감소하였다(그림 GE5.1). 결혼 상태에서 가능했던 재정적 보호는 관련이 덜 하여졌다. 1985년 이전 혼인율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로 대부분의 국가(1980년 이후로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미국을 제외하고)에서 감소세가 점점 줄어들었다. 일부 북서 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프랑스, 일본에서 혼인율이 1990년대 초반 이후 서서히 다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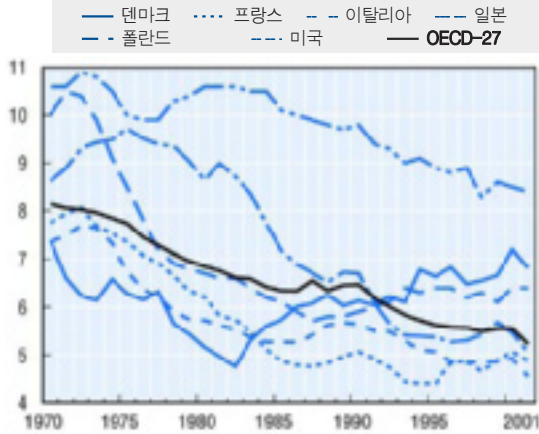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1970년대의 법 개혁과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이혼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1970-2001년 동안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이혼율은 증가세였다(그림 GE5.2). 반면 후반기에는 증가가 좀 더 점진적이었다. 프랑스와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이혼율은 OECD 평균에 가까이 밀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닌데, 일부 국가에서는 안정적 추세를 보인 반면 다른 국가는 감소하기도 하였다. 안정적 수준에서 이혼율이 변동하는 덴마크와 폴란드는 대부분 북동 유럽 국가의 전형이다. 1980년 이후 미국의 이혼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혼인율도 유사하게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혼인율에 대하여 비교 제시된 이혼율은 OECD 국가간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그림 GE5.3).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이혼을 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과 종교적 고려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예: 아일랜드). 전체 OECD 국가의 약 1/3은 이혼율이 50%를 넘는다. 반면, 동일 년도에 벨기에의 이혼수는 혼인수의 2/3 이상이다. 결혼에 대한 이혼 비는 한국,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에서 1995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GE5.3에서 보면, 이혼율이 가장 낮으며(35% 이하) 가장 높은 결혼의 지속기간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측정된 이혼율과 이혼시 평균결혼년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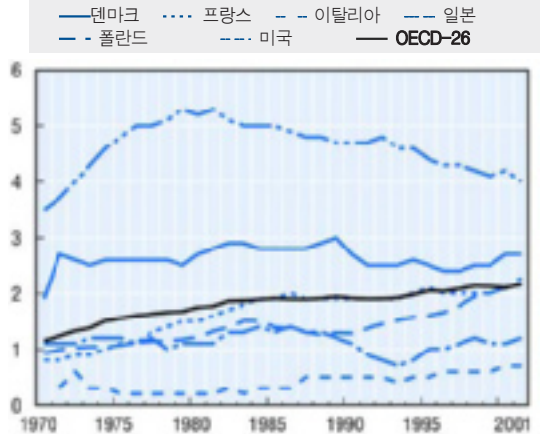
GE5.1. 많은 국가에서 혼인율의 큰 감소

Marriages per 100,000 population, 1970 to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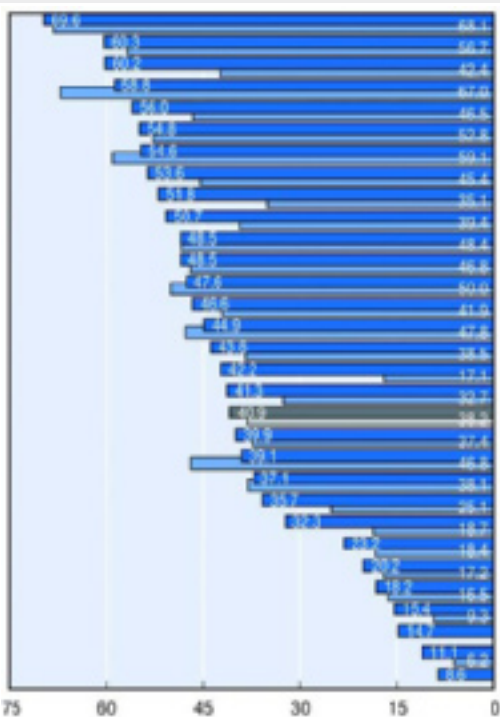
GE5.2. 이혼율의 점진적 증가

Divorces per 100,000 population, 1970 to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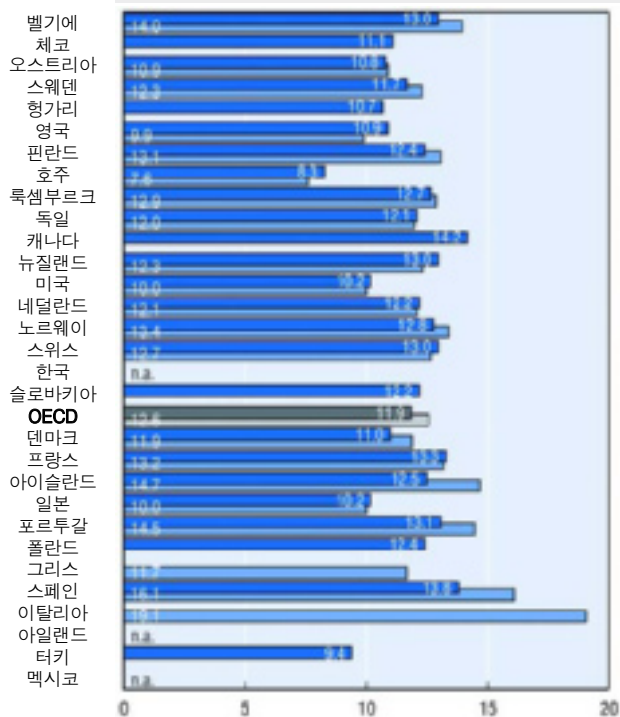


GE5.3. 결혼당 이혼비는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 1995-2001

결혼 100건당 이혼수



이혼시 평균 결혼연수



Note: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이혼시 혼인기간의 중앙값임. 뉴질랜드의 이혼 및 호주의 별거 전 결혼기간의 중앙값. 터키의 평균연수는 2000년 자료임. 국가는 2001년 결혼 100건당 이혼수 감소 순임.

Source: Eurostat NewCronos; Council of Europe Demographic Trends;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467551243030>

**Further reading:** ■ Lambert, A.M. (2002), "Divorces: Facts, Causes and Consequences", *Contemporary Family Trends*, The Vanier Institute of the Family, Ottawa. ■ Martin, G. and V. Kats (2003), "Families and Work in Transition in 12 Countries, 1980-2001", *Monthly Labour Review*, September. ■ US Census Bureau (2001), "America's Families and Living Arrangements", *Current Population Reports*, Washington DC.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일에 대한 정의는 거의 일을 하는 개개인의 동기만큼이나 복잡하다. 재정적 이익, 자기실현, 사회교류, 지적 자극, 승진과 같은 다양한 취업 목적은 동일하게 다양한 범위의 고용상태를 가져온다. 과거에는 상근 유급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지배적 형태이었다. 오늘날, 고용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더욱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공식적 고용, 임시직과 자원봉사는 말할 것도 없이 시간제, 탄력적 노동시간, 임시근로계약, 자영업, 상담직 등 비정규직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노동력 조사에서처럼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에 대한 정의는 남성 또는 여성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을 급여, 이윤, 가족의 이익(현금 또는 현물)을 위해 일하거나 또는 질병, 휴일 또는 산업 분쟁을 이유로 직장을 일시적으로 결근한다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취업/인구 비율은 자영업 또는 유급 취업된 생산가능인구(15세와 64세 사이의 인구)의 비율이다. 본 절의 특별 초점인 임시근로자(temporary works)는 제한된 지속기간의 직업에 있는 피고용인이다. 이는 고정된 기간의 계약, 일용직, 계절직 등을 포함한다. 2004년에 출간된 'OECD 노동력통계 1983-2003'은 이러한 정의가 회원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고용과 임시직에 대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노동 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며 비공식적 고용은 배제한다. 비공식적인 고용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은 이를 공표된 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OECD(2004)는 정책이슈와 최근 추정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제시한다.

고용에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취업인구의 비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주로 호황의 경제 조건의 결과로서, 1990년대의 두 번째 분기에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취업률의 향상은 2001년 이후 멈추었다. 2003년까지 두 해 동안 취업률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터키, 폴란드, 미국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취업률은 전체 OECD 국가와 유럽연합의 19개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2003년까지 인구 대비 취업률은 평균적으로 65%에 근접하였고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는 더욱 뚜렷하게 높았다(표 SS1.3).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여성 취업률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지난 20년 동안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었다(그림 SS1.1).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의 “성별 격차”(gender gap)는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실제적(평균 10포인트 가깝게)으로 상당히 큰 상태로 남아있다.

고령층(55-64세)의 고용은 퇴직의 지연때문에 2001년 이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반대로 청년층(15-24세)의 고용은 가장 주목할 만한 예외로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총인구 대비 청년취업률은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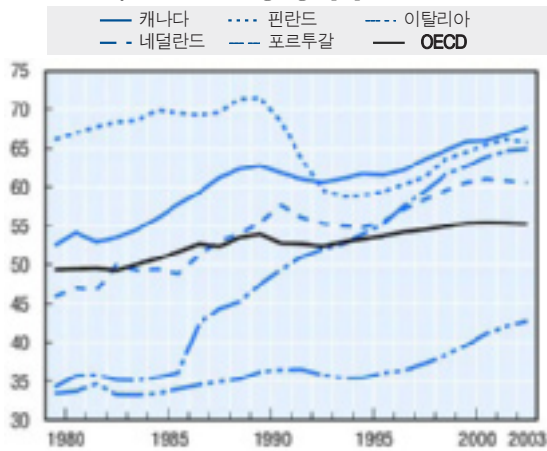
OECD 평균취업률인 43%보다 훨씬 낮다.

남녀 임시직 고용(temporary employment)은 1990년대 초반의 수준보다 그 이후 많은 OECD 국가에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동유럽 국가와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임시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표 SS1.3). 임시직은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과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스페인과 포르투갈(그림 SS1.2)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임시직으로 전환이 문화적 요인들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에 기인하여 좀 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임시직에 대한 완화된 규정이 많은 OECD 국가는 임시직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이는 특히 종신계약에 대한 고용보호법이 엄격한 국가에서 더욱 그러하였다(OECD, 2004).

**상태지표:** 실업(SS2), 취업모(SS4), 퇴직연령(SS8).  
**대응지표:** 실업급여(SS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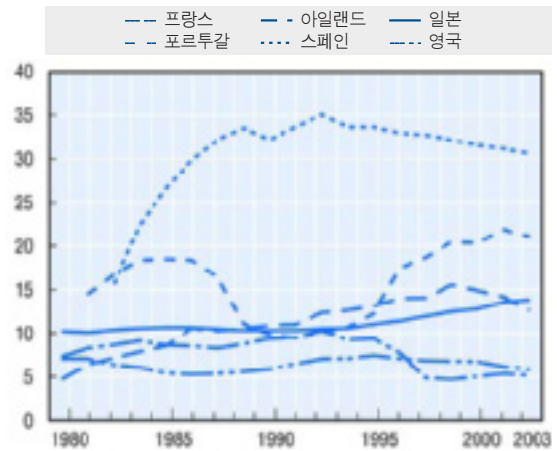
SS1.1 여성취업률의 큰 증가

Female employment as a percentage of female working age population



SS1.2. 임시직 취업률 비중의 큰 차이

As a percentage of dependent employment



SS1.3. 고용지표, 2003

	고용/인구 비 (생산가능인구의 백분율)				임시직 고용의 발생 (총 부양고용의 백분율로서)				
	전체	연령군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5-24	25-54	55-64					
호주	69.3	59.9	76.9	50.1	76.4	62.2	..	..	..
오스트리아	68.7	51.9	83.7	30.1	76.0	61.5	7.2	7.5	6.8
벨기에	59.3	27.1	76.1	28.1	67.1	51.4	8.6	6.4	11.3
캐나다 <sup>1</sup>	72.1	57.8	80.6	53.0	76.5	67.7	13.0	12.4	13.6
체코	64.9	31.4	81.7	42.3	73.4	56.3	9.9	9.2	10.7
덴마크	75.1	59.4	83.5	60.7	79.7	70.5	9.6	7.9	11.3
핀란드	67.4	38.5	81.1	49.9	69.0	65.7	16.4	12.8	20.0
프랑스	62.7	29.8	79.3	36.8	68.9	56.7	12.6	11.2	14.1
독일	64.6	42.4	78.2	39.0	70.4	58.7	12.2	12.1	12.3
그리스	58.0	26.3	72.6	41.9	72.5	44.0	11.1	9.7	13.2
헝가리	57.0	26.7	73.7	29.0	63.4	50.9	7.5	8.3	6.7
아이슬란드 <sup>2</sup>	82.8	59.4	90.0	87.2	85.7	79.8	9.6	9.5	9.7
아일랜드	65.0	45.8	76.0	49.3	74.5	55.4	5.1	4.3	6.0
이탈리아	56.2	26.0	70.8	30.3	69.7	42.7	9.5	7.9	11.8
일본	68.4	40.3	78.3	62.1	79.8	56.8	13.8	7.9	22.2
한국	63.0	30.8	73.1	57.8	75.0	51.1	..	..	..
룩셈부르크 <sup>2</sup>	63.6	32.3	79.1	27.9	75.5	51.5	4.3	4.0	4.7
멕시코	59.6	44.7	68.1	53.8	82.0	39.4	20.6	25.8	10.6
네덜란드	72.7	65.4	82.1	43.5	80.2	64.9	14.6	12.8	16.7
뉴질랜드	72.5	56.6	79.8	64.4	79.3	65.8	..	..	..
노르웨이	75.9	55.3	83.0	68.8	78.8	72.9	9.4	7.7	11.3
폴란드	51.4	19.6	67.6	28.6	56.7	46.2	19.4	20.8	17.8
포르투갈	67.1	38.4	81.0	51.1	73.9	60.6	21.0	19.4	22.9
슬로바키아	57.7	27.6	76.0	24.6	63.4	52.2	5.1	5.5	4.6
스페인	60.7	36.8	71.3	40.8	74.5	46.8	30.6	28.6	33.5
스웨덴	74.3	45.0	83.5	69.0	75.6	72.8	14.7	12.3	17.0
스위스	77.8	63.2	84.8	65.6	84.9	70.6	12.3	12.0	12.6
터키	45.5	30.5	54.0	32.7	65.9	25.2	15.5	15.6	15.4
영국	72.9	59.8	80.9	55.5	79.3	66.4	5.8	5.1	6.6
미국 <sup>1</sup>	71.2	53.9	78.8	59.9	76.9	65.7	4.0	3.9	4.2
<b>OECD</b>	<b>64.9</b>	<b>42.9</b>	<b>75.3</b>	<b>50.1</b>	<b>74.7</b>	<b>55.3</b>	<b>13.9</b>	<b>13.0</b>	<b>15.2</b>

1. 임시직 고용 관련 자료는 캐나다 2002년, 미국 2001년 기준임.  
 2.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2002년 자료임.  
 Source: OECD (2004), Labour Force Statistics 1983-2003, OECD,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028433688415>

**Further reading:** ■ OECD (1999), Implementing the OECD Jobs Strategy: Assessing Performance and Policy, OECD, Paris. ■ OECD (2004),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http://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 OECD (2000), Policies Towards Full Employment,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실업인구의 비율이다. 실업률 수준과 더불어, 실업의 존속기간과 장기실업의 발생은 개인의 복지, 가족생활, 사회환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표준화된 ILO 정의는 조사의 기준 주간(reference week) 동안 피고용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적어도 1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자,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조사 전 4주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한 자를 실업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체 부자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교육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실업 자료는 주로 국가노동력조사(National labour force surveys)를 통하여 집계된다.

실업의 추세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노동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정책과 같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OECD 국가의 실업률은 1990년대 초기에 기록된 전후(post-war) 최고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여 왔으며(그림 SS2.1), 2003년에는 일부 국가(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0% 이하를 나타냈다.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의 실업률은 경제활동 변화를 반영하여 특별히 변동이 심했다. 일본은 10년 동안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2003년에 약간 감소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기록된 실업률의 성별 차이는 상당히 좁혀졌으며, 평균적으로 2003년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의 실업률보다 약간 높았을 뿐이다(표 SS2.3). 반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성별 차이가 큰 상태로 남아 OECD 평균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은 장년 실업률(25-54세)의 2배 이상이며, 많은 유럽 국가에서 청년실업률은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해왔다. 반대로 고령자(55-64세)의 실업률은 퇴직으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자의 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일본,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장년층의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난다.

장기실업률 발생의 국가간 차이는 실업률보다 훨씬 더 크다(표 SS2.3). 장기실업률의 발생이 각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관하여 좋은 지표이지만, 그 크기의 변화가 주로 경제활동의 주기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장기실업은 경제회복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하나, 경제성장의 둔화로 1990년대 초반에 장기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는 보다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SS2.2). 장기실업의 발생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실업자가 경험하는 재정적, 사회적 고통은 실업기간, 다른 가족의 근로 여부와 공공정책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직의 기간이 길수록 다시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감소한다. 반면 짧은 실업기간은 가끔 직업전환이나 구직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장기화된 실업기간은 가구 소득, 가정생활, 정신건강보다 해로운 경향이 있고 실업자 개인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된다. OECD(2004)는 기술향상 그리고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기간을 줄인다는 증거를 보고했다. 훈련받은 노동자가 실직 후에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기간을 경험하고 훈련은 실직 후에 재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장기실업과 관련된 몇몇 사회적 관심사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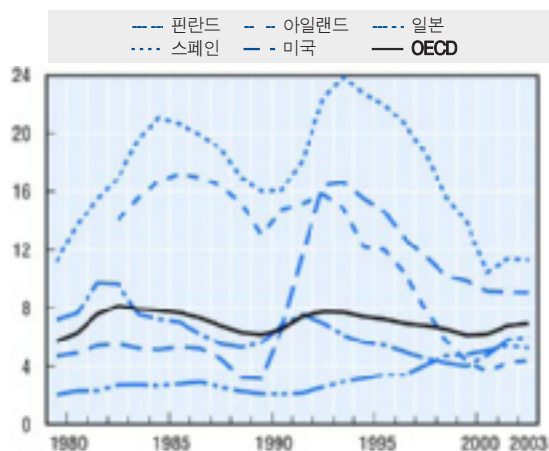
**상태지표:** 취업(SS1), 실직가구(SS3), 퇴직연령(SS8), 청년실업(SS9), 사회적 고립(CO2).

**대응지표:** 실업급여(SS5), 최저생계급여(SS6), 공공 사회지출(EQ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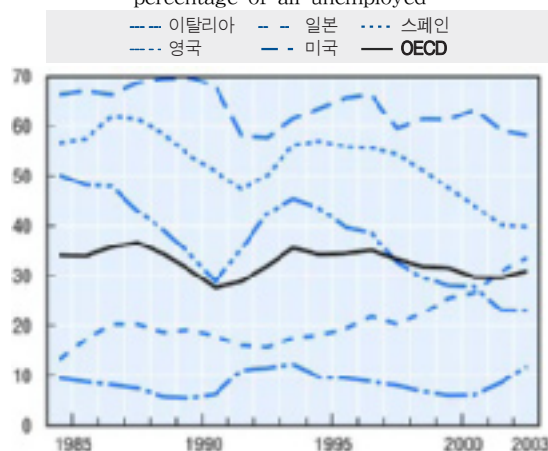
SS2.1. 2000년 이후 더 높은 실업률

Persons unemployed as a percentage of the labour force



SS2.2. 국가간 장기실업 수준과 추이의 큰 차이

Persons unemployed for 12 months or longer as a percentage of all unemployed



SS2.3. 실업지표, 2003

	실업률 (노동력의 백분율로서)					장기실업의 발생 (총실업의 백분율로서)		
	전체	연령군			남성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24	25-54	55-64				
호주	5.7	11.6	4.5	3.9	5.6	5.8	39.7	22.5
오스트리아	4.2	6.5	3.8	5.0	4.3	4.1	41.0	24.5
벨기에	7.7	19.0	7.0	1.7	7.4	8.0	64.7	46.3
캐나다	7.6	13.8	6.5	6.3	8.0	7.2	18.6	10.1
체코	7.8	17.6	7.0	4.4	6.1	9.9	69.9	49.9
덴마크	5.4	9.8	5.0	3.9	5.1	5.7	40.9	19.9
핀란드	9.0	21.6	7.3	7.7	9.2	8.9	41.4	24.7
프랑스	9.7	20.8	8.6	6.8	8.7	10.9	62.0	42.9
독일	9.3	10.6	9.1	9.7	9.6	8.8	68.5	50.0
그리스	8.9	25.1	8.0	3.0	5.7	13.6	74.5	56.5
헝가리	5.9	13.4	5.3	2.8	6.1	5.6	65.4	42.2
아이슬란드 <sup>1</sup>	3.3	7.2	2.7	1.4	3.6	2.9	24.8	11.1
아일랜드	4.4	7.6	3.9	2.4	4.8	3.9	56.6	35.4
이탈리아	8.7	26.3	7.2	3.8	6.7	11.6	74.1	58.2
일본	5.2	10.2	4.7	5.5	5.5	4.9	50.9	33.5
한국	3.4	9.6	3.0	1.9	3.6	3.1	10.1	0.6
룩셈부르크 <sup>1</sup>	2.6	7.0	2.4	0.2	1.9	3.6	46.8	27.4
멕시코	2.5	5.3	1.9	1.0	2.5	2.6	4.9	1.0
네덜란드	4.2	7.8	3.6	3.0	4.1	4.3	49.3	29.2
뉴질랜드	4.7	10.2	3.5	3.6	4.4	5.0	27.4	13.3
노르웨이	4.4	11.7	3.8	1.4	4.8	3.9	20.6	6.4
폴란드	19.6	43.0	17.3	11.2	19.0	20.4	70.2	49.7
포르투갈	6.4	14.6	5.7	4.3	5.6	7.3	57.1	32.0
슬로바키아	17.5	33.1	15.1	13.6	17.3	17.7	76.4	61.1
스페인	11.3	22.7	10.2	6.9	8.2	15.9	59.6	39.8
스웨덴	5.8	13.8	4.9	4.8	6.3	5.2	35.4	17.8
스위스	4.1	8.6	3.6	2.5	3.8	4.5	48.8	27.0
터키	10.5	20.5	8.7	3.7	10.7	10.1	39.9	24.4
영국	4.8	11.5	3.8	3.3	5.5	4.1	37.3	23.0
미국	6.0	12.4	5.0	4.1	6.3	5.7	22.0	11.8
<b>OECD</b>	<b>6.9</b>	<b>13.6</b>	<b>6.1</b>	<b>4.8</b>	<b>6.8</b>	<b>7.1</b>	<b>46.3</b>	<b>31.0</b>

Note: 자료는 15세 이상 인구를 말함.

1.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는 2002년 자료임.

Source: OECD (2004), Labour Force Statistics 1983-2003, OECD,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248745383306>

Further reading: ■ OECD (2004),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http://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고용과 실업지표는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개인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웰빙(well-being)은 모든 가족구성원이 기여하는 자원의 공유에 달려있다. 가족의 어떤 성인 구성원도 유급고용이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가난과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고 그들의 일상생활은 공적급여에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실업자와 비활동자 상당수가 다른 성인 실업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사회적 불안이 더 높아지고, 이러한 가정의 생활환경은 복지정책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실직가구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는 역할 모델로서 취업성인(working adult)이 부재한 추세인데, 취업성인은 교육적으로나 미래 노동시장에서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자주 거론되는 요인이다.

실직가구의 지표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한 지표들은 개인(즉, 실직가구에 속한 사람의 수) 또는 가구(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업은 다른 방법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ILO 약정 또는 다른 기준). ‘한 눈에 보는 사회’의 이전 판들에서 지표들은 적어도 생산가능인구(15-64세) 한 명이 있는 가구 중 어떠한 가족구성원도 유급고용에 있지 않은 가구로 정의한 반면, 본 절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가장이 있는 가구 중 아무도 일하지 않는 가구에 사는 모든 개인들(아동을 포함하여)로 정의한다. “근로”는 지난 해 동안의 실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에 의해 정의된다. 약 25개 OECD 국가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가구소득조사와 미시자료(micro datasets)로부터 발췌되었고 이는 또한 소득분배와 가난의 추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절에서도 이용된다.

OECD 24개 국가는 생산가능인구의 가장을 포함한 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10% 보다 약간 적은 성인은 유급직장을 갖지 않은 가구에 속해 있다. 그림 SS3.1은 이러한 비율이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의 5% 이하부터 폴란드, 독일에서 15% 이상까지 분포하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의 보편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실직가구에서 구성원의 수가 대부분의 국가 특히 네덜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에서 감소하여 왔다. 반면, 폴란드, 독일, 체코에서는 작은 증가가 있었으며 좀 더 큰 증가가 헝가리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구조의 전환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실직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직업을 가진 구성원의 수적 변화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두 변수간의 관계는 크지 않다. 그림 SS3.2는 선택된 OECD 국가에서 (노동력 조사로부터) 생산가능인구 중 실직과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 실업률은 일부 국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0년대의 후반기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감소가 실직가구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영국과 핀란드에서는 실직가구는 증가하였으나 호주와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 취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직가구수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더 높은 고용이 좀더 낮은 실직으로 일관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직업의 양극화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의 증가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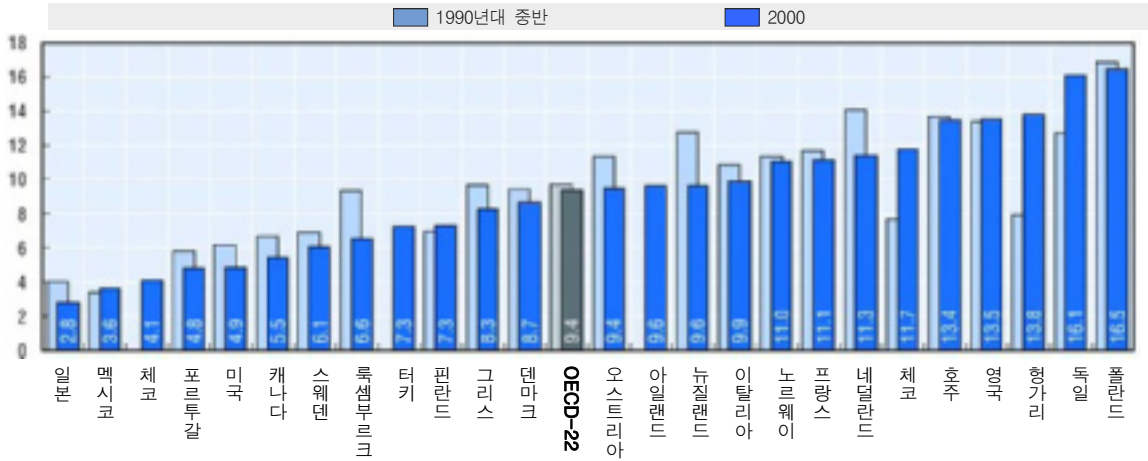
실직은 다른 가구의 특성과 상호작용한다. 실직은 양부모 가구(단지 5%)보다 특히 편부모 가구(평균 32%)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에서 실직 편부모의 비율은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에서 두 배 정도 높다. 당연히 실직가구원은 빈곤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주 소득원으로서 공공부조에 의존한다. 실직 가구의 감소는 가난과 배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좋은 소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부모 가구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취업률의 적정한 증가조차 편부모의 확산에 따른 빈곤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상태지표:** 고용(SS1), 실업(SS2), 취업모(SS4), 교육수준(SS7), 상대빈곤(EQ1), 사회적 고립(CO2).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실업급여(SS5).

SS3.1. 국가간 실직가구에 속한 개인 비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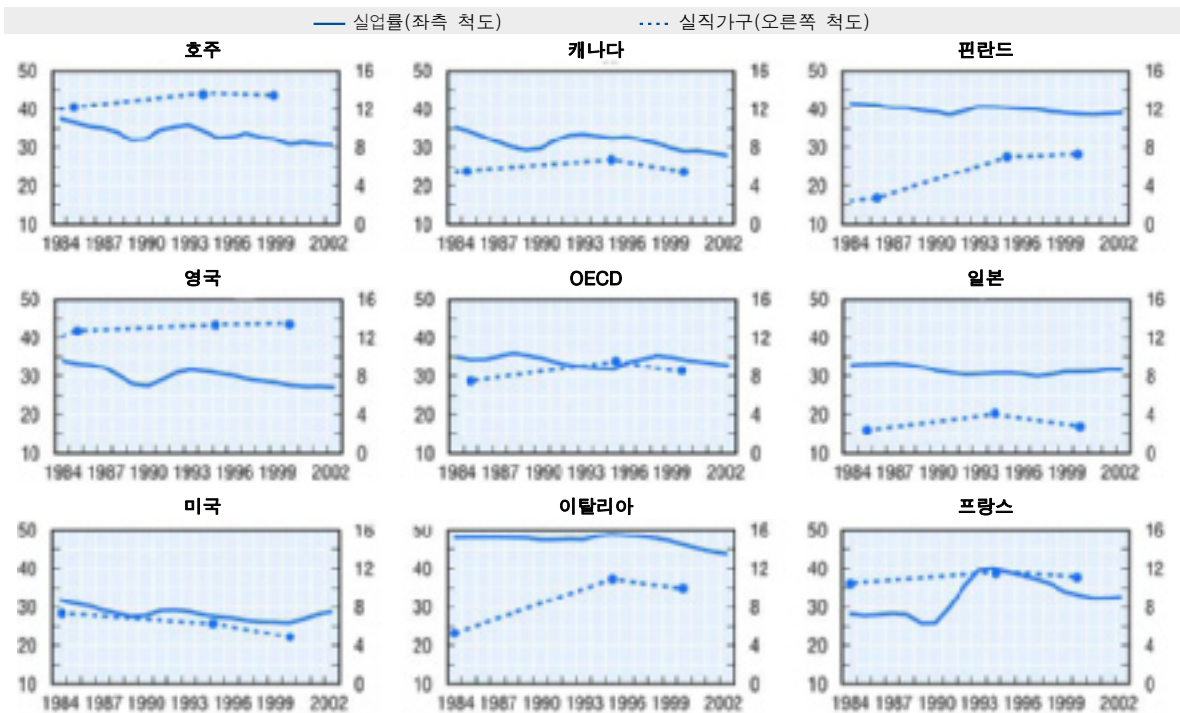
Persons living in households with a working-age head where no one works,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Note: "2000" 자료는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의 1999년 자료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00년 자료임. 독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1년, 체코, 멕시코, 터키는 2002년 자료임. "1990년대 중반"은 호주의 1993년 자료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995년 자료임.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멕시코, 터키는 1994년이며, 체코와 뉴질랜드는 1996년 자료임.

SS3.2. 실업과 실직의 추이간에 큰 관련이 없음

Persons in jobless households with a working-age head and non-employment rates of individuals, percentages



Note: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 개인을 말함. 점은 조사연도를 말함.

Source: Estimates based on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OECD (2004), Labour Force Statistics 1983-2003, OECD,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225437262671>

Further reading: ■ Gregg, P., R. Scutella and J.Wadsworth (2004), "Reconciling Workless Measures at the Individual and Household Level: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Spain and Australia", LSE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Discussion Paper, No. 635, London. ■ OECD (1998),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여성이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공공정책은 흔히 개인 자율의 향상, 남녀평등, 빈곤 특히 아동빈곤의 감소, 부가적인 노동시장 자원의 유동 같은 넓고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경향을 장려하여 왔다.

본 절에서 소개하는 지표는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에 따른 15-64세 유자녀 여성 취업률이다. 목록은 자녀 연령에 따라 3세 이하, 3-5세, 6-14세로 구분한다. 어린 자녀의 주어진 연령층에 존재하는 측정 문제가 국가간 조사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그림 SS4의 Notes 참조). OECD 국가의 노동 조사는 출산과 육아휴가 중의 유자녀 여성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처럼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지속되는 육아 관련 휴가를 이용하는 유자녀 여성은 일반적으로 노동력조사에서 취업된 것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과거보다 평균적으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러한 추세는 15-24세의 여성에 대한 취업률의 근소한 감소에 기여한다. 반면, 장년과 고령의 여성취업률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증가해 왔다(OECD, 2002). 더불어 어린 자녀(6살 이하)가 있는 여성에 대한 취업률도 증가하여 왔다. 스웨덴, 핀란드, 일본은 예외적으로 취업률이 감소해 온 국가이다(그림 SS4.).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여성의 고용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표 SS4.2). 여성은 자녀가 어릴 때 육아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않고 일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에서 더 나이 많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 좀 더 흔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예외는 덴마크, 포르투갈, 동유럽 국가뿐이다(도표 SS4.3). 시간제 직은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호주에서 고용의 가장 일반적 형태이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비록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시간제직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용직(full-time work)이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시간제직 발생 또한 교육 배경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유자녀 여성에서 가장 높다. 반면, 높은 교육 배경을 가진 유자녀 여성은 상용직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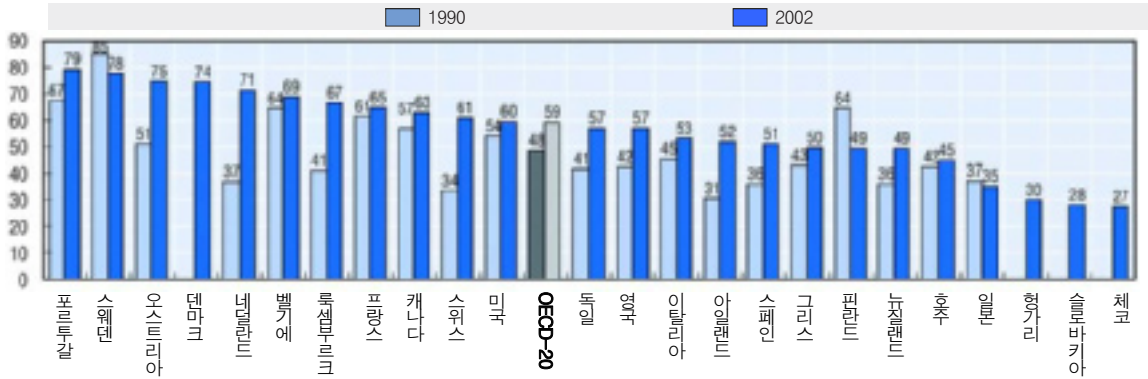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유자녀 여성의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데 각 정책의 중요성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공공정책에서 남녀평등의 강한 역점이나 육아 관련 관대한 공공 휴가제도와 보육서비스가 북부 유럽 국가에서 유자녀 여성의 높은 취업률에 대한 기반이 되는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가정과 일의 조화”(family-work reconciliation)가 주로 시간제직의 고용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직장 내의 혜택과 민간보육제도의 광범위한 이용이 유자녀 여성의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게 한다.

**상태지표:** 고용(SS1), 실직가정(SS3), 교육수준(SS7), 상대빈곤(EQ1), 아동빈곤(EQ3).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총사회지출(EQ7).

SS4.1.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미만인 취업모의 증가

Employment rates for mothers with youngest child aged under 6,<sup>1</sup> 1990<sup>2</sup> and 2002<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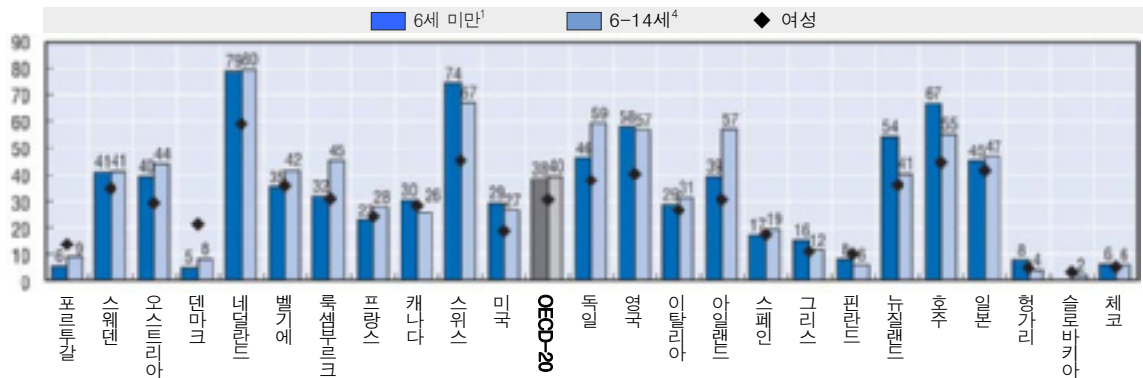
SS4.2.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별 유자녀 여성 취업률의 증가

Mothers' employment rates by age of youngest child, in 2002,<sup>3</sup> percentages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3세 미만	3-5	6-14 <sup>4</sup>	3세 미만	3-5	6-14 <sup>4</sup>
오스트리아	80.1	70.3	69.8	54.4	51.7	49.4
벨기에	70.4	67.4	68.6	70.6	63.1	58.2
캐나다	58.7	68.1	76.3	74.2	68.2	70.1
체코	16.8	36.5	69.2	43.2	58.2	74.7
덴마크	71.4	77.5	79.1	75.3	81.9	76.3
핀란드	32.2	74.7	85.3	51.7	50.3	47.7
프랑스	66.2	63.2	67.5	72.9	82.5	77.4
독일	56.0	58.1	64.3	58.2	64.5	77.8
그리스	47.9	50.9	53.5	57.2	56.9	67.0
아일랜드	51.1	52.3	51.1	56.6	60.0	69.4
OECD-20				<b>57.5</b>	<b>61.8</b>	<b>67.0</b>

SS4.3. 시간제직 취업모 비중의 높은 증가

Share in part-time<sup>5</sup> employment for mothers with youngest child aged under 6,<sup>1</sup> other mothers and all women, 2002,<sup>3</sup> percentages



Note: 위의 그림에서 국가는 2002년 가장 어린 자녀가 6세 미만인 취업모 감소 순위.

1. 호주는 5세 미만, 스웨덴은 7세 미만임.
2. 호주와 미국은 1989년,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는 1991년 자료임.
3.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미국은 2001년, 호주는 2000년 자료임.
4. 미국은 6-13세,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은 6-16세, 뉴질랜드는 6-17세임.
5. 호주, 일본, 스웨덴, 미국(주당 35시간 미만)을 제외하고, 주당 30시간 미만임.

Source: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United States: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www.bls.gov/cps](http://www.bls.gov/cps); OECD (2002, 2003, 2004),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s. 1, 2 and 3,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social/familyfriendly](http://www.oecd.org/els/social/familyfriendly)).

StatLink: <http://dx.doi.org/10.1787/044487431424>

Further reading: ■ OECD (2002, 2004),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http://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실업급여(out-of-work benefits)는 가장이 실직되었을 때의 가계소득과 실직 전 고용되었을 때의 가계소득을 비교한다. 고려될 가계소득은 고용상태이건 아니건 급여에서 지불한 세금을 제외한 순수입이다. 대체적으로 실업대체율은 사회의 고용과 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의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유급고용을 시작하는 재정적 유인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실업대체율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한 “전형적”(typical)인 경우에 처한 개인들에게 적용하면서 개별 국가에 대한 세금을 기반으로 한 모형에 기초한다.

이러한 실업대체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개인은 40세이고 22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가정한다. 대체율은 홀로 사는 사람들과 배우자가 일도 하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지 않고 보육급여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4세와 6세된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가구에 대해서 산정한다. 실업대체율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실직 당시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일정 기간을 모두 소진하면(대개 자산이 매우 적은 경우로 한정되는) 공공부조(“복지”)급여에 의존한다. 다양한 가족유형과 실업지속기간에 따라 이러한 대체율을 평균하여 전반적인 지표가 산정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추정치는 순대체율의 단순평균으로, 동일한 가중치를 준 5년 동안의 매달 급여수령액으로, 4가지 가족유형과 평균생산노동자(APW) 소득의 100%와 66.7%의 이전 소득 두 가지 경우로 계산한다. 추정은 공공부조의 자격유무에 따라 두 경우로 계산한다. ‘급여와 임금’(2004년에 출판)이라는 표제의 OECD 출판물은 방법론과 가정에 관하여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실업자에 대하여 적당한 수준의 급여를 정하는 것은 정부에게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킨다. 한편으로 너무 낮은 수준은 실업보험과 공공부조 수급자를 심각한 고통 속에 남겨, 구직자에게 적합하고 지속적인 직업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에 매우 관대한 급여는 개인들에게 구직을 위한 재정적 동기를 거의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생산연령(working age)의 노동가능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세금과 다른 급여(예: 시행 중인 가족과 주택 급여)의 효과를 고려한 후에 실업급여에 의존할 때와 취업시의 가계소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간에 실업대체율은 단지 실업보험만을 고려하였을 때 2002년에 40%였으며, 공공부조 역시 존재하는 경우 60%를 약간 상회하였다(그림 SS5.1). 공공부조가 장기실업 상태에서 더욱 중요한데, 비록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부 국가의 경우 실업의 초기에도 가구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대개 자산은 실업의 초기에는 관련 한도 이상임).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동시 수령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공공부조를 제외한 5년 동안 실업대체율은 벨기에(69%)에서 가장 높고, 북유럽 국가와 유럽대륙 국가가 가깝게 뒤따르며, 일본과 앵글로색슨 및 남부 유럽 국가에서 가장 낮다.

실업대체율은 가족구조와 실업기간에 따라 다르다(표 SS5.2). 평균적으로(실업의 초기에 약 70%이고 장기실업에서 60%임) 유자녀의 편부모와 양부모 가족의 순대체율은 일반적으로 무자녀 가족보다 높다. 실업 첫 달의 대체율은 일반적으로 실업 5년 후의 대체율을 약 1/3 상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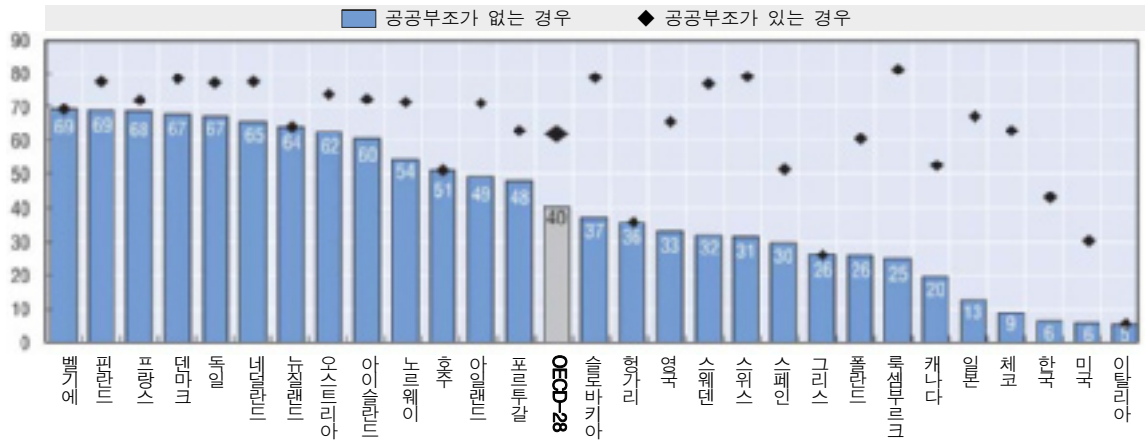
**상태지표:** 실업(SS2), 상대빈곤(EQ1).

**대응지표:** 최저생계급여(SS6).



SS5.1. 국가간 순실업대체율의 큰 차이

Average of net replacement rates over 60 months of unemployment, in 2002, for four family types and two earnings levels, without and with social assistance, in percentages



SS5.2. 순실업대체율은 유자녀 편부모와 양부모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음

Net replacement rates for two phases of unemployment and six family types, in 2002, at 100% of APW level, in percentages

	초기 실업 <sup>1</sup>						장기 실업 <sup>2</sup>					
	무자녀			두자녀			무자녀			두자녀		
	독신	홀벌이 기혼자	맞벌이 기혼자	편부모	홀벌이 기혼자	맞벌이 기혼자	독신	홀벌이 기혼자	맞벌이 기혼자	편부모	홀벌이 기혼자	맞벌이 기혼자
호주	32	29	44	54	66	54	32	29	44	54	66	54
오스트리아	55	57	76	71	73	81	51	62	47	68	78	68
벨기에	66	58	78	66	61	80	55	58	72	66	61	75
캐나다	64	66	78	75	76	85	22	37	45	55	59	58
체코	50	50	72	54	54	74	31	52	44	59	71	51
덴마크	59	66	76	75	76	78	50	75	54	72	78	60
핀란드	64	70	77	83	82	81	51	67	51	66	85	64
프랑스	71	67	82	76	76	82	41	54	44	63	70	52
독일	61	54	85	83	78	96	61	64	71	76	68	77
그리스	46	46	62	50	50	62	0	0	41	3	3	41
헝가리	44	44	66	55	54	71	24	24	42	31	30	49
아이슬란드	49	43	69	65	57	76	49	66	70	65	74	76
아일랜드	29	45	60	54	55	67	51	66	45	59	73	54
이탈리아	52	56	71	60	60	76	0	0	45	0	0	53
일본	63	61	79	74	61	81	34	48	42	74	71	52
한국	54	54	72	54	53	73	17	28	41	39	49	40
룩셈부르크	85	84	89	89	89	93	50	67	42	61	78	47
네덜란드	71	74	83	78	78	83	58	69	48	64	72	52
뉴질랜드	37	54	45	62	67	51	37	54	45	62	67	51
노르웨이	66	67	80	81	73	83	42	50	44	65	64	47
폴란드	44	46	61	50	51	64	30	46	42	55	73	52
포르투갈	78	76	88	76	77	87	24	46	49	60	61	64
슬로바키아	62	65	78	69	72	82	42	71	43	68	91	60
스페인	70	71	83	76	75	87	27	32	45	38	41	44
스웨덴	81	81	89	90	83	90	51	67	41	55	78	48
스위스	72	71	82	82	82	88	51	63	43	65	71	46
영국	45	45	52	46	46	61	45	56	42	64	73	60
미국	56	57	74	54	53	76	7	12	43	35	41	49
<b>OECD</b>	<b>58</b>	<b>59</b>	<b>73</b>	<b>68</b>	<b>67</b>	<b>77</b>	<b>37</b>	<b>49</b>	<b>47</b>	<b>55</b>	<b>62</b>	<b>55</b>

- 대기기간 이후의 초기 실업. 근로 또는 비근로 상황 하에서 사회부조 “부가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실업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최대급여기간이 12개월 이하이더라도 연간급여(즉 월액 급여 12)에 의하여 결정됨. 기혼 부부의 경우 평균생산근로자(APW)의 소득은 한 배우자만 포함되고, 다른 배우자는 홀벌이 부부의 소득이 없는 “비활동(inactive)”과 맞벌이 부부의 APW의 67%에 해당하는 정규소득자로 가정함.
- 세 후 및 60개월 수급시 실업급여, 사회부조, 가족 및 주택 급여 포함. 기혼 부부의 경우, APW 비율은 한 배우자만 가정하고, 다른 배우자는 홀벌이 부부의 소득이 없는 “비활동(inactive)”과 맞벌이 부부의 APW의 67%에 해당하는 정규소득자로 가정함.

Source: OECD (2004), Benefits and Wages – OECD Indicators,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720688707001>

Further reading: ■ Pearson, M. and S. Scarpetta (2000), “What do We Know about Policies to Make Work Pay?”, Economic Studies, No. 31,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OECD 국가의 조세-급여(tax-benefits)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순급여수준은 여러 기준과의 상대적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순급여수준은 일시적으로 실직한 사람에 대하여 재취업할 재정적 동기의 측정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가정으로 인식되는데 사용되는 소득의 결정점(cut-off points)과 비교하였을 때, 순급여수준이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급여제도의 역량에 관한 정보를 준다.

아래 지표들은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들에게 이론적으로 이용 가능한 순급여소득(net benefit income)을 소득 -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3개의 결정수준(가계소득 중앙값의 40, 50 및 60%)과 비교한다. 공공부조에 완전히 의존하는 6세와 4세의 두 아이를 가진 결혼한 부부에 대한 주택급여의 유무 두 경우에 관한 정보가 제시된다. 법적 최저임금을 가진 국가들에 한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에서 고용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포함한 각각의 가구가처분소득에 관한 정보도 제시한다. ‘급여와 임금’(2004년에 출판)이라는 표제의 OECD 출판물은 방법론과 가정에 관하여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최저생계급여(공공부조와 “복지”)은 소득-빈곤의 비교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기준(threshold) 이하에서 보통 결정된다(그림 SS6.1).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급여에 의존하는 두 자녀를 둔 부부는 중위 60% 이하의 가처분소득을 가진다.

그림 SS6.1은 두드러진 세 유형의 국가들로 구분된다. 폴란드, 체코,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에서 최저생계급여에 의존하는 두 자녀를 둔 부부 가족은 주거급여의 유무에 상관없이 40-60% 범위 이내의 가처분소득을 가진다.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는 “최저생계” 공공부조급여에 주거급여가 있는 경우에만 40-60% 이내의 가구소득 수준을 보장받는다. 나머지 국가에서 “최저생계” 공공부조급여는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소득수준에서 수혜자가 된다. 이것은 특히 (미국에서는 푸드 스탬프의 가치를 포함한) 공공부조급여가 인구 전반의 소득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스페인, 미국, 헝가리의 경우와 생산연령층에 대한 보편적인 최저소득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와 이태리의 경우이다.

이러한 급여 타당성의 지표는 가계가 연중 내내 공공부조급여에 의존하고 다른 소득원(예: 다른 사회적 보호급여로부터 받는 실업 또는 장애 또는 근로소득 등)이 없다는 가정을 반영한다. 자신을 부양하는 다른

수단이 없는 사람들(그림 SS6.1에 나타남)은 사회정책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가계는 여러 소득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과 급여 시스템이 그림 SS6.1에서 제시된 것 보다는 빈곤의 위험을 줄이는데 전반적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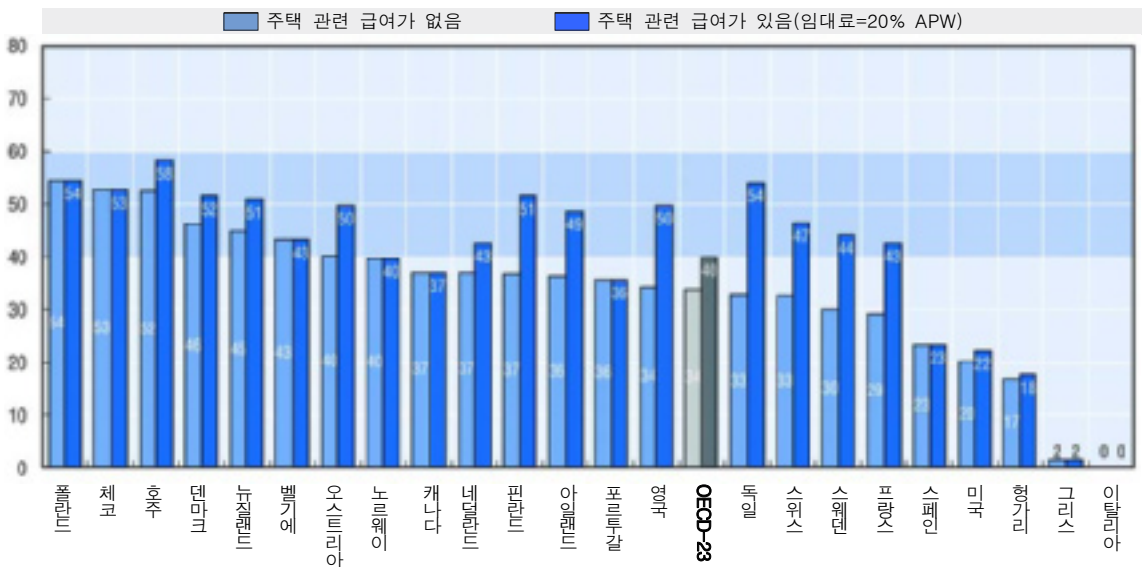
한 사람의 고용수입은 빈곤으로부터 가족을 해방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호주를 제외하고 기타 국가는 오직 한 부모만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상용(full-time)직을 갖는다면 두 아이가 있는 부부 가족의 순수입은 60%의 결정수준 이하에 머무를 것이다(그림 SS6.2 참조). 약 절반의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두 상용직조차도 60% 중위 빈곤선(60% median poverty line) 이상으로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입 잠재성을 지닌 노동자의 빈곤위험을 최저화하기 위해 양 부모의 취업을 촉진하는 저렴한 보육의 제공과 같은 다른 정책의 역할을 강조한다.

**상태지표:** 실업(SS2), 상대빈곤(EQ1).

**대응지표:** 실업급여(SS5), 공공사회지출(EQ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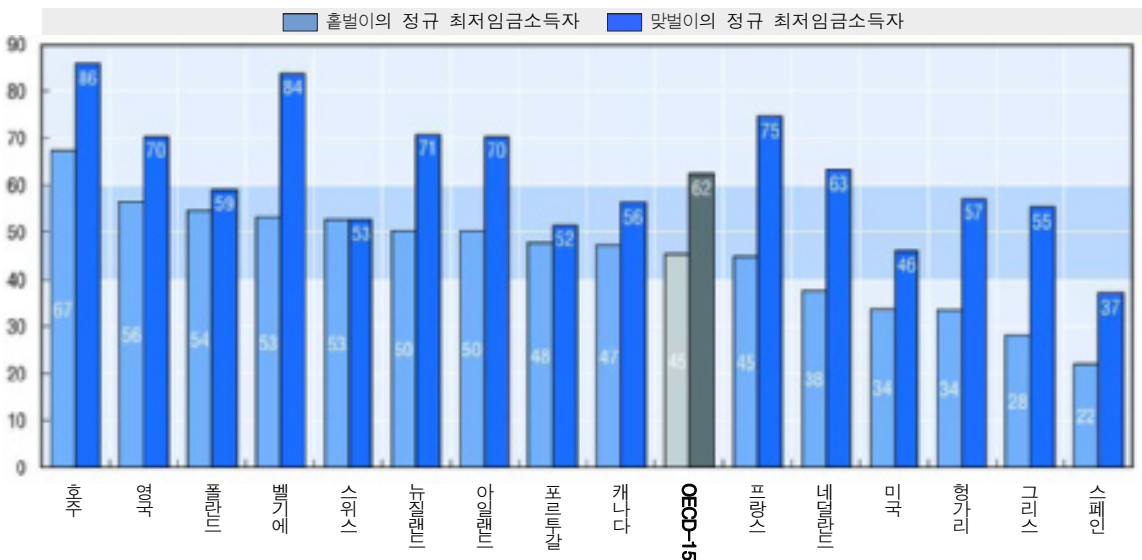
SS6.1. 일반적으로 최저생계급여는 빈곤기준 이하로 설정

Net incomes of social assistance recipients in per cent of median equivalent household income,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in 2001



SS6.2. 최저임금소득자의 경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하여 양부모의 취업은 필수적임

Net incomes at statutory minimum wages,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2001, in % of median household incomes



Note: 수평선은 가계소득 중위 40%, 50%, 60%로 정의된 다른 빈곤기준을 표시함. 국가는 SS6.1에서 주택 급여가 없는 공공부조 수급자의 순소득 감소 순으로, 그리고 SS6.2에서는 홀벌이 정규 최저임금소득자 부부의 법정 최저임금 순소득 감소 순임.

Source: OECD (2004), Benefits and Wages - OECD Indicators,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tiv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654213227483>

**Further reading:** ■ Carone, G., H. Immervoll, D. Paturot and A. Salomäki (2004), "Indicators of Unemployment and Low Wage Trap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8, OECD, Paris. ■ OECD (2003), Taxing Wages: 2002-2003,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교육 및 훈련을 잘 받은 인구는 국가와 개인의 사회 및 경제적 안녕을 위해 중요하다. 평생교육정책은 지속적인 기술 진보에 대한 요구와 인력시장의 변화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수준은 국가 인적자원의 가장 일반적인 측정치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 교육수준(educational attainment) 자료는 교육의 특정수준을 이수한 25-64세의 인구 비율에 기초한다. 최근 개정된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에서 교육수준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4 참조). 여기의 지표들은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초등 및 저위 중등(primary and lower secondary) 교육, 중등교육 후 대학교육이 아닌 상위 중등(upper secondary)교육, 그리고 고등(tertiary)교육(대학교육과 특수 직업교육), 국가의 교육체계가 명확히 저학년과 고학년 중등교육의 수준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중등교육의 초기 3년은 저학년 중등교육으로 간주한다. 자료는 회원국의 노동력조사로부터 발췌된 것이다.

일부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의 인구 중 25-64세의 50% 이상 학력은 적어도 상위 중등교육 수준이다. 고학력 수준 국가의 상위 중등교육 수준 미만의 인구 비율이 15% 미만이다. 국가간 대학교육 이수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그 범위는 일본, 미국, 캐나다의 40% 정도부터 터키, 포르투갈, 멕시코의 10% 미만까지이다. 뒤에 언급한 국가는 모든 수준에서 교육 정도가 매우 낮았는데, 중등교육 미만의 성인이 70% 이상이며 상위 중등교육을 받은 경우는 6명에 1명 미만이다(그림 SS7.1). 평균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65%는 적어도 상위 중등교육을 받았다.

교육수준에 대한 인구분포의 측정은 평균재학년수로 요약할 수 있다(“다이아몬드” 꼴로 제시됨, 그림 SS7.1). OECD 국가의 평균을 볼 때, 평균재학년수는 12년에 약간 못 미쳤으며 10년 이하는 4개국에 불과하였다.

OECD의 자료를 볼 때, 교육수준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상위 중등교육을 받은 25-34세의 비율(75%에 가까운)은 55-64세(50%) 연령층보다 훨씬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성별 차이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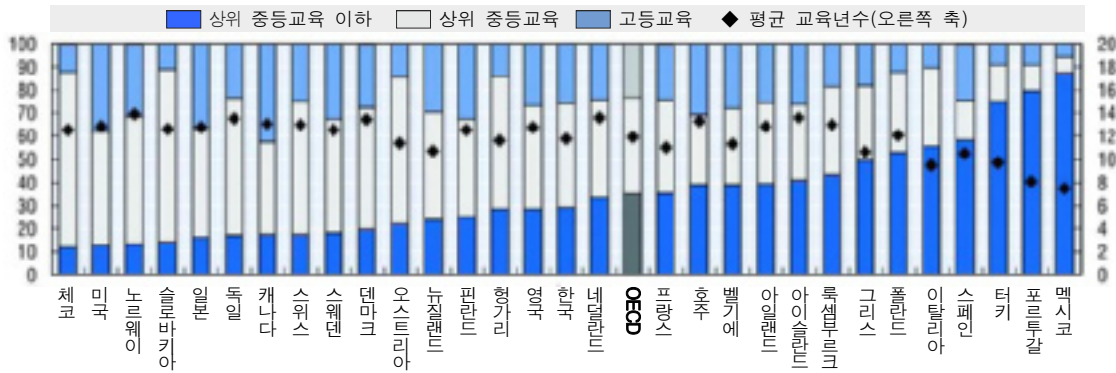
그러나 2002년 스위스, 독일, 한국, 일본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남자의 상위 비율은 여자보다 상당히 높았다.

교육에 대한 개인의 투자는 노동시장의 증가된 보수를 통해서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SS7.2는 상위 중등교육의 이수가 고용수준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교육의 영향에 대한 연구(상위 중등교육과 비교하여)는 명확하지 못하다: 몇 개 국가(폴란드, 그리스, 터키, 슬로바키아) 등에서 취업률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훨씬 높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자료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 대학교육이 상위 중등교육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가져왔다(평균적으로 50%의 높은 임금). 한편, 상위 중등교육 수준 미만 학력자의 소득은 상위 중등교육 수준 이수자보다 20% 낮다.

**상태 지표:** 고용(SS1), 실업(SS2), 청년실업(SS9), 상대빈곤(EQ1), 소득불평등(EQ2).

SS7.1. 국가간 교육수준의 차이,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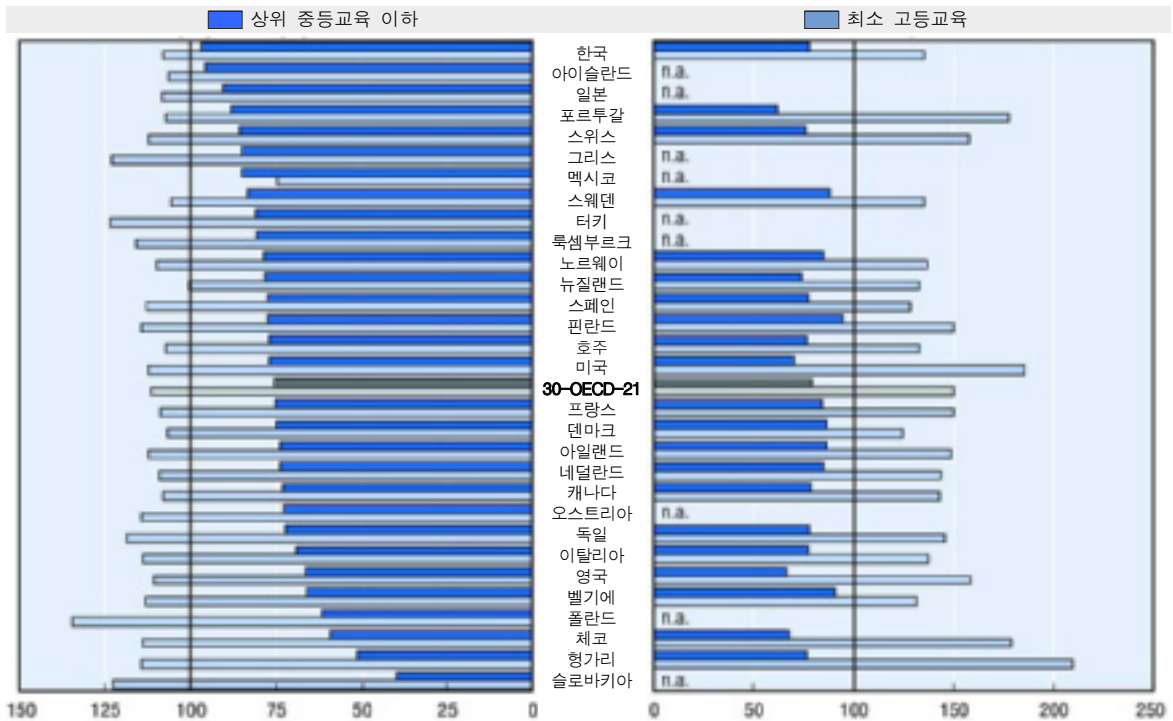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aged 25 to 64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percentages) and average years of schooling



Note: 국가는 최소 상위 중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백분율 감소 순임. 상위 중등교육은 고등교육(ISCED 6)프로그램이 아닌 포스트 중등교육을 포함.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미국의 ISCED 3C 단기 프로그램과 영국의 특정 프로그램을 포함함. 다른 모든 국가는 제외됨. ISCED-97 수준에 대한 기술과 ISCED-97 국가지도에 대한 것은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부록3 참고.

SS7.2. 상위 중등교육 수준의 달성은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가짐

Labour market outcomes relative to persons with upper secondary education<sup>1</sup> aged 25 to 64



Note: 국가는 상위 중등교육 이하의 인구당 상대고용비의 감소 순임. 상위 중등교육 수준에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 이후 교육을 포함(index=100).  
1. n.a. = 해당자료 없음.

Source: OECD (2004),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du/eag2004](http://www.oecd.org/edu/eag2004)).

StatLink: <http://Dx.doi.org/10.1787/100816263133>

Further reading: ■ OECD (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First Results from PISA 2003,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퇴직은 일반적으로 “본”(main)직으로부터 업무의 중단과 노령연금을 받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퇴직의 의미는 국가마다 다르며 연금제도에 따라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퇴직연령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연령의 국제적인 비교는 간접적인 측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간접적인 측정은 회원국의 노동력조사에 의해 측정됨으로서 무노동력으로 이동의 비교에 자주 이용된다. 만일 조사기간 중 노동인력(labour force)으로 있지 않은 특정 연령 이상의 사람은 “퇴직”(retired)으로 간주한다. 퇴직으로 “순”(Net)이동은 근로 중도 아니고 실업으로 분류되지도 않는 특정연령 이상의 인구 비율을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 대리 측정된다.

노동력조사 자료에 적용된 방법에 따라 퇴직연령의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전 출판된 ‘한 눈에 보는 사회지표’는 “기대”(expected) 퇴직연령의 개념에 대체적으로 가깝다. 본 절에서 제시된 것은 현재 진행중인 고령근로자에 관한 OECD 연구(예: 고령과 고용정책의 시리즈의 여러 국가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또한 평균 “실제”(effective) 퇴직연령을 측정한다. 이는 각 연령에서의 발생하는 퇴직(withdrawal)율에 의해 가중치를 둔 개개인의 노동퇴직연령의 합으로 정의된다. 자료는 5년의 주기로 관찰하는 5년 단위 연령층의 노동참여비율의 변화에 기초한다.

많은 OECD 국가에서 공적연금 수급자격의 “공식”(official) (또는 “표준”)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인데; 어떤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의 수급에 지속적인 유급 고용의 조건이 부과되며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국가에 따라 공식연령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높은 국가: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낮은 국가: 그리스, 프랑스,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터키). 그러나 개개인의 퇴직 결정은 공식연령보다 훨씬 많은 요소에 달려있다. 관련 요인은 노동시장의 주기적 상태변화, 인구학적 요인, 직장조직, 경제구조의 변화, 문화적 고려, 건강 상태, 배우자의 선택과 가족 내의 의무를 포함한다.

“실제”(effective)퇴직연령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식”(official)퇴직연령보다 상당히 낮다. 평균적으로 30개 OECD 국가에서 실제퇴직연령은 여성 61.4세, 남성 63.3세이다(그림 SS8.1). 실제퇴직연령은 아일랜드와 멕시코의 남성이 평균 70세 이상으로 가장 높고, 남녀가 50세 후반에 퇴직하는 경향을 보이는 동유럽과 벨기에가 가장 낮다.

한편, 대부분 국가에서 실제퇴직연령은 공식퇴직연령보다 낮으나 예외도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 실제 퇴직연령은 남녀 모두 공식퇴직연령을 5년 이상을 초과한다. “본”(main)직에서 퇴직이 노령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일본의

남성은 공식퇴직연령보다 거의 10년 이상 일한다. 유사하게 터키와 그리스에서는 남녀 모두 공식연령보다 2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더 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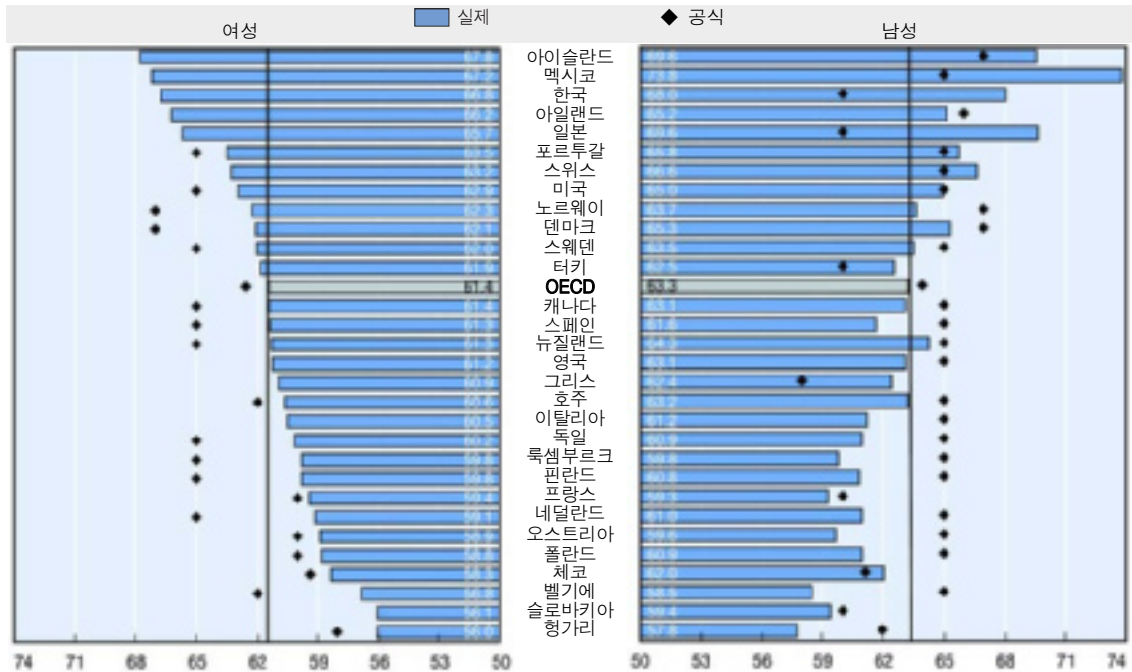
지난 25년 동안 실제퇴직연령은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그림 SS8.2)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어떤 국가들 (예: 폴란드와 프랑스)에서는 1990년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외가 일부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실제퇴직연령은 호주, 영국, 핀란드(남성으로 제한됨)에서 1년 이상, 이탈리아에서 2년 이상 증가하였다. 노동시장 환경의 호전과 연금제도의 개혁은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퇴직연령에 관한 최근 경향의 결과, 남녀간 퇴직연령의 차이는 이탈리아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차이가 감소하였으나 미국에서는 증가하였다.

**상태지표:** 고용(SS1), 노인소득(EQ4), 건강보정기대수명(H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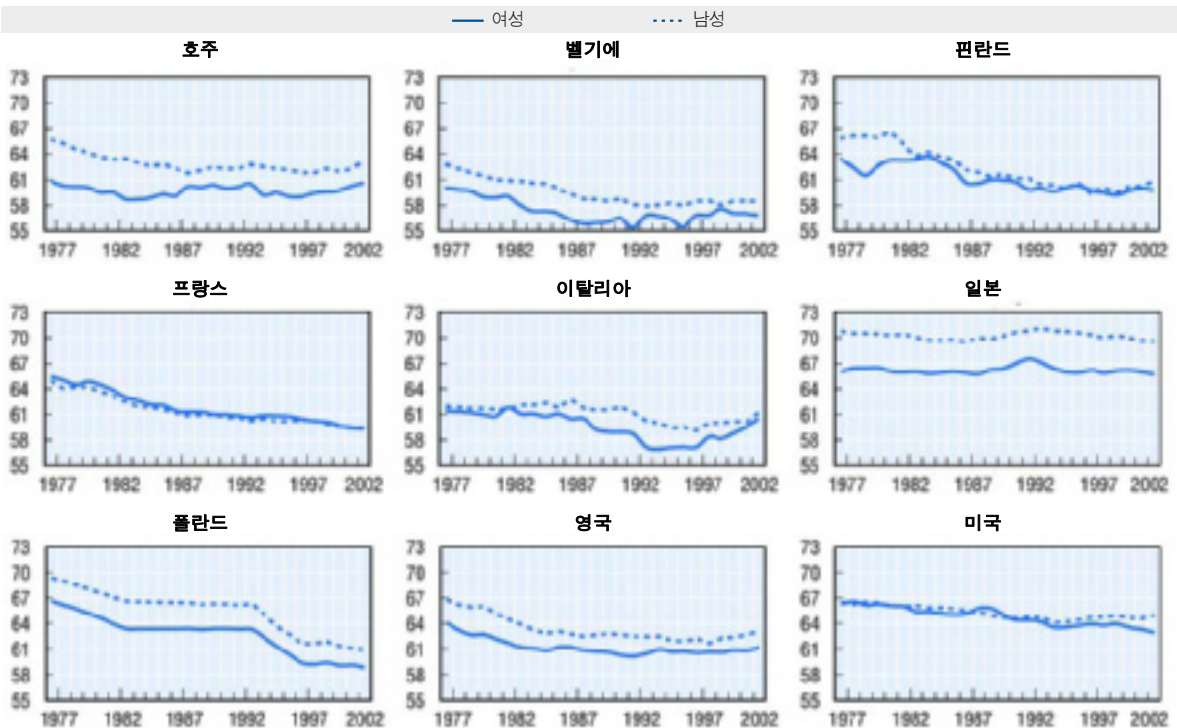
**대응지표:** 노령연금대체율(EQ8), 연금약정(EQ9).



SS8.1. 대체적으로 실제퇴직연령은 “공식”퇴직연령 이하임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versus official age, 1997-2002



SS8.2. 여러 국가의 실제퇴직연령 감소가 안정화됨  
 Evolution of average effective age by gender, 1977-2002



Note: 실제퇴직연령은 40세 이상 연속적 근로자 코호트집단(5세 단위)에 대한 5년 단위 참가율 변화의 관찰로부터 얻음.  
 Source: OECD estimates derived from the European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 <http://Dx.doi.org/10.1787/720153600464>

Further reading: ■ OECD (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various country reports, OECD, Paris. ■ Scherer, P. (2001), "Age of Withdrawal from the Labour Market in OECD Countrie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49,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청년이 취학중도 아니고 직업도 없다면 이는 현재의 안녕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이다. 저학력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이탈하는 사람은 좋은 비전을 제공하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이는 인생 전반에 걸쳐 미래 수입을 줄이고 실직, 빈곤, 그리고 사회적 낙오의 위험의 가능성을 높인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주류사회로부터 청년층 이탈이 악물이용, 범죄, 자살의 우려를 높이기도 한다.

이 지표는 동일 연령의 총인구의 백분율로서 15-19세와 20-24세의 두 연령층으로 구별하여 특정 연도에서 교육, 훈련 또는 고용 중이 아닌 청년의 비율로 나타낸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청년은 전일 또는 시간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공식 및 아주 짧은 단기의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자료는 회원국의 노동력조사를 통해 얻었으며 조사 4주 전의 자료이다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4).

대체적으로 해당 국가자료를 보면, 2002년 전체 10대(15-19세)의 8%와 청년(20-24세)의 17% 정도는 취학 중 또는 취업 중도 아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에서는 15-19세의 4% 미만이 교육 중이 아니며 일도 하지 않는 반면 이탈리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멕시코, 터키에서는 그 비중이 10%를 초과하고 있어 국가간 차이가 크다.

취업 및 취학 또는 훈련과정이 모두 아닐 가능성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며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한다(그림 SS9.2). 대부분 국가에서 이러한 비율은 1980년 중반 이후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성이 뚜렷하였다(그림 SS9.1). 그러나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에서는 취학중 또는 취업상태가 아닌 20-24세의 여성이 34% 이상이었다.

국가간의 취학 중 또는 취업상태도 아닌 청년층 비율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취학률의 차이를 반영한다. 2002년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에서는 20-24세의 취학률은 50%를 초과했으나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는 25% 또는 그 미만이었다.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청년취학률의 증가는 취학도 취업상태도 아닌 청년층의 감소에 기여하였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노동시장과 훈련제도의

여러 가지 양상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취업의 용이성에 영향을 준다.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 취업에 관한 OECD의 검토에서 이러한 이동이 쉬운 국가로는 북부 유럽 국가와 영어권 국가이며, 유럽대륙과 남부 유럽 국가는 이러한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OECD, 1999).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의 손실과 사회적 소외의 위험은 물론 많은 청년층의 직장생활 지연은 부모와 동거기간이 길어지고 독립적인 가족형성이 지체되어 출산율이 더욱더 감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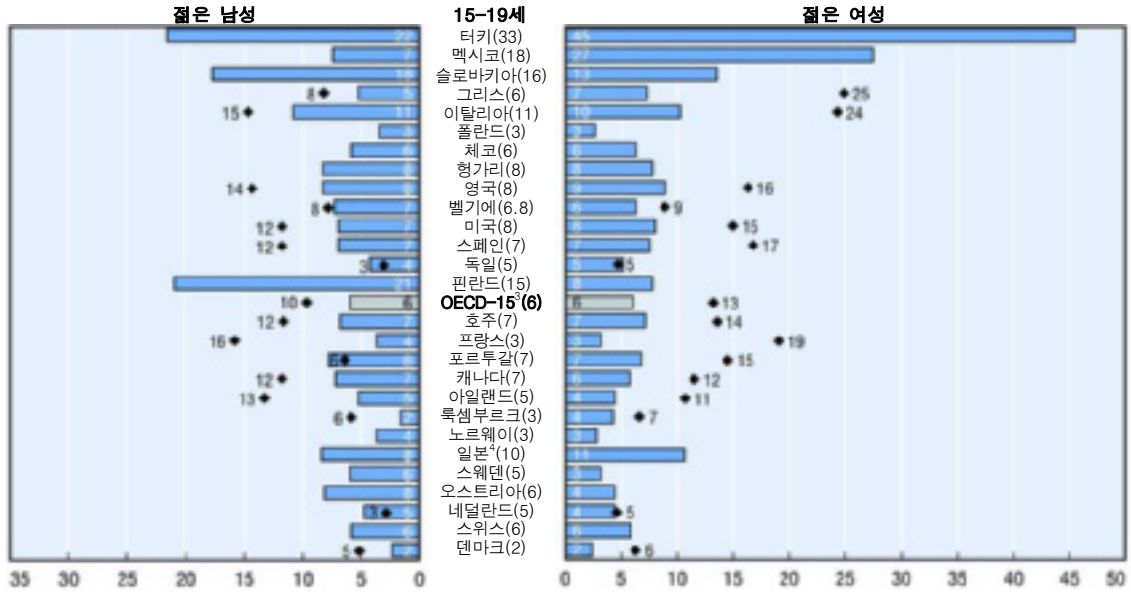
취학중도 취업상태도 아닌 청년의 만연(prevalence)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정책으로는 흔히 노동시장이 “청년 우호적(youth friendly)”인 방향으로 가는 단계,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정 위험(노숙, 약물남용, 범죄행위)에 처한 청년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특별중재를 포함한다.

**상태지표:** 실업(SS2), 실업급여(SS5), 악물이용 관련사망(CO5), 자살(CO6).

**대응지표:** 교육수준(SS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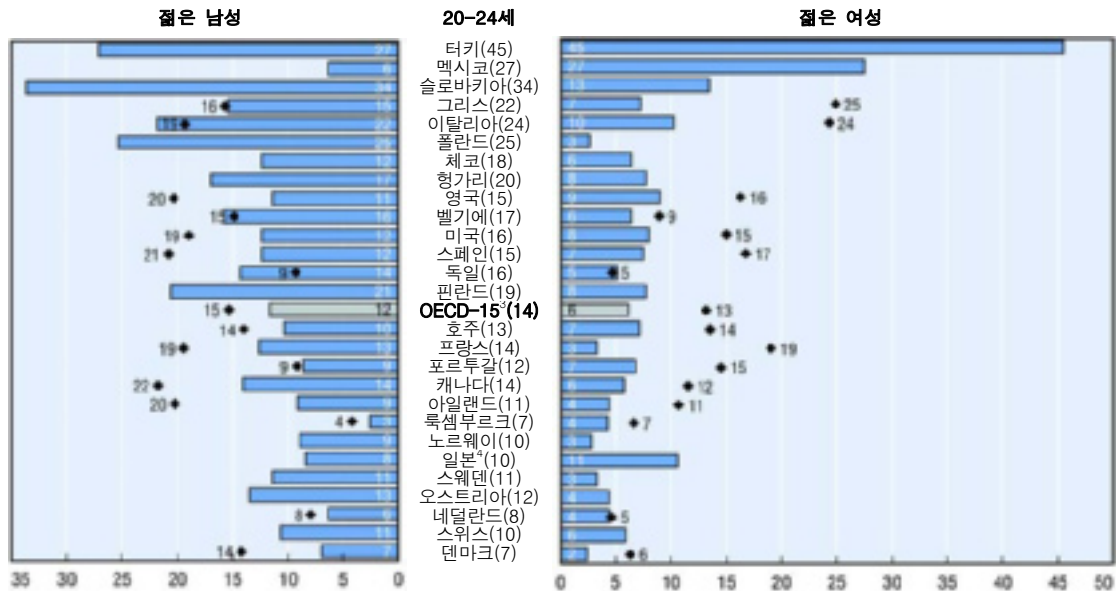
SS9.1. 지난 20년 동안 취학중도 취업상태도 아닌 10대가 감소됨

Proportion of 15-19 year-olds not in school nor in employment, by gender, 2002<sup>1</sup> (bar) and mid-1980s<sup>2</sup> (diamond marker)



SS9.2. 젊은이 중 취학중도 취업상태도 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Proportion of 20-24 year-olds not in school nor in employment, by gender, 2002<sup>1</sup> (blue bar) and mid-1980s<sup>2</sup> (diamond marker)



Note: 위의 두 도표에서, 국가는 2002년 20-24세 여성의 비율감소 순임. 괄호안의 값은 2002년 취학중도 취업상태도 아닌 훈련을 하는 젊은 남녀 비율을 말함.

1. 뉴질랜드와 미국은 2001년 자료임.
2. 캐나다는 1985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1989년, 나머지 국가는 1984년 자료임.
3. OECD-15은 두 해의 자료가 있는 15개 국가 자료임.
4. 일본은 15-24세 자료임.

Source: OECD (2004),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Tables C4.2,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du/eag2004](http://www.oecd.org/edu/eag2004)).

StatLink: <http://Dx.doi.org/10.1787/423003613632>

Further reading: ■ OECD (1999), Preparing Youths for the 21st Century. Th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the Labour Market, OECD, Paris. ■ OECD (2002), Employment Outlook, Chapter 2,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http://www.oecd.org/els/employmentoutlook)).

## 정의와 국가간 차이

OECD 국가간 빈곤에 대해 합의된 측정방법은 없다. 이후 언급에서 빈곤은 가구가처분소득(개인이 납부한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를 제외한 순소득)개념에 기초한다. 가구소득이 해당국의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개인을 “빈곤”으로 분류한다.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상대”소득기준의 이용은 최저소득층의 실소득이 중위보다 적게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빈곤이 증가할 것임과 빈곤가구 실소득이 중위소득층보다 적게 감소하는 국가에서는 빈곤이 감소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직관에 반할지 모르지만, 이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당 사회의 전적인 참여에 “관습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개념을 갖는다. 여기에 사용된 측정은 특정한 시점에서 빈곤정도를 나타낸다. 불충분한 소득기간과 가구의 자산, 다른 서비스나 자원의 접근성은 사회빈곤 정도의 평가를 위해 이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측면들이다.

가족구성원이 많은 경우는 적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겠지만, 소비 규모의 경제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 때문에, 개인 가구소득은 가구 크기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표준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용된 “등가규모”(equivalence scale)는 가구원 수의 제곱근이다. 여기 사용된 빈곤과 소득분배 자료는 각국의 컨설턴트에 의해 OECD에 제공되며, 최근 대부분 자료는 2000년 전후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보편적 방법론과 정의가 적용된 국가별 미시자료(가장 보편적으로 가구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국가간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간에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는 혼합된 조사 및 행정자료, 소득측정기간의 차이, 결측 및 극단치 처리의 방법, 그리고 현물급여, 서비스(보건의료), 간접세 영향의 배제 등이 있다.

상대빈곤은 여러 차원(dimensions)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만연(prevalence)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곤선(“빈곤율”) 이하에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빈곤의 정도이다. 빈곤자의 소득이 얼마나 빈곤선(“빈곤격차”) 이하로 떨어지는 지에 대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측정 조사의 유형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빈곤격차는 최저 소득에 중점을 둔다. 두 가지 측면에 관한 정보는 그림 EQ1.1에 있다. 이것은 2000년 빈곤(빈곤율과 빈곤격차의 결과)에 따른 국가 순위이다.

평균적으로, 2000년 25개국에서 인구의 1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빈곤소득을 나타냈으며, 이는 1990년 중반보다 약 0.5포인트 높았다. 평균 빈곤격차는 28% 정도이며, 이는 1990년 중반과 비교하여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빈곤경험은 많은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빈곤율은 미국, 멕시코, 터키, 아일랜드가 15% 이상이며, 덴마크와 체코는 5% 이하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1995년 이후 증가하였다. 한편,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감소하였다. 빈곤격차는 1/3를 초과하는 높은 빈곤율(30% 이상)을 보인 많은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예: 미국, 일본,

이탈리아). 그러나 빈곤격차(30% 이상)는 스위스, 독일, 호주, 폴란드 같은 낮은 빈곤율로 특징되는 일부 국가 역시 높았다.

빈곤의 위험은 개인의 연령, 세금의 형태와 회원국의 급여체계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두 가지 측면의 정보는 그림 EQ1.2에 있으며, 이는 두 시점에서 OECD 국가의 단순평균을 표시한 것이다. 조세와 이전(taxes and transfers)의 영향을 고려한 빈곤율은 아동과 노인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76세 이상 중에 빈곤의 위험은 활동적인 연령(41-50세)의 2배 이상이다. 조세와 이전은 모든 연령층에서 빈곤율을 감소시키지만, 고령자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1990년 중반 이후 시장 - 소득빈곤(조세와 이전의 전)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 이전의 안정적인 성장으로부터 중요한 출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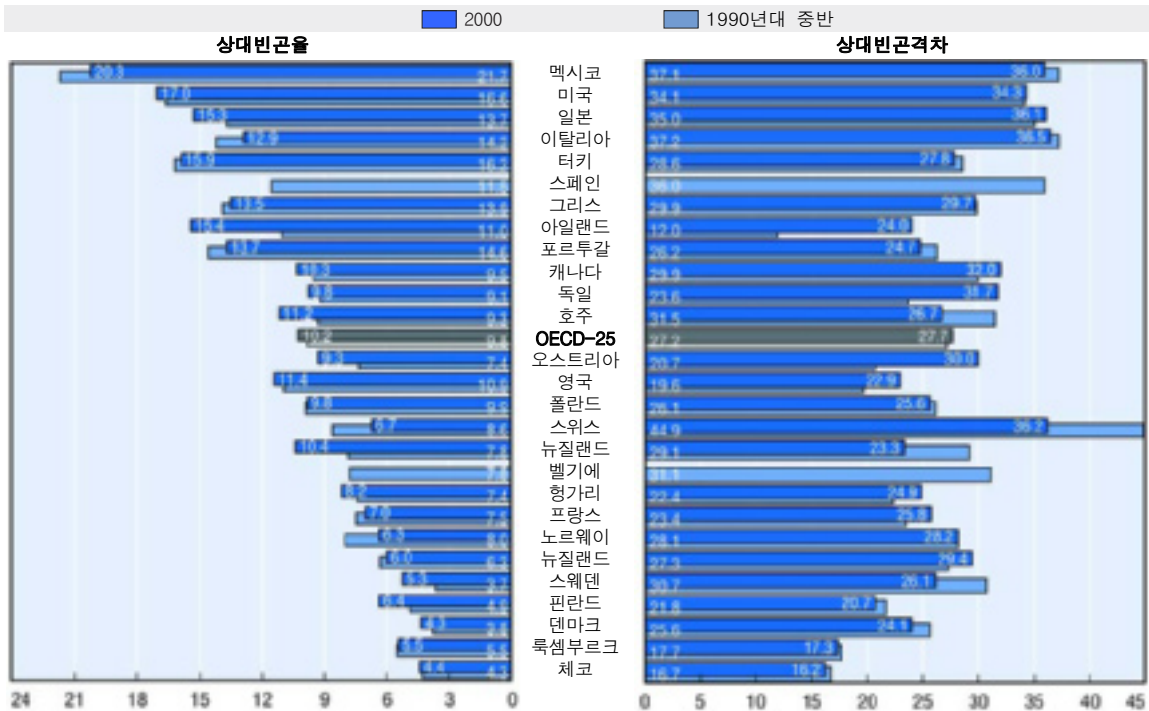
**상태지표:** 실직가구(SS3), 청년실업(SS9), 소득불평등(EQ2), 노인소득(EQ4).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노령연금대체율(EQ8), 연금약정(EQ9).



## EQ.1.1. 1990년대 중반 이후 빈곤율과 빈곤격차의 감소가 일률적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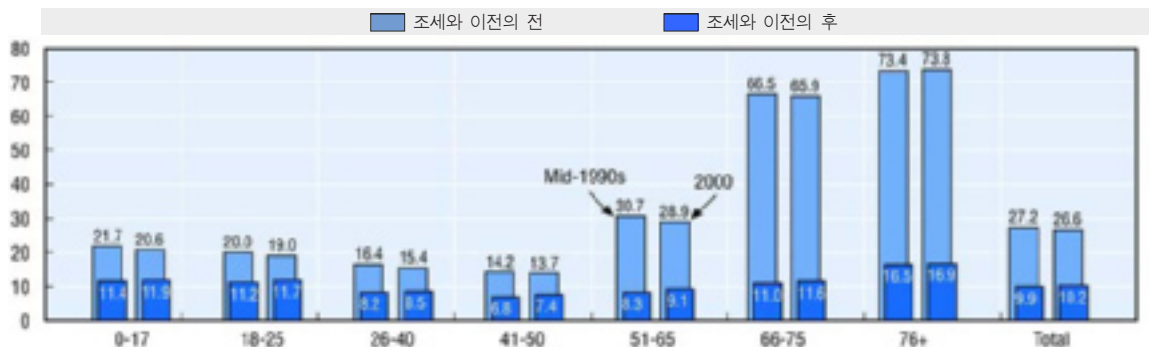
Percentages, mid-1990s and 2000



Note: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중앙소득의 50% 미만의 등가처분소득이 있는 개인의 비율임. 빈곤격차는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중앙소득 50% 빈곤기준간의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함. 국가는 빈곤율 곱하기 빈곤격차의 순임.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는 1999년, 독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1년, 체코, 멕시코, 터키는 2002년, 나머지 국가는 2000년 자료임. "1990년대 중반"은 오스트리아는 1993년,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멕시코, 터키는 1994년, 체코, 뉴질랜드는 1996년, 나머지 국가는 1995년 자료임.

## EQ.1.2. 젊은이와 노인은 빈곤의 위험에 가장 많이 폭로됨

OECD average poverty rates by age group, before and after taxes and transfers, percentages, mid-1990s and 2000



Note: 빈곤율은 21개 OECD 국가의 비가중평균임.

Source: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610223184802>

**Further reading:** ■ Förster, M. (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42, OECD, Paris. ■ Förster, M. and M. Mira d' 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여기에서 소득불평등은 가구가처분소득(가구가 납부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를 제외한 후 소득)분배로 측정된다. EQ1 지표의 경우처럼 가구소득은 등가규모탄력성(equivalence scale elasticity) 0.5를 전제로 가구 크기를 고려하여 보정한 것이다. 소득분배에 사용된 측정 요약치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가장 가난한 자부터 가장 부유한 자까지 소득의 누적백분비와 소득인원의 누적백분비를 나타냄으로써 얻은 곡선)과 45도선으로 형성된 영역이 전체 삼각형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이 값은 “완전평등”(모든 인구에 동일한 소득분이 할당)의 0과 “완전불평등”(모든 소득이 인구 중 최고소득자들에게 할당)의 100사이의 값을 가진다. EQ1의 지표와 같이 자료는 공통된 정의를 이용하여 각국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다.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의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는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가장 낮고, 1인당 소득이 낮은 OECD 국가인 멕시코와 터키에서 가장 높다(그림 EQ2.1). 대체적으로, 1980년 중반 이후 자료가 존재하는 20개 국가에서는 1995년 이후 소득불평등 지니계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은 10년 넘게 상당히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평균은 몇 가지 상이한 경향을 드러내지 않는다. 터키와 멕시코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감소하였다. 다른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지니계수는 증가하였다(핀란드, 스웨덴이 특히 현저하였고, 일본, 덴마크, 캐나다에서 또한 증가했다).

가구가처분소득의 분배는 시장소득(소득, 자영과 자본 수입)의 분배와 정부가 조세와 이전(taxes and transfers) 정책을 통해 시장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노인소득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중요한 역할과 OECD 인구의 연령구조 차이 때문에, 조세와 이전의 역할과 시장소득의 역할은 생산가능인구에 초점을 맞출 때 평가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간의 시장소득의 분배는 상당히 불평등한 경향이 있으며 분포의 최하 3분위 이하 사람은

10%를 받고 있다(표 EQ2.2). 세금의 분포는 시장 소득의 분포를 반영한다. 중간소득층의 비중은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에 기인하는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평균 약 32%로 국가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정부이전(government transfers)의 소득계층에 대한 분배는 다양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는 정부 이전의 평균 이상 비중이 저소득층 가구에 배분되고 고소득층에게는 평균 미만만 배분된다. 이러한 국가들의 현금급여 지불은 유럽대륙과 비교하면 수입 및 소득과 관련이 있다. 노르웨이, 호주, 덴마크, 영국은 최하 3분위 미만에 대한 공공이전(public transfers)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탈리아와 일본이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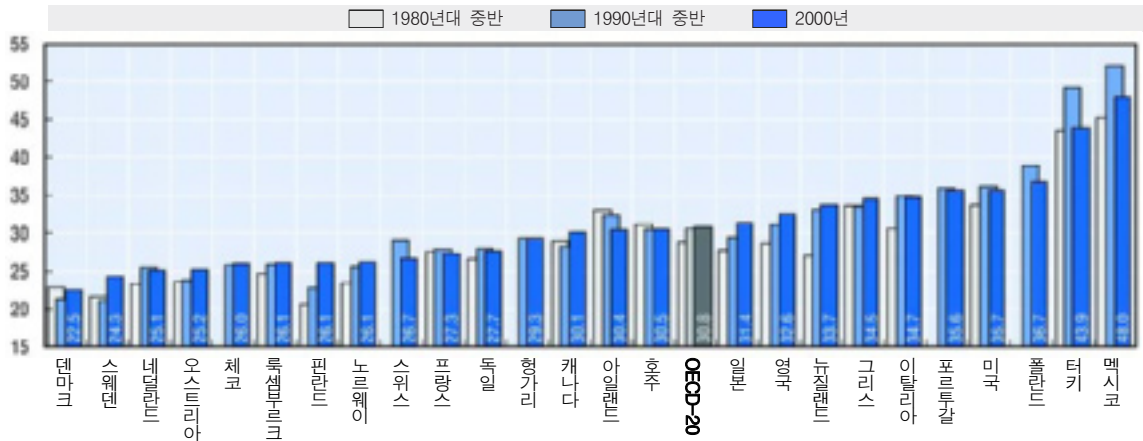
**상태지표:** 고용(SS1), 상대빈곤(EQ1).

**대응지표:** 실업급여(SS5), 최저생계급여(SS6), 공공사회 지출(EQ5), 총사회지출(EQ7).



## EQ.2.1. OECD 국가간 소득불평등의 차이

Gini coefficient of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equivali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Note: 국가는 2000년 지니계수 증가 순임.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는 1999년, 독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1년, 체코, 멕시코, 터키는 2002년이며 그 외의 나머지 국가는 2000년을 말함. “1990년대 중반”은 오스트리아 1993년,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터키는 1994년이며, 나머지 국가는 1995년을 말함. “1980년대 중반”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은 1983년,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는 1984년,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1985년, 핀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1986년, 아일랜드, 터키는 1987년, 그리스는 1988년, 미국은 1989년 자료임. 1980년대 중반 독일은 서부 랜더(western Länder) 만을 말함.

## EQ.2.2. 정부급여와 조세는 시장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상당히 감소시킴

Share of market income, government transfers and taxes accruing to different deciles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percentages

	시장수입			일반정부 이전			조세		
	하위 3분위	중위 4분위	상위 3분위	하위 3분위	중위 4분위	상위 3분위	하위 3분위	중위 4분위	상위 3분위
호주, 1999	6.7	35.8	57.4	37.2	59.2	3.7	3.5	30.6	65.8
캐나다, 2000	10.0	35.0	55.0	22.0	64.0	14.0	7.9	32.1	60.1
체코, 2002	10.6	33.6	55.9	31.8	54.9	13.3	7.9	31.0	61.1
덴마크, 2000	9.7	37.2	53.1	36.1	54.6	9.3	11.6	35.4	53.1
핀란드, 2000	10.3	35.9	53.8	31.3	59.4	9.3	9.0	32.8	58.3
프랑스, 2000	11.0	34.3	54.7	27.6	51.4	21.0	10.1	23.4	66.4
독일, 2001	10.4	35.2	54.4	22.3	59.5	18.2	8.1	34.1	57.8
헝가리, 2000	9.0	32.2	58.8	27.0	50.2	22.8	16.0	35.7	48.3
아일랜드, 2000	8.9	36.3	54.8	31.3	57.5	11.2	5.5	32.1	62.4
이탈리아, 2000	9.8	32.4	57.8	14.1	51.1	34.8	7.5	31.2	61.3
일본, 2000	11.4	35.9	52.7	15.7	66.5	17.8	13.9	34.5	51.7
네덜란드, 2000	11.2	37.3	51.6	29.8	60.8	9.4	11.6	36.0	52.5
뉴질랜드, 2001	8.0	33.3	58.7	31.2	64.3	4.5	5.6	30.1	64.3
노르웨이, 2000	11.5	36.0	52.5	43.8	37.4	18.8	10.5	34.9	54.6
포르투갈, 2000	10.9	30.9	58.2	17.1	47.7	35.2	8.5	25.0	66.5
스웨덴, 2000	10.9	36.1	53.0	29.5	55.8	14.7	12.0	34.9	53.2
스위스, 2001	15.0	35.8	49.2	19.6	64.5	15.9	19.4	34.7	45.9
영국, 2000	7.7	34.1	58.3	34.7	59.2	6.2	6.0	30.9	63.2
미국, 2000	9.5	34.3	56.2	17.6	71.6	10.8	6.8	29.1	64.0
<b>OECD-19</b>	<b>10.1</b>	<b>34.8</b>	<b>55.1</b>	<b>27.3</b>	<b>57.3</b>	<b>15.3</b>	<b>9.5</b>	<b>32.0</b>	<b>58.4</b>

Source: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2478826430>

**Further reading:** ■ Förster, M. (2000),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42, OECD, Paris. ■ Förster, M. and M. Mira d' 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인 자로 정의되고, 가처분소득이 해당 국가의 중위소득의 절반보다 적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 “빈곤”으로 간주된다. 모든 국가에서 아동은 부양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하는 가구의 구성원으로 산정한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이전 및 자산소득을 포함하며 순직접세와 가구별로 지불하는 사회보장기여분을 제하여 산정한다.

가구의 총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등가구모탄력성(equivalence scale elasticity) 0.5로 보정한다. 타 연령군보다도 아동 빈곤의 측정에서 등가구모탄력성은 매우 민감하다. 지표 EQ1과 EQ2의 자료는 공통 정의를 사용한 각국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다.

아동빈곤은 모든 OECD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다. 아동이 처한 상태에 대한 책임을 아동자신에게 지울 수는 없는데, 어린 시절 빈곤의 경험은 그들의 인지와 사회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EQ3.1에 포함된 24개국 평균을 보면 2000년에 아동의 12%는 빈곤선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1990년 중반에 기록된 수준에 비해 0.75점 증가된 것이다.

아동빈곤율은 북유럽 국가에서 특히 낮는데, 전체 아동의 4% 미만이 빈곤하다. 이보다 프랑스, 스위스, 체코의 아동빈곤율은 약 7%로 약간 높았다. 아동 빈곤율은 멕시코, 미국, 터키에서 가장 높아 20%를 넘었으며,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15%를 상회하였다. 1990년대 후반 호주와 뉴질랜드의 아동빈곤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아동빈곤율이 전체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북유럽 국가와 더불어 그리스, 프랑스, 스위스는 예외이다. 한편 전체인구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아동빈곤율도 높게 나타나지만, 양자의 차이는 특히 뉴질랜드, 미국, 영국에서 큰데, 이는 이러한 국가에 있는 특정요인이 아동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러 요인이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편부모 슬하와 부모의 직업 유무와 관련이 있다. 표 EQ3.2는 모든 국가에서

편부모 가구의 아동은 양부모 가구의 아동보다 빈곤선 이하에 있을 가능성이 3배 이상이다. 편부모가 일할 경우에도, 해당 아동빈곤율은 양부모 중 한 명이 일할 경우보다 1/3배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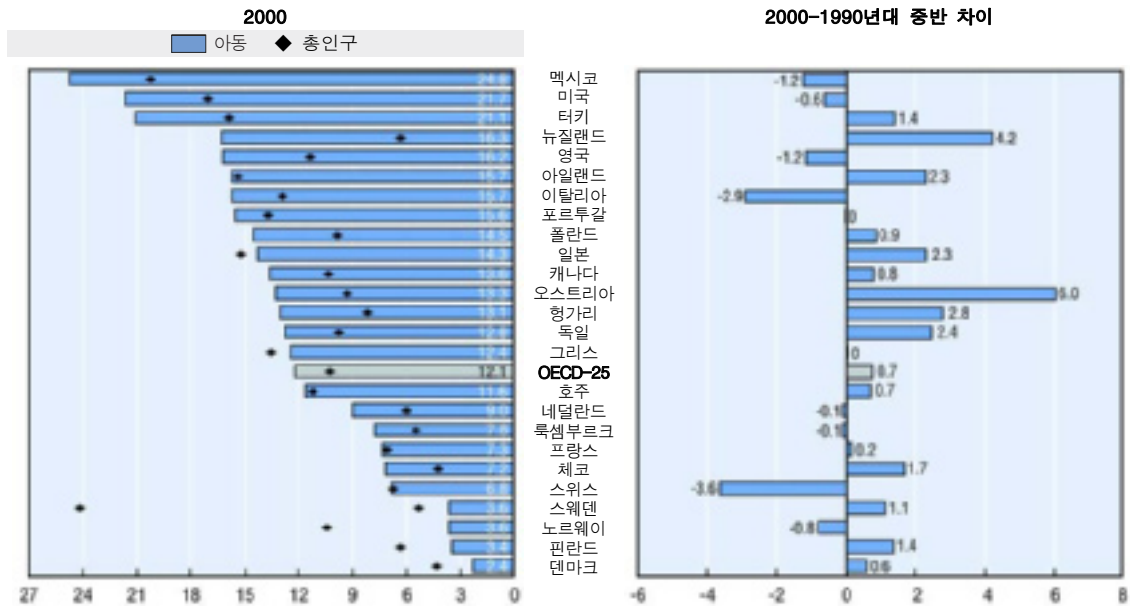
직업이 있는 경우, 유자녀 가구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감소한다(양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는 한 명만이 일하는 경우보다 약 3/4정도). 이는 부모의 고용이 아동빈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제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멕시코, 포르투갈, 미국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하는 유자녀 가구의 1/4에서 1/3 정도가 빈곤하였으며 일본, 멕시코, 터키는 양부모가 일을 하는 유자녀 가구의 1/10 이상이 빈곤하였다. 또한 근로성인이 없는 유자녀 가구의 빈곤율은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25% 미만부터 아일랜드,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미국의 75% 또는 그 이상까지),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그리고 수준 또한 상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상태지표:** 취업모(SS4), 주관적 웰빙(CO1), 10대 출산(CO4).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최저생계급(SS6).

## EQ3.1. 아동빈곤율은 북유럽 국가에서 상당히 낮음

Share of children 17 years and under living in households with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less than 50% of median income, percentages



Note: 국가는 2000년 아동빈곤율 감소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는 1999년, 독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1년, 체코, 멕시코, 터키는 2002년, 그 외의 나머지 국가는 2000년 자료임. “1990년대 중반”은 오스트리아는 1993년,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터키는 1994년, 체코, 뉴질랜드는 1996년, 그 외의 나머지 국가는 1995년 자료임.

## EQ3.2. 빈곤율은 실직부모를 가진 가족에게 매우 높음

Poverty rates among children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by work status of adults, percentages

아동	아동 빈곤율 (%)	아동이 있는 가족						
		편부모			양부모			
		계	일하지 않음	일함	계	일하지 않음	1명 일함	2명 일함
호주, 1999	11.6	38.4	58.7	11.7	6.8	43.3	5.4	3.3
오스트리아, 1999	13.3	30.0	67.6	23.2	10.2	35.6	12.7	8.6
캐나다, 2000	13.6	42.1	89.7	27.7	8.5	75.3	22.9	3.5
체코, 2002	7.2	23.2	53.7	5.5	3.5	35.7	3.7	0.6
덴마크, 2000	2.4	7.2	22.2	4.0	1.9	19.0	6.4	0.7
핀란드, 2000	3.4	10.5	25.0	7.2	2.5	25.8	5.4	1.3
프랑스, 2000	7.3	26.6	61.7	9.6	5.1	37.9	6.3	1.6
독일, 2001	12.8	31.4	55.6	18.0	8.1	51.5	6.4	1.9
그리스, 1999	12.4	19.8	18.8	20.0	10.8	13.4	16.8	4.8
아일랜드, 2000	15.7	53.9	88.7	22.1	10.7	74.8	17.4	1.6
이탈리아, 2000	15.7	24.9	76.8	13.4	14.1	61.1	23.9	1.6
일본, 2000	14.3	57.3	52.1	57.9	11.4	46.0	12.3	10.6
룩셈부르크, 1999	7.8	35.1	66.3	31.4	5.7	20.8	8.5	2.9
멕시코, 2002	24.8	35.0	45.6	32.6	20.7	37.9	26.2	15.4
네덜란드, 2000	9.0	30.3	42.8	17.7	5.2	50.7	7.8	1.7
뉴질랜드, 2001	16.3	47.5	87.6	21.3	8.8	43.3	14.5	4.1
노르웨이, 2000	3.6	9.9	24.7	2.8	1.7	38.0	2.8	0.1
폴란드, 2000	14.5	34.7	69.1	13.7	10.2	41.8	14.9	1.9
포르투갈, 2000	15.6	32.5	84.8	20.3	12.4	50.6	32.4	4.8
스웨덴, 2000	3.6	9.3	34.2	5.6	2.0	13.7	8.2	1.1
스위스, 2001	6.8	..	..	2.3	..	..	9.6	4.7
터키, 2002	21.1	57.7	51.6	65.4	16.8	25.2	17.2	15.7
영국, 2000	16.2	40.7	62.5	20.6	8.7	37.4	17.6	3.6
미국, 2000	21.7	48.9	93.8	40.3	14.5	77.9	30.5	8.3
<b>OECD-24 평균</b>	<b>12.1</b>	<b>32.5</b>	<b>58.0</b>	<b>20.6</b>	<b>8.7</b>	<b>41.6</b>	<b>13.7</b>	<b>4.3</b>

Note: 자녀와 생산가능 가구주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에서 개인의 빈곤율임.

Source: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75231314458>

Further reading: ■ UNICEF (2000), "A League Table of Child Poverty in Rich Nations",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Förster M. and M. Mira d' 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노인의 경제적 웰빙에서 한 가지 중요한 차원은 생산가능인구와 비교한 가처분소득이다. 본 절에서 사용된 자료는 빈곤과 소득불균형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된 가구소득조사와 기타 미시자료(micro datasets)을 통해서 얻었다.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18세에서 64세로 정의된다. 여기의 소득개념은 자영업 소득, 자산소득과 공공이전 소득, 가구와 개인이 납부한 직접세(계속 고용상태인 경우는 사회보장 기여분)를 차감한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가구소득은 가구의 크기에 대한 보정으로 “등가”(equivalised)된다.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전체인구의 중위소득(median income) 50% 기준에 따른다.

노인의 상대소득은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대소득이 증가하며, 대부분 노인이 홀로 사는 국가와 비교하면 그들의 빈곤율은 낮다. 또한 가구가처분소득은 노인의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의 불완전한 측정치이며, 그들의 경제자원을 과소평가하고 빈곤위험을 과대추정하기 쉬우며, 특히 노인이 집을 많이 소유한 국가(예: 호주)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모든 국가에서 노인은 일과 관련한 비용이 적게 들고 자산보유가 더 많으며, 타 연령층에 적용되지 않는 자원(예: 보건의료와 주거의 보조)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일부 OECD 국가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게 되며, 국가간 비교는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

23개 OECD 국가에서 노인의 등가가처분소득(equivalised disposable income)은 생산가능인구의 가처분소득 75%를 상회한다(그림 EQ4.1). 노인 상대소득의 국가간 차이는 매우 큰데, 멕시코, 폴란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85% 이상) 호주는 가장 낮다(60%). 노인의 상대가처분소득의 국가간 차이는 퇴직소득규정의 다른 체계와 관련성이 미미하다. 예를 들어 상대소득 순위의 극단에 있는 캐나다와 호주에는 민간연금의 역할이 큰데 반해, 노인소득이 높은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 및 민간급여의 소득을 같이 고려할 경우 연금제도는 대부분의 노인에게 충분한 생활수준 보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근로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예: 일본).

노인의 경제상황의 변화를 볼 때, 국가간 차이는 크다.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대부분의 국가(특히 스웨덴)에서 노인의 상대소득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연금제도의 성숙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호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1995년 이후에 노인의 상대소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감소 폭이 큰 국가(캐나다, 폴란드, 스웨덴)는 생산가능인구 소득의 증가 때문이지, 노인소득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은 아니다. 노인의 상대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초기엔 감소하였음), 독일, 오스트리아(이전과 같이 증가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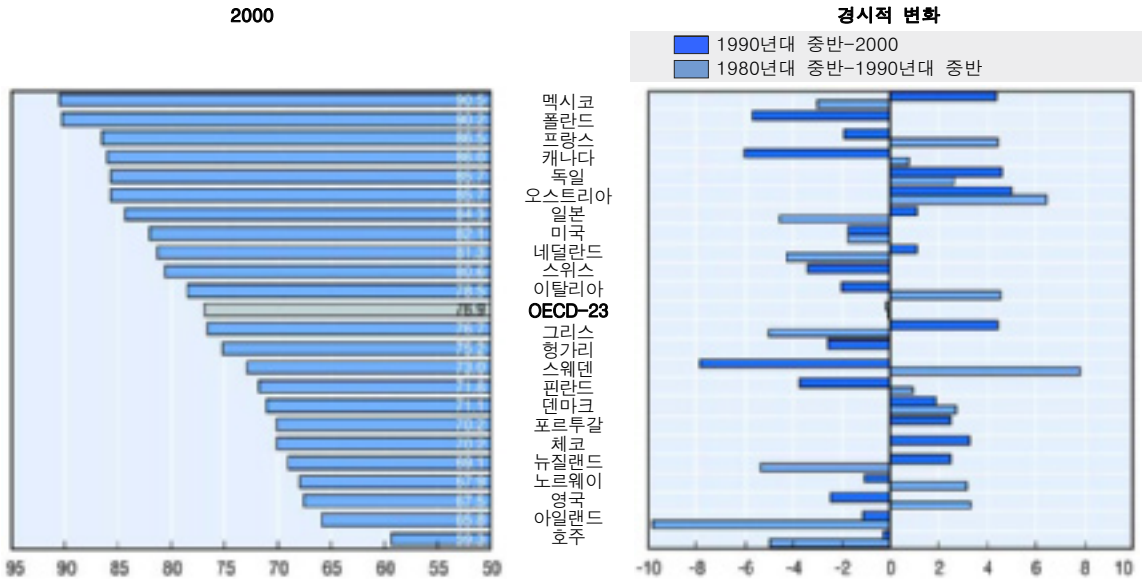
노인의 상대소득 변화는 빈곤율의 변화에 반영된다.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빈곤율은 장기간 자료가 존재하는 17개국에서 2000년 14% 정도였는데, 1990년대 후반에 평균 약 1포인트 증가하여 이전 10년 동안 향상되었던 기록을 역진시켰다. 이러한 “평균”은 경험의 큰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데, 연금빈곤(pension poverty)의 감소를 경험한 국가수는 증가된 국가수와 거의 같다. 2000년까지 검토한 국가는 노인의 약 1/3이 전체인구보다 상대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그림 EQ4.2), OECD 국가 전반에 걸쳐서 빈곤 위험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연령층이 아동에서 노인으로 대체되었다.

**상태지표:** 퇴직연금(SS8), 상대빈곤(EQ1), 건강보정세대여명(HE2), 장기요양(HE5).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민간사회지출(EQ6).

EQ4.1. 노인상대소득의 수준과 변화의 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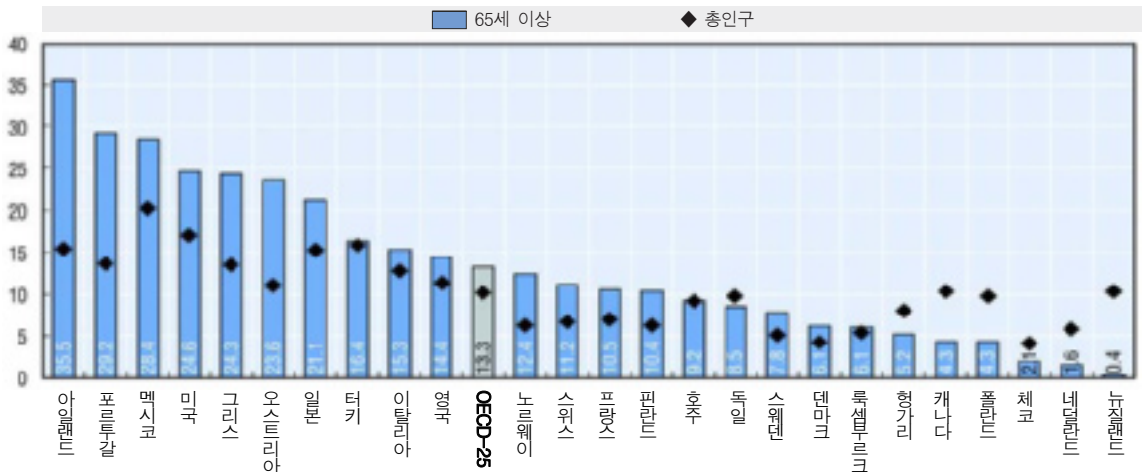
Ratio of equalised disposable income of people aged 65 and over to that of people aged 18 to 64, percentage



Note: 국가는 2000년 노인의 상대소득 순위.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는 1999년, 독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1년, 체코, 멕시코, 터키는 2002년, 나머지 국가는 모두 2000년 자료임. "1990년대 중반"은 오스트리아는 1993년, 호주,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터키는 1994년, 체코, 뉴질랜드는 1996년, 나머지 국가는 모두 1995년임. "1980년대 중반"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은 1983년,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는 1984년,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1985년, 핀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1986년, 아일랜드, 터키는 1987년, 그리스는 1988년, 미국은 1989년 자료임. 독일 자료는 서부 랜더(western Länder)를 말함.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변화는 최근에 사용된 조사와 다른 조사를 기준으로 함.

EQ4.2. OECD 국가의 3분의 1은 전체인구보다 노령인구에서 빈곤율이 더 낮음

Poverty rates for people aged 65 plus and for the total population, percentage, 2000



Note: 빈곤율은 전체인구의 중앙소득의 50% 미만의 등가처분소득이 있는 개인의 비율임. 빈곤격차는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중앙소득 50% 빈곤기준간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함. 국가는 2000년 노인의 빈곤율 감소 순위. 독일 자료는 서부 랜더(western Länder) 만을 말함.

Source: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164773650058>

**Further reading:** ■ OECD (2001), Ageing and Income: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9 OECD Countries, OECD, Paris.  
 ■ Förster, M. and M. Mira d' 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사회적 지원은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공공 및 민간기관이 급부와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많은 부분은 사회지출의 형태를 띠며 이것은 현금급여와 직접 “현물급여”인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사회지출에 포함되는 급여는 하나 이상의 사회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출은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및 장애인, 질환자 또는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사회급부를 관장하는 제도는 가구간 자원의 재분배 또는 의무가입을 포함한다.

사회지출은 일반정부(중앙, 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구 포함)가 관련 재정적 흐름을 조정할 때 공공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사회보험재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기여하여 지급되는 질병급여는 “공공”으로 구분되는 반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직접 지불한 질병급여는 “민간”으로 구분된다. 국가간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지원의 지표는 GDP 대비 “총”(즉, 이러한 급여에 대해서 부과하는 직간접세의 공제 전 금액과 사회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세출의 합) 공공사회지출이다. 측정상 문제에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 과소 추산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지출에 관하여 특히 그러하다.

2001년 OECD 30개 국가(그림 EQ5.1)의 총공공사회지출은 평균 GDP의 21%이며 현물서비스의 2배를 현금급여한다. 총지출수준의 국가간의 차이는 큰데 스웨덴과 덴마크의 약 29%부터 한국의 불과 6%까지 범위를 보인다.

기능적 분류에서 3가지 큰 항목은 연금(노령 및 유족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GDP의 8%), 건강(6%)과 생산가능인구(5%)에 대한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이다. 이중 유자녀와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쓰인 공공지출의 규모는 각각 GDP의 거의 2%였다. 노령과 유족연금의 지출은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GDP의 12% 이상이었고, 호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5% 미만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총공공지출은 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의 역할이 가장 큰 북유럽 국가에서만 GDP의 5%를 상회한다.

시대에 따른 총공공사회지출의 변화는 지대하다(그림 EQ5.2). 1980년까지는 20년에 걸쳐 거의 2배가 된 이후 총공공지출의 증가는 1993년에 OECD 평균이 최고인 23%를 기록한 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그 이후 총공공사회지출은 2001년에 이르러 평균적으로 GDP의 약 1½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모두 비보건 부문 지출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총공공사회지출은 최고수준에서 6포인트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는 계속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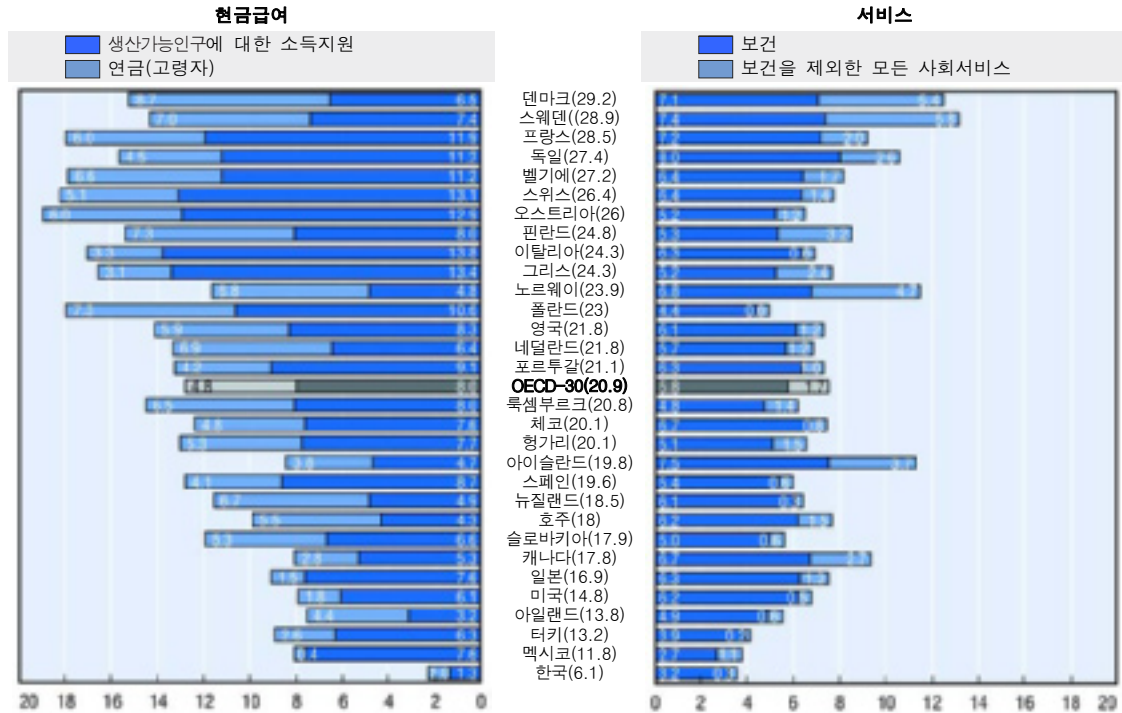
**상대지표:** 실업(SS2), 취업모(SS4), 상대빈곤(EQ1), 아동 빈곤(EQ4).

**대응지표:** 실업급여(SS5), 최저생계급여(SS6), 총사회 지출(EQ7), 국민의료비(HE4).



EQ5.1. 일반적으로 공공사회지출은 평균적으로 GDP 5분의 1에 근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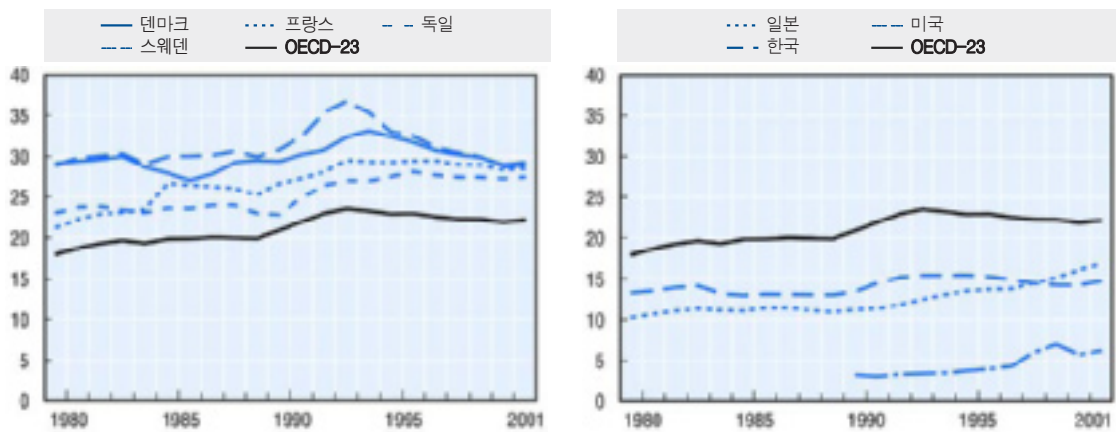
Gross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broad policy area, in percentage of GDP, 2001



Note: 국가는 GDP 대비 총공공사회지출 비율 감소 순임.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ALMPs)은 현금/서비스로 나눌 수 없음. ALMPs는 괄호안의 총공공지출에 포함.

EQ5.2. 1993년 이후 공공사회지출이 적게 감소됨

Gross public social spending for selected countries, in percentage of GDP, 1980-2001



Source: OECD (2004),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2001, OECD, Paris (available at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http://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StatLink: <http://Dx.doi.org/10.1787/138143773102>

Further reading: ■ Adema, W. (2001), "Net Social Expenditure, 2nd Edi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52, OECD, Paris (see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가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한다. 민간부문이란 일반정부에 의해 조정될 수 없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포괄하여 정의된다.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개인간 직접이전(예: 선물)이다. 총민간사회지출은 사회목적에 따라 개인간 재분배적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이러한 민간사회급여의 재분배적 속성은 급부 규칙에 관한 국가법령(의무적 민간사회급부), 단체협약의 조항 또는 민간제도나 정부에 의한 고용관련 복지정책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절에서 제시된 민간지출 규모는 총 개념(이러한 흐름과 조세지출에 부과된 세금납부의 공제 전)에 기초하고 있다.

측정문제는 공공지출보다 민간사회지출이 더 크다. 정부가 급여규정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제공자는 정부기관에 관련 지출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출규모에 대한 직접정보가 부재할 때에는 간접측정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고된 사용자 의무부담 질병급여의 지출자료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와 임금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민간지출 적용범위의 자료는 완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민간사회 건강급여의 경우, 현재의 측정은 정부에서 정한 개인의 본인 부담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민간급부에 의존하는 정도는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총민간사회지출은 미국에서 GDP의 10% 이상이며, 표 EQ6.2.에 제시된 국가의 절반에서는 아예 없거나 매우 미미하다. 민간사회급부는 산업재해 관련 질병(오스트리아), 질병수당(독일)과 사용자 부담 의무가입 (영국), 또는 세금보조 개인연금(미국)의 노령 연금제도의 형태로 흔히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모든 민간사회지출의 약 3/4는 자발적인 지출이며 나머지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이다.

적어도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최근 민간사회급부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그러하다(그림 EQ6.1). 여러 다른 요인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민간연금제도의 성숙은 민간사회지출 증가의 큰 부분을 설명하는데 특히 캐나다에서 그러하다. 1980년 이후 공공고용 관련 사회급여(소득지원 관련 질병과 장애) 혜택의 축소는 민간급여의 성장이 공공제도를 앞지르도록 촉진되었다. 1990년대 초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정부는 질병수당 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확대를 입법화하였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보건의료비 증가가 민간사회지출의 증가에 기여한 반면, 1990년대 초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비율감소(그리고 낮은 급여 비율)는 부분적으로 이런 증가를 상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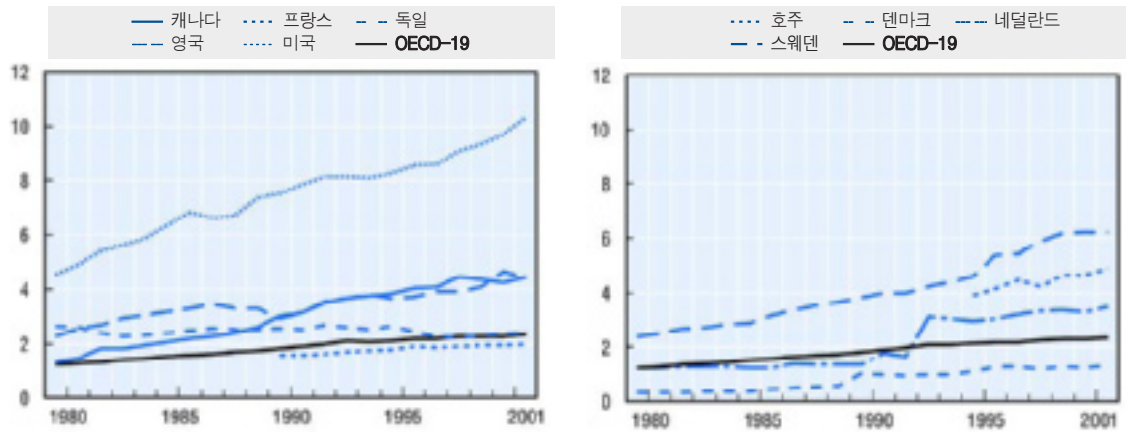
자본화된 연금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성숙되어짐에 따라 대부분 OECD 국가의 민간사회급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대지표:** 고용(SS1), 소득불평등(EQ2).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총사회지출(EQ7), 국민 의료비(HE4).

EQ6.1.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총민간사회지출은 서로 같아짐

Mandatory and voluntary private social spending, in percentage of GDP, 1980 to 2001



EQ6.2. 민간사회지출의 구성

Total, mandatory and voluntary<sup>1</sup> gross private social spending, percentage of GDP, 2001

	의무적 민간					임의적 민간 <sup>1</sup>					총 민간사회 지출	전체 (공공-민간 총지출)의 민간 비율	
	계	고령	무능력	보건	기타	계	고령	무능력	보건	기타			%
호주	0.9	-	0.9	-	-	4.0	3.3	-	0.7	0.0	4.9	21.4	
오스트리아	0.9	-	0.9	-	-	0.7	0.1	-	0.6	-	1.6	5.7	
벨기에	-	-	-	-	-	-	-	-	-	-	-	-	
캐나다	-	-	-	-	-	4.5	3.4	-	1.1	0.0	4.5	19.7	
체코	-	-	-	-	-	-	-	-	-	-	-	-	
덴마크	0.3	-	0.9	-	-	1.0	0.9	-	0.1	-	1.3	4.3	
핀란드	0.1	0.1	0.0	-	0.0	1.0	0.1	0.7	0.2	-	1.2	4.5	
프랑스	-	-	-	-	-	2.0	0.2	0.3	1.2	0.0	2.0	6.5	
독일	1.4	-	1.3	-	0.1	1.0	0.6	0.1	0.3	0.3	2.4	8.1	
그리스	-	-	-	-	-	-	-	-	-	0.0	-	-	
헝가리	-	-	-	-	-	0.0	-	-	0.0	-	0.0	0.1	
아이슬란드	1.4	-	1.4	-	-	-	-	-	0.0	-	1.4	6.7	
아일랜드	-	-	-	-	-	0.4	-	-	0.4	-	0.4	3.1	
이탈리아	1.4	-	-	-	1.4	0.1	-	-	0.1	-	1.5	5.7	
일본	0.6	0.6	-	-	0.0	0.0	0.0	-	0.0	-	0.6	3.3	
한국	2.6	0.0	0.1	-	2.4	1.9	-	-	-	1.9	4.4	42.0	
룩셈부르크	-	-	-	-	-	0.1	-	-	0.1	-	0.1	0.5	
멕시코	-	-	-	-	-	0.2	-	-	0.2	-	0.2	1.4	
네덜란드	0.7	-	0.7	-	-	5.5	3.0	0.4	1.4	0.8	6.2	21.6	
뉴질랜드	-	-	-	-	-	0.5	-	-	0.5	-	0.5	2.6	
노르웨이	1.3	-	1.3	-	-	0.8	0.6	0.2	-	0.0	2.1	8.1	
폴란드	-	-	-	-	-	-	-	-	-	-	-	-	
포르투갈	0.4	-	0.4	-	-	0.3	0.2	0.0	0.0	0.1	0.8	3.4	
슬로바키아	0.3	0.2	0.1	-	0.0	0.1	-	-	0.1	-	0.4	2.0	
스페인	-	-	-	-	-	0.3	-	-	0.3	-	0.3	1.5	
스웨덴	0.6	-	0.6	-	-	2.9	2.1	0.4	0.1	0.3	3.5	10.8	
스위스	0.6	-	0.5	-	0.1	1.2	0.0	0.0	1.1	0.0	1.9	6.6	
터키	-	-	-	-	-	-	-	-	-	-	-	-	
영국	0.5	0.5	0.1	-	-	3.9	2.5	0.7	0.3	0.4	4.4	16.9	
미국	0.4	-	0.2	0.2	0.0	9.9	4.7	0.2	5.0	0.0	10.3	41.1	
<b>OECD-30</b>	<b>0.5</b>	<b>0.0</b>	<b>0.3</b>	<b>0.0</b>	<b>0.1</b>	<b>1.4</b>	<b>0.7</b>	<b>0.1</b>	<b>0.5</b>	<b>0.1</b>	<b>1.9</b>	<b>8.2</b>	

-: 프로그램 존재하지 않음. 0.0: 프로그램 존재함, 그러나 그것은 GDP의 0.1% 보다 적음.

1. 추정치임.

Source: Estimates based on Adema, W. and M. Ladaique (2005), "Net Total Social Expenditur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forthcoming,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013227035342>

Further reading: ■ Martin, J.P. and M. Pearson (2005), "Should We Extend the Role of Private Social Expenditur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forthcoming,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OECD 국가에서 사회목적의 추구를 위해 사용하는 포괄적인 총자원의 양적 산정은 공공 및 민간사회지출과 조세 제도가 제공된 자원의 유효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세금공제 전의 총사회지출에 대한 조세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조수급자의 수령액에 대한 직접세와 그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를 통한 사회지출의 정부 “세금환수(clawback)”를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사회목적(예: 아동양육 세제혜택)에 의한 세제혜택을 주므로 사회목적 추구를 할 수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자원의 “순”(세금공제 후)사회지출은 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좋은 예시가 된다. 개인의 시각에서 “순사회지출”은 급여수급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제생산(economy's production)의 비율을 반영한다.

사회지출에 대한 조세제도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행정자료가 흔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시자료와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구하는 측정치를 종종 필요로 한다. 또한 정부의 민간사회지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 관련 정보는 총공공사회지출 자료보다 질이 낮다. 간접세의 보정이 요구되므로 순사회지출은 시장가격의 GDP보다 요인비용(factor cost)의 GDP와 관련이 있다.

표 EQ7.1은 2001년 선정된 OECD 국가 정부의 총 사회지출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소득 급여에 대한 직접세를 통한 총사회지출의 “세금환수”는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가장 높으며, 현금양도의 약 13%는 소득과 봉급에 대한 세금의 형태로 정부국고에 환수된다. 두 번째는 간접세로 환수된 총공공지출액은 비유럽 국가보다 유럽의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다. 세 번째는 급여에 대하여 제한적 직접세를 부과하는 국가(캐나다, 독일, 미국)는 비연금 지출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한다. 측정에 의해 발생하는 자료 이용성의 차이와 개념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우대를 표 EQ7.1에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사회목적에 위해 세금우대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공공사회지출의 과세를 통하여 더 많은 액수의 돈을 환수한다. 이 패턴의 유일한 예외 국가는 멕시코, 미국(순공공사회지출이 총경비를 초과), 한국(두 부문 지출의 합은 동일)이다.

2001년 18개 OECD 국가의 평균 순총사회지출은 GDP의 22%를 약간 넘었으며 독일의 30% 이상부터 한국의 12% 미만까지이다. 민간사회급여와 조세제도의 영향을 보면, 국가간의 GDP 비(ratios)에 대한 사회지출의 차이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사실, 사회급여 수급자가 권리를 주장(총순사회지출에 의하여 측정함으로써)하는 경제의 국내생산 비율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 유사하다(그림 EQ7.2). 그러나 국가간 순사회지출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조세와 급여체계에 의한 재분배 정도가 비슷하거나 경제에 주는 영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태지표:** 상대빈곤(EQ1), 소득불균형(EQ2).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민간사회지출(EQ6), 국민 의료비(HE4).

EQ7.1. 총공공사회지출과 순공공사회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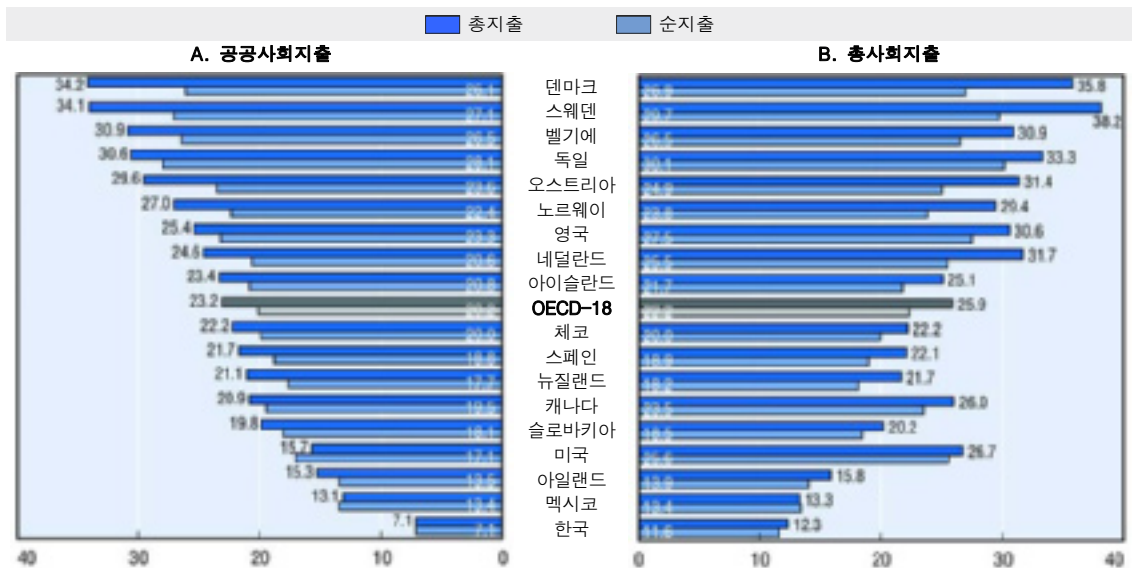
Percentage of GDP at factor costs, 2001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총공공사회지출	29.6	30.9	20.4	22.2	34.2	30.6	23.4	15.3	7.1	13.1	24.6	21.1	27.0	19.8	21.7	34.1	25.4	15.7
- 직접세와 급여소득에 대한 사회적 기여	2.9	2.2	0.7	0.0	4.6	1.6	0.7	0.3	0.0	-	2.6	1.7	2.1	-	1.2	4.3	0.3	0.6
- 급여수급자에 의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	3.1	2.8	1.0	2.2	4.0	2.3	1.9	1.8	0.4	1.0	2.4	1.9	2.8	2.1	1.8	2.9	2.2	0.4
+ 비연금사회정책지출에 대한 세금우대(TBSP <sub>s</sub> )	0.0	0.5	0.2	2.2	0.0	1.3	-	0.2	0.4	1.3	0.8	0.1	-	0.4	0.0	-	0.4	2.3
= 순공공사회지출	23.5	26.4	19.0	22.1	25.7	27.9	20.8	13.5	7.1	13.4	20.4	17.6	22.2	18.1	18.7	26.8	23.3	17.1
기록세목: 연금지출에 대한 세금우대	0.1	0.3	1.7	0.2	..	0.9	1.1	2.5	..	0.1	..	0.0	0.2	0.1	0.2	..	1.5	1.2

.. 해당자료 없음.  
- 제로.

EQ7.2. 공공사회지출과 총사회지출

Percentage of GDP at factor costs, 2001



Source: Estimates based on Adema, W. and M. Ladaique (2005), "Net Total Social Expenditure",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forthcoming,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38027316736>

Further reading: ■ Adema, W. (2001), "Net Social Expenditure, 2nd Edition",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52,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http://www.oecd.org/els/workingpaper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노령연금대체율은 연금제도에 의하여 퇴직 전 주 소득원을 대체하기 위해 퇴직기간 동안 소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이 지표는 20세 연령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민간부분의 정규직 1명에 대한 기대연금급여이다. 이것은 공공 및 민간 연금제도의 강제부분을 포함하는 반면, 어떤 국가의 경우 중요한 임의의 연금(voluntary pensions)은 제외된다. 이 지표는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규정된 모든 변화와 법률로 정해진 매개변수(parameters)들을 고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계적인 규정의 변화는 퇴직 시기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것이다. 매개변수는 2002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국가의 경우를 위해 표준적인 경제적 가정이 이용되었다.

대체율은 퇴직 전 소득으로 나눈 연금수급액(pension entitlement)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총소득범위로 산정되며, 그 범위는 평균소득의 0.3 - 2.5배이다. 노령연금의 기대대체율(expected replacement rates)의 지표는 총(예: 세금 공제 전)과 순(직업이 있을 때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과 퇴직 후의 연금을 고려함)으로 나타낸다.

그림 EQ8.1은 10개국의 소득과 관련 노령연금에 대한 총대체율의 패턴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OECD 국가 연금제도의 전 범위를 보여주기에 선정되었다. 호주, 덴마크, 영국의 연금제도는 비슷한 정도의 연금 급여를 수급자의 기준수입과 상관없이 지불한다. 이것은 대체율이 소득 증가와 함께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들 모든 국가는 전체 또는 부분적인 자산조사(저소득 연금자에게 많이 지급함)나 정액급여(기여금을 낸 기간이나 재직기간에 따라 같은 액수를 지급함)의 공공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전 소득수준에서 매우 비슷한 대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체율 곡선이 평균소득의 절반 이상에서 균등함을 뜻한다. 급여는 이전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은 중간에 경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강력한 사회보험의 전통을 가진 국가로 간주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적 연금 최고한도(평균소득의 약 125-150% 정도)와 관대한 최소연금은 오른쪽에 표시된 3개국과 달리 높은 소득수준에서 대체율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미국의 공적연금은 강한 재분배 방식을 가지고 있다.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에서 총대체율은 5퍼센트 이상이고, 평균소득의 경우 40퍼센트까지 감소하고, 평균의 두 배 소득에서는 30퍼센트까지 감소한다. 일본은 고정비율과 소득 관련 부분 두 축의 공적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유사한 연금급여 패턴을 보여준다.

개인의 퇴직 이후의 생활수준을 취업시와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순대체율이다(그림 EQ8.2). 평균소득에서 OECD 국가 평균순대체율은 총대체율보다 22% 더 많다. 실제적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의 순대체율은 총대체율보다 상당히 높다. 저소득자들에게 미치는 조세와 기여금의 영향력은 더욱 감소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수준의 사람보다 조세와 기여금을 적게 내기 때문이다. 저소득자의 순대체율과 총대체율의 차이는 평균 17%이다.

평균소득에서 OECD 국가의 평균순대체율은 69%이다. 40% 또는 그 미만을 지급하는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이들 국가는 기본연금제도만을 갖고 있음)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는 반면, 터키와 룩셈부르크의 연금수급액은 퇴직 이전의 소득을 초과한다. 저소득층의 순대체율은 고소득층의 순대체율보다 훨씬 더 근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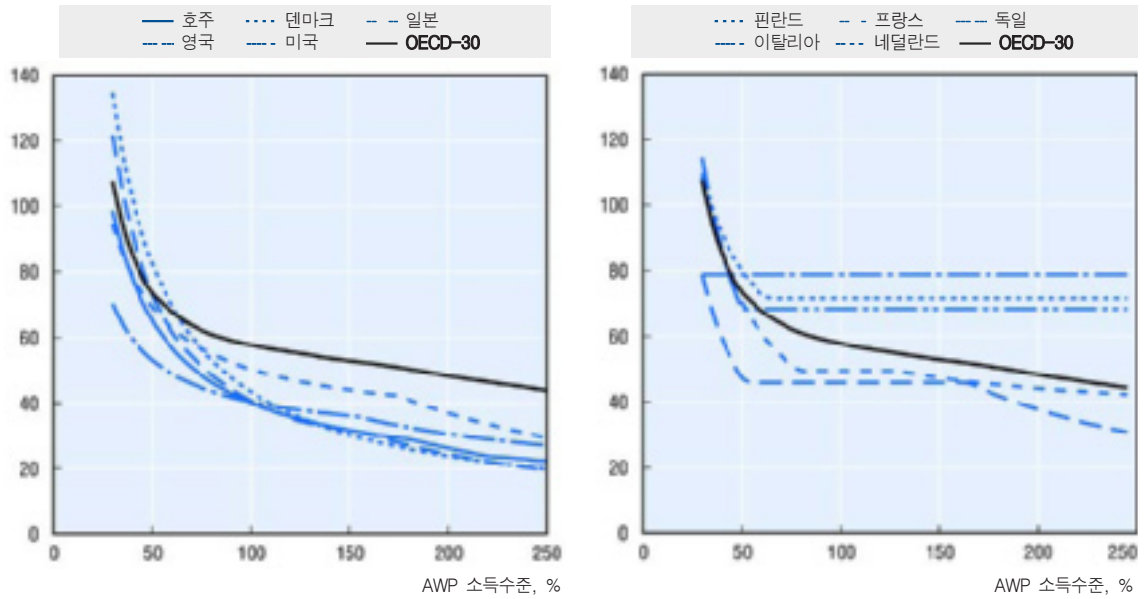
**상태지표:** 퇴직연령(SS8), 노인소득(EQ4), 건강보장기대여명(HE2).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연금약정(EQ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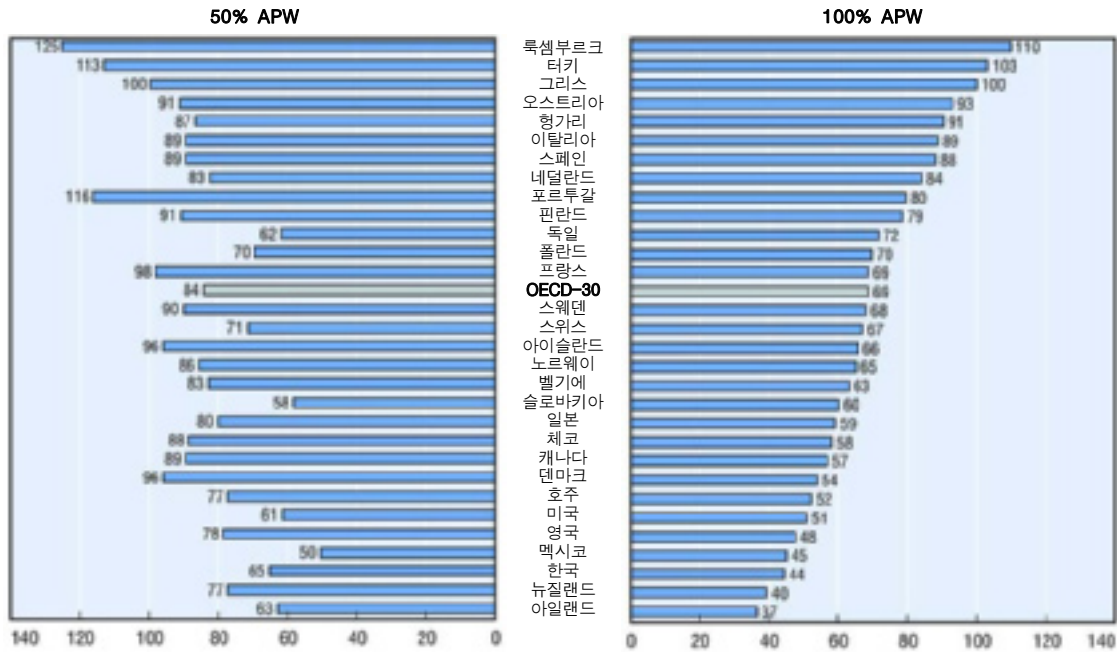
EQ8.1. 연금프로그램 대체율의 국가간 차이

Gross replacement rates by earnings level, mandatory pension programmes, in percentage of individual pre-retirement gross earnings, men



EQ8.2. 평균소득에서, OECD 국가의 평균순대체율은 69%임

Net replacement rates by earnings level, mandatory pension programmes, in percentage of pre-retirement net earnings at 50% and 100% of APW, men



Note: APW: 평균생산근로자임금(Average production worker wage)

Source: OECD (2005),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forthcoming,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social/ageing](http://www.oecd.org/els/social/agei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72465550831>

Further reading: ■ OECD (2000),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OECD, Paris. ■ OECD (2001), Ageing and Income: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9 OECD Countries, OECD, Paris. ■ OECD (2005), Pensions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forthcoming,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EQ8에서 볼 수 있듯이 노령연금의 대체율은 퇴직 당시 연금수급액 가치의 단면을 보여준다. 하지만 개인에게 주어지는 연금수급액의 가치와 노령자에 대한 자원 이전의 가치를 보여주는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세 가지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금수급연령이 국가마다 다르고 때로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둘째, 기대여명 또한 국가마다, 성별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대퇴직기간(expected duration of retirement)이 바뀌며 그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 또한 바뀐다. 마지막으로 각국은 다른 연금지급을 조정하기 위한 각기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국가는 물가에 따라 어떤 국가는 평균소득에 따라, 또 어떤 국가는 이 둘의 혼합방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만약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연금의 소득지수는 물가와 연동했을 때와 비교해서 더욱 커지게 된다.

연금약정은 퇴직 시점에서 연금급여의 순현재가치로 정의된다. 이것은 대체율, 소득지수, 연금연령 그리고 연령에 따른 각국의 사망률에 따라 달라진다. 산정에는 노령연금대체율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과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2002년 당시의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을 위한 강제연금제도(민간과 공공)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형화하였다.

만약 연금급여가 짧은 기간만 지급된다면(예: 연금 수급연령이 높아지는 경우) 국가는 더 높은 연금 대체율을 약속할 수 있다. 60세부터 지급되는 물가 연동의 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는 같은 금액의 연금보다 거의 20% 이상의 가치가 있다. 또한 퇴직시 기대여명이 짧으면 기대연금대체율이 더 높을 수 있다. 가난한 OECD 국가의 국민은 부유한 국가의 국민에 비하여 기대여명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등의 국가에서는 65세 연령의 기대여명이 OECD 평균 기대여명보다 1.5년에서 3년까지 짧다. 예를 들면 터키는 65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 OECD 평균사망률의 국가보다 15% 더 낮다.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는 OECD 평균보다 기대여명이 상당히 더 길다. 일본의 65세 시에 지급되는 연금은 보다 긴 기대여명 때문에 OECD 평균보다 12% 더 많다.

평균소득으로 볼 때, 룩셈부르크는 연금자산(pension

wealth)이 가장 많다(그림 EQ9.1). 이는 남자의 경우 경제전반의 평균소득의 20배, 여자의 경우 거의 25배에 해당한다. EUR 31,000 이상의 평균소득에서, 평균소득자의 퇴직시 연금자산은 남자의 경우 EUR 470,000, 여자는 EUR 600,000 정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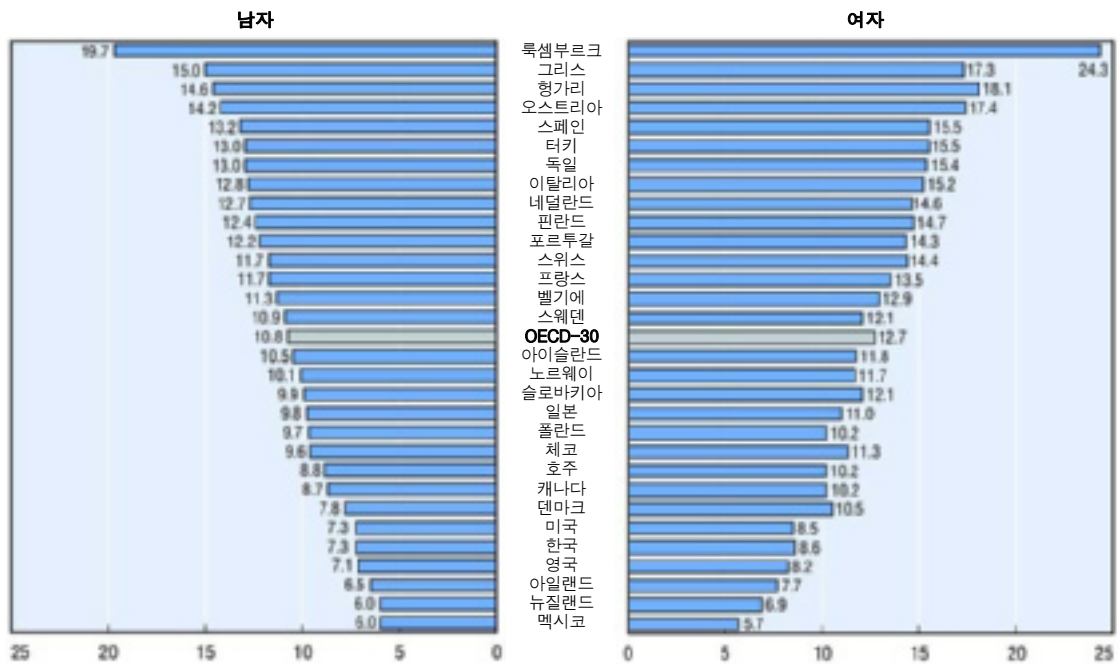
서로 다른 표준연금 수급연령의 효과 또한 분명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그러나 연금자산은 낮은 표준수급연령(60세)과 높은 기대여명 때문에 OECD 평균 이상이다.

**상태지표:** 퇴직연령(SS8), 상대빈곤(EQ1), 노인소득(EQ4), 건강보장기대여명(HE2).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노령연금대체율(EQ8).

## EQ9.1. OECD 국가간 연금자산의 차이

Net present value of pension benefits at normal pension age, by gender, as a percentage of gross earnings of an average production worker



Source: OECD (2005),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forthcoming,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els/social/ageing](http://www.oecd.org/els/social/agei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305030625708>

**Further reading:** ■ OECD (2000), Reforms for an Ageing Society, OECD, Paris. ■ OECD (2001), Ageing and Income: Financial Resources and Retirement in 9 OECD Countries, OECD, Paris. ■ OECD (2005), Pensions at a Glance –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forthcoming,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기대여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최상인 것으로 알려진 측정치이다. 기대여명의 변화는 생활 수준, 생활습관, 그리고 질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 상호 종속적 변수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기대여명의 변화는 오랜기간 동안 가장 잘 평가되어 있다.

여기 제시된 평균수명 그리고 고령에서 기대여명 지표들은 평균년수로 정의된다. 만약 사람이 특정한 해, 국가에서 연령별사망률을 경험한다면 살 수 있는 평균기대년수로 정의된다. 평균기대년수는 장차 연령별사망률의 감소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계산방법으로 평균수명을 계산한다. 방법상의 차이에 따라 국가의 평균수명 측정치가 수분의 1년 정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보고된 평균수명 추정치의 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모든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의 증가는 뚜렷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전 연령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인구의 높은 생존율에 기인한 것이다. 평균적으로 모든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1960-2002년 동안 남자는 66세에서 74.7세, 여자는 71세에서 80.6세로 증가하였다(그림 HE1.1). 10년당 남자는 2.1년 그리고 여자는 2.3년 증가하였다. 2002년 평균수명은 남자는 아이슬란드(78.5년)가 여자는 일본(85.2년)이 가장 높았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특히 1960년 당시 가장 낮았던 국가에서 가장 컸으며(예: 한국, 멕시코, 터키), 이들 국가는 OECD 국가의 평균수명에 수렴하였다. 최근 일부 동유럽 국가는 평균수명의 신장이 가장 낮았다. 예를 들면, 헝가리 남자의 평균수명은 1990년대 후반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불변적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큰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건강한 생활습관, 좋지 않은 식이요법, 과음 그리고 흡연(OECD, 1999) 등에 기인된 것이다. 반면 평균수명이 OECD 국가에서 증가되어 왔지만 그들 국가 역시 주요 감소 국가였다. 러시아에서 남자의 평균수명이 시장 경제 이전에 기록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회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4년까지 7년 넘게 감소하였다. HIV(예: 짐바브웨, 잠비아)에 의해

대부분 영향을 받은 일부 아프리카의 평균수명은 1990년 이후 20년 이상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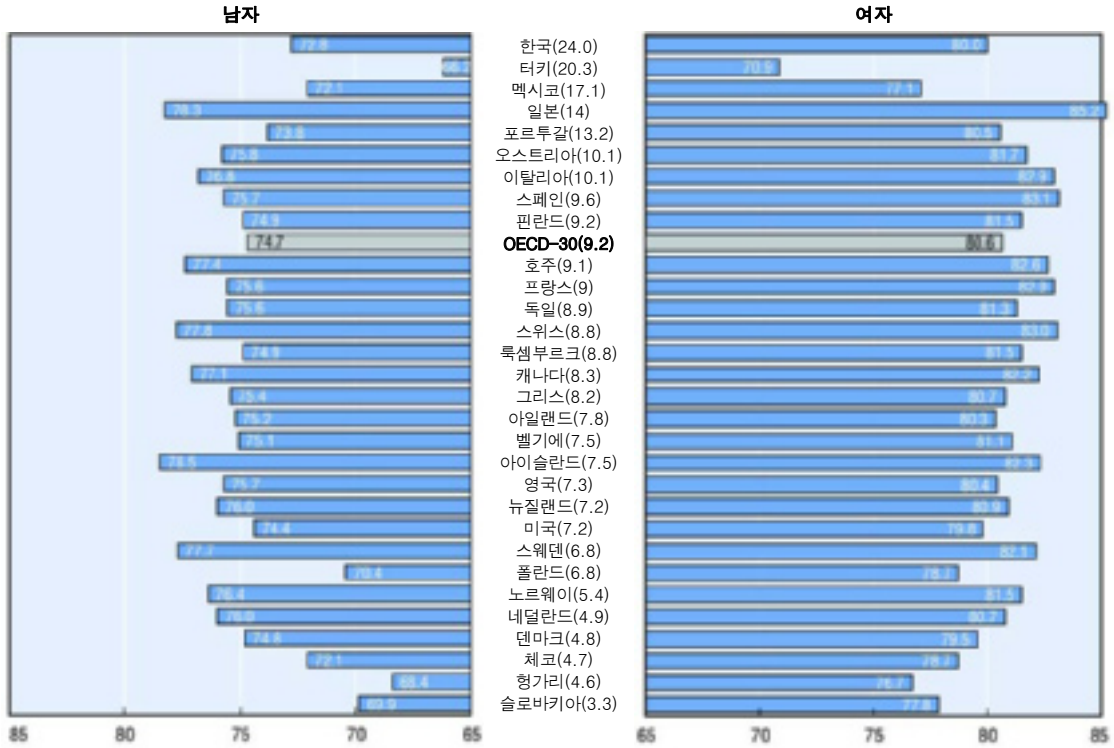
OECD 국가에서 노인의 기대여명은 1960년대보다 197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2년의 65세 남자와 여자는 평균적으로 각각 16년과 19년의 여명을 기대할 수 있다. 80세 연령에서 남자는 7년, 여자는 9년을 더 살 수 있다. 질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의료의 개선, 특히 뇌혈관질환의 개선된 의료처치에 대한 접근은 기대여명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AIHW, 1998). 1960년 이후 노인에서 기대여명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남자(65세에서 3년 추가)보다 여자(65세에서 4년 추가)가 더 크다. 그리고 증가된 수명의 큰 차이는 배우자보다 오래 사는 고령여성의 비율을 증가시켰다. 평균적으로 노인에서 성별 차이는 80세 중반 이후 불변적이고, 여러 OECD 국가간에도 차이가 미미하다(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태지표:** 건강보정기대여명(HE2), 영아사망(HE3).

**대응지표:** 국민의료비(HE4).

HE1.1.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녀 평균수명의 현저한 신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음.

Life expectancy at birth, in years, men and women, in 2002<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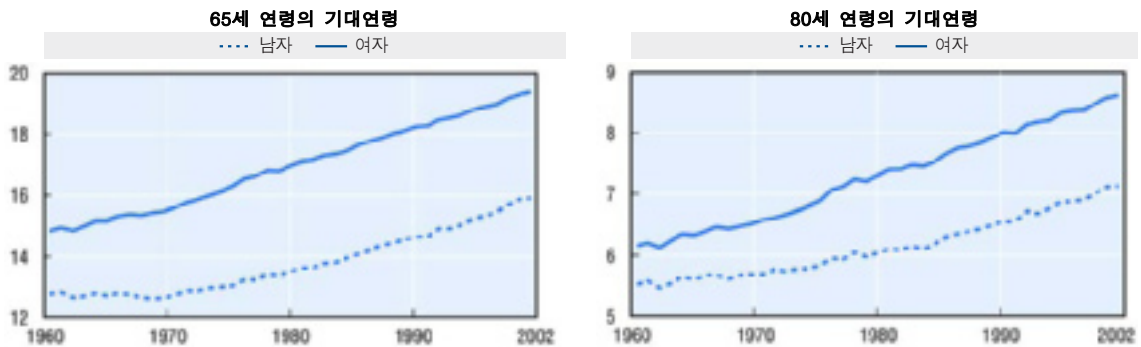


Note: 국가는 1960-2002년의 총인구(괄호안의 값)에 대한 기대여명 증가 감소 순임.

1. 캐나다,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은 2001년 자료임.
2.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은 1960-2001년, 캐나다는 1961-2001년, 이탈리아는 1961-2001년 자료임.

HE1.2. 특히 1970년대 이후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

Life expectancies at 65 and 80, in years, average of 21 OECD countries,<sup>3</sup> men and women, 1960-2002



3.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은 제외함.

Source: OECD (2004), OECD Health Data 2004, first edition,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health/healthdata](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720553055715>

Further reading: ■ AIHW (1998), Australia's Health 1998,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Canberra. ■ OECD (1999), OECD Economic Surveys: Hungary, OECD, Paris. ■ OECD (2004),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기대여명의 증가가 잉여년수를 건강하게 보내는지, 또는 질환상태의 지연과 부양을 야기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건강여명의 측정을 위해서 WHO는 건강여명(HALE)의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HALE은 “완전건강(full health)”과 같은 말로서 건강하게 살아온 년수로 요약할 수 있다. HALE를 계산하기 위해서 WHO는 건강년수를 심한 정도에 따라 불건강년수에 가중을 두고 기대여명으로부터 가중된 불건강년수를 제한다.

HALE 추정치는 신뢰성과 비교성에 대하여 다소 문제가 있다. 주요 문제의 하나는 국가간 비교방법에서 건강상태의 측정과 관련이 있다. HALE 추정치가 건강상태의 기본조사 측정치의 비교와 새로운 역학 연구의 결과들을 개선시키기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혜택까지 계속적으로 정련되기를 기대한다

WHO 건강수명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OECD 국가의 약 3분의 2 정도는 2002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70세 이상 건강여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표 HE2.1). 건강여명과 평균수명은 강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상관계수 0.95), 기대여명의 순위가 높은 국가 또한 건강보정기대여명(HALE)이 높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출생시 HALE은 일본이 가장 높고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등의 순이다. 이러한 순위에 대하여 주의가 요구되지만 하여튼 현재 HALE의 정확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 HALE에 기여하는 요인 역시 기대여명에 기여하는 요인과 같다. 이것은 생활수준, 더 나은 생활 습관, 근로조건, 공중보건 중재 그리고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HALE의 추정치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기는 하나, 더 오랜기간 동안 질병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2년 정도 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낸다(그림 HE2.2).

OECD 국가의 남자 9%와 비교하면 여자의 전 생애를 통한 불건강(ill health)의 부담은 10%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증가된 남녀 평균수명이 건강하거나 질병상태로 지내는 기대여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HALE에 대한 동향 자료는 거의 없다. 비록 노년층의 장애율에 대한 여러 국가의 기초조사 자료가 일부 국가(예: 호주와 미국)에서 결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의 장애 유병율의 감소를 지적하였다. 비록 이러한 것이 의료요구의 지연을 단순히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노인의 정도에 따라 건강과 장기요양의 준비에 대한 압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상태지표:** 기대여명(HE1).

**대응지표:** 국민의료비(HE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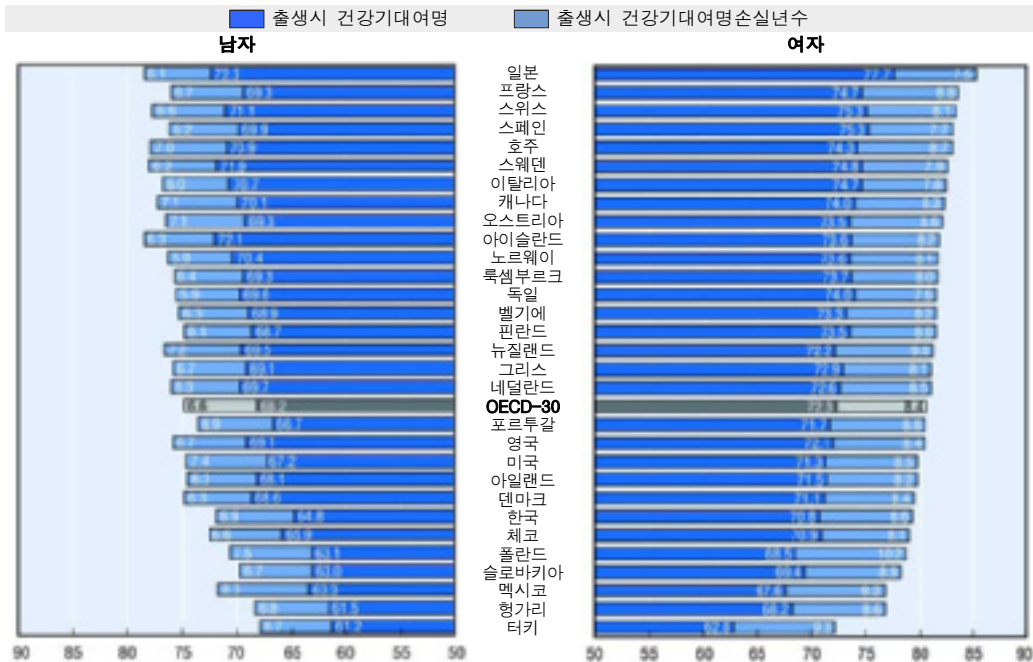
HE2.1. OECD 국가의 3분의 2에서 건강기대여명이 70세에 도달함

Healthy life expectancy, estimates for 2002

	출생시 건강기대여명(년수)			출생시 건강기대여명손실(년수)		총기대여명손실년수의 백분율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호주	72.6	70.9	74.3	7.0	8.7	9.0	10.4
오스트리아	71.4	69.3	73.5	7.1	8.6	9.3	10.5
벨기에	71.1	68.9	73.3	6.3	8.2	8.3	10.1
캐나다	72.0	70.1	74.0	7.1	8.3	9.2	10.0
체코	68.4	65.9	70.9	6.6	8.1	9.1	10.3
덴마크	69.8	68.6	71.1	6.3	8.4	9.4	10.5
핀란드	71.1	68.7	73.5	6.1	8.0	9.1	9.9
프랑스	72.0	69.3	74.7	6.7	8.8	8.8	10.6
독일	71.8	69.6	74.0	5.9	7.6	7.8	9.3
그리스	71.0	69.1	72.9	6.7	8.1	8.9	10.0
헝가리	64.9	61.5	68.2	6.8	8.6	10.0	11.2
아이슬란드	72.8	72.1	73.6	6.3	8.2	8.1	10.0
아일랜드	69.8	68.1	71.5	6.3	8.2	8.5	10.3
이탈리아	72.7	70.7	74.7	6.0	7.8	7.8	9.5
일본	75.0	72.3	77.7	6.1	7.5	7.8	8.8
한국	67.8	64.8	70.8	6.9	8.6	9.7	10.8
룩셈부르크	71.2	69.3	73.7	6.4	8.0	8.4	9.8
멕시코	65.4	63.3	67.6	8.3	9.3	11.6	12.1
네덜란드	71.2	69.7	72.6	6.3	8.5	8.3	10.4
뉴질랜드	70.8	69.5	72.2	7.2	9.0	9.3	11.1
노르웨이	72.0	70.4	73.6	5.9	8.1	7.8	9.9
폴란드	65.8	63.1	68.5	7.5	10.2	10.6	13.0
포르투갈	69.2	66.7	71.7	6.9	8.8	9.4	10.9
슬로바키아	66.2	63.0	69.4	6.7	8.9	9.6	11.4
스페인	72.6	69.9	75.3	6.2	7.7	8.2	9.3
스웨덴	73.3	71.9	74.8	6.2	7.9	7.9	9.5
스위스	73.2	71.1	75.3	6.6	8.1	8.5	9.7
터키	62.0	61.2	62.8	6.7	9.3	9.8	12.9
영국	70.6	69.1	72.1	6.7	8.4	8.8	10.4
미국	69.3	67.2	71.3	7.4	8.5	9.9	10.7
<b>OECD-30</b>	<b>70.3</b>	<b>68.2</b>	<b>72.3</b>	<b>6.6</b>	<b>8.4</b>	<b>8.9</b>	<b>10.4</b>

HE2.2. 불건강상태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거의 2년 이상 더 살음

Healthy life expectancy, by gender, estimates for 2002



Note: 국가는 여자의 출생시 건강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손실년수 기대치 합에 감소 순임.

Source: WHO (2004), World Health Report 2004, World Health Organisation, Geneva (see also [www.who.int/whr](http://www.who.int/whr)).

StatLink: <http://Dx.doi.org/10.1787/525456321557>

Further reading: ■ OECD (2003), Health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영아사망률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 비교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에 대하여 중요한 지표이다.

영아사망은 출생 1,000명당 명시된 1세 미만아의 사망수이다. 영아사망률의 국제적 차이의 일부는 조산아를 등록 하는데 있어서 국가간 차이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그들은 출생아로서 또는 아닌 것으로 보고됨). 미국, 캐나다, 북유럽 국가 같은 여러 국가에서 조산아(상대적으로 낮은 생존가능성을 가짐)는 출생아로 등록된다. 그들을 출생아로서 등록하지 않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사망률은 증가한다.

영아사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OECD 국가에서 상당히 감소하였고, 1970년 출생 1000명당 28명에서 2002년 7명 미만으로 감소하였다(그림 HE3.1). 1970년대 최고의 영아사망률을 가진 일부 국가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영아사망률은 1970년에 1,000명당 56명에서(그 당시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함) 2000년경에 5.5명으로 감소하였다(OECD 평균 이하). 국가간 영아사망의 수준은 큰 차이가 있다(그림 HE3.2). OECD 평균보다 영아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최고의 영아사망률을 가진 3개 국가의 사망률은 가장 낮은 3개 국가의 3배에 가깝다.

1990년대의 중반을 넘어서 OECD 평균보다 낮은(예: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영아사망률을 가진 일부 국가는 최소 1년 동안 영아사망의 증가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것은 갑자기 단기간에 출생아 1000명당 4-5명의 영아사망률로 감소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영아사망률은 많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예외가 있을지라도(예: 미국) 보다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빈곤한 국가보다 낮은 영아사망률을 갖는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 비교시 수입의 분배가 동등한 국가는 역시 크게 평등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낮은 영아사망률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Hales et al., 1999).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다 높은 영아사망률이 상대빈곤에 관계되는지 또는 극도로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원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제한된 접근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영아사망의 국가간 차이는 역시 의사수 및 병상수 같은 특정 보건의료자원의 이용성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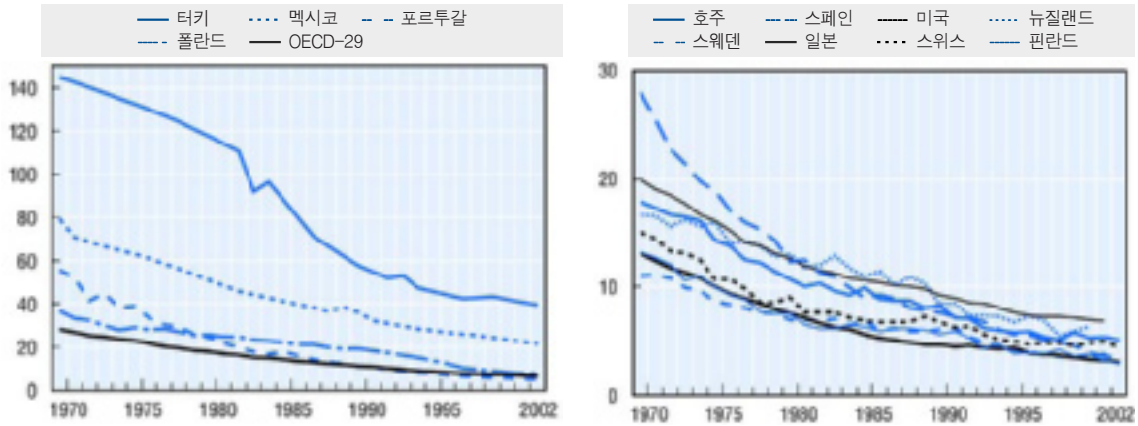
신생아사망(출생 4주 안에 발생함)은 영아사망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대다수 선진국의 신생아사망은 선천이상 또는 조산의 결과이다. 높은 연령에서 초산과 다태아 임신(보조생식술의 처치와 연관)의 증가 때문에 조산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북유럽, 서부 유럽 국가 같은 일부 국가는 낮은 영아사망률을 보였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영아사망이 그대로 지속되거나 또는 하향 및 안정 추세의 반전에 기여하여 왔던 것 같다.

**상태지표:** 상대빈곤(EQ1), 소득불평등(EQ2), 기대여명(HE1).

**대응지표:** 국민의료비(HE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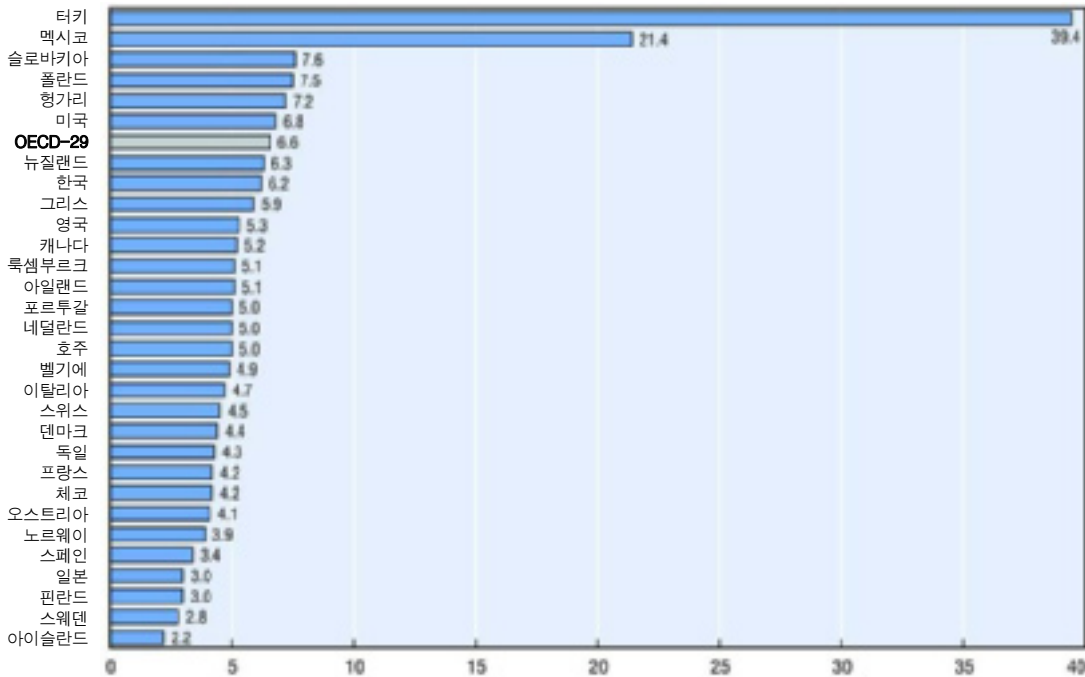
HE3.1. 영아사망률의 큰 감소

Deaths of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per 1 000 live births, 1970 to 2002



HE3.2. 터키와 멕시코의 여전히 높은 영아사망률, 나머지 국가는 평균 1000명당 5명임

Deaths of children under one year of age per 1 000 live births, 2002<sup>1</sup>



Note: 국가간 영아사망률 차이에 일부는 미숙아 등록 관행의 국가간 차이에 기인함(출생으로 보고하는지 여부). 미국, 캐나다, 북유럽 국가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는 최소한 생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극 조산아를 출생으로 등록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함.

1.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은 2001년, 뉴질랜드는 2000년, 한국은 1999년 자료임.

Source: OECD (2004), OECD Health Data 2004, first edition,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health/healthdata](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626836671375>

**Further reading:** ■ Hales, S., P. Howden-Chapman, C. Salmond, A. Woodward and J. Mackenbach (1999), "National Infant Mortality Rates in Relation to Gross National Product and Distribution of Income", *The Lancet*, December 11. ■ Mayer, S.E. and A. Sarin (2004), "Some Mechanisms Linking Economic Inequality and Infant Mortalit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No. 2005, pp. 439-455. ■ Retzlaff-Roberts, D., C.F. Chang and R.M. Rubin (2004), "Technical Efficiency in the Use of Health Care Resources: a comparison of OECD countries", *Health Policy*, No. 69, pp. 55-72.

## 정의와 국가간 차이

국민의료비는 공공, 민간 자원에 의한 보건의료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 자본투자에 대한 총소비이다. 의료비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모든 지출을 포함한다. 질병치료와 조기 사망률의 감소, 간호진료를 요구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료, 그리고 보건프로그램, 건강보험과 다른 기타 재원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2002년 포괄의료비(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등 15개국에서 최근 개발된 보건계정체계(SHA)에 따라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1990년과 최근의 추정치와 비교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국가의 비용추정은 국민계정 또는 부분적으로 개발된 보건계정체계에 기초한다. 1인당 의료비의 국가간 비교는 국가화폐를 일반화폐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구매력평가변환을 USD).

OECD 국가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GDP의 8.5% 정도 지출한다(그림 HE4.1). GDP의 보건비용 부문은 2002년에 15%에 근접한 미국이 가장 높고 6% 미만인 슬로바키아와 한국이 가장 적다. 보건의료 지출에서 이런 차이는 의료비에 의한 의료성과(건강 여명에 의해 측정됨)의 차이와 약간 관련되어 있다(그림 HE4.2). 이것은 보건전달체계, 생활습관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형태를 포함한 다른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소비구조에서 국가간 차이는 역시 크다(그림 HE4.1). 모든 국가의 의료비는 공공과 민간에 의하여 재정 처리된다. 대부분 OECD 국가는 보통 공공부문이 주요 재원으로서, 국민의료비의 70-80%에 해당된다. 대조적으로 미국과 멕시코는 의료비의 반 이상이 민간 재원에 의한 것이다.

과거 10년 넘게 OECD 국가의 1인당 의료비의 연간 증가는 1인당 GDP 성장을 거의 70% 정도 앞서 왔다(그림 HE4.3). 1인당 의료비 증가의 국가간 차이는 터키, 한국, 아일랜드의 7%부터 핀란드와 이태리의 2%보다 작은 것까지 범위를 보인다.

의료비의 증가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설명된다. 첫째로, 의료비는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의료의 노동집약적 특성은 생산성

증가가 경제 전반의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보건부문에서 임금은 경제 전반의 경향에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다. 둘째, 치료와 예방에 대한 의료 역량의 진전은 의료비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계속될 것 같다. 셋째, 고령화의 효과보다 인생 후반기(보다 높은 연령에서 집중)에 어느 정도 보다 높은 의료비를 반영하는지 확실치 않지만, 인구 고령화는 역시 역동적 의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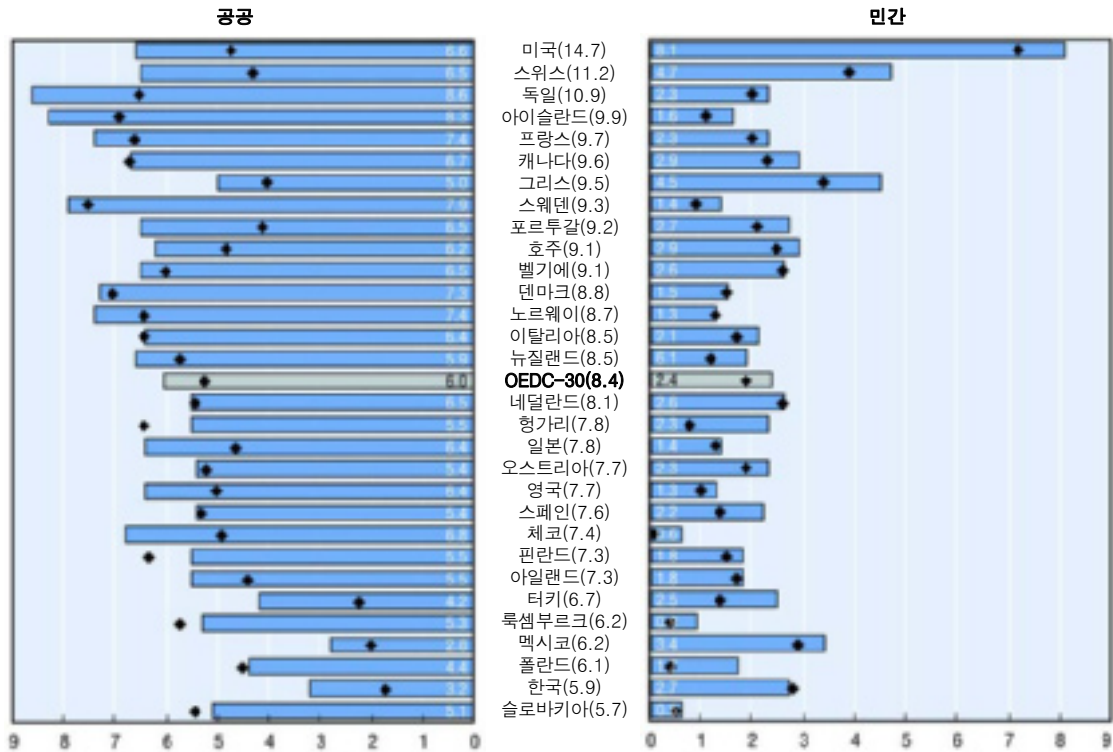
의료시스템과 경제의 상호작용은 지출 경향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 경제적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주듯이 보건 역시 경제에 영향을 준다. 사실상, 의료시스템과 경제는 깊게 얽혀있다. 의료 시스템에 관한 결정은 경제상태에 영향을 주고 주요 이해당사자에 대해 경제적 연관을 가지며, 역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보건과 경제의 정책결정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상태지표:** 기대여명(HE1), 건강보정기대여명(HE2).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HE4.1. 1990년 이후 공공 및 민간의료비의 증가

Public and private spending of health, in percentage of GDP, 2002<sup>1</sup> (blue bar) and 1990<sup>2</sup> (diamond ma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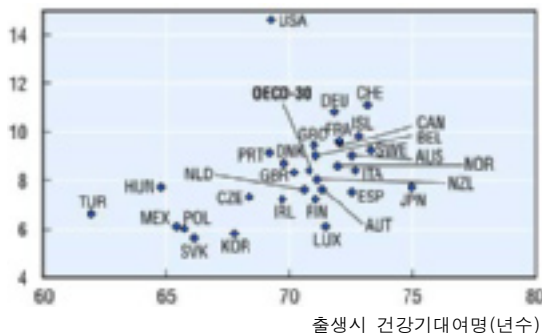
Note: 국가는 2002년 국민의료비(가운데 컬럼 괄호 안의 값) 감소 순위.

1. 호주, 한국, 일본, 뉴질랜드, 미국은 2001년, 터키는 2000년, 네덜란드는 1997년 자료임.
2. 헝가리는 1991년, 벨기에는 1995년, 슬로바키아는 1997년 자료임.

HE4.2. 의료비와 의료성과의 OECD 국가간 차이

Health care spending in percentage of GDP and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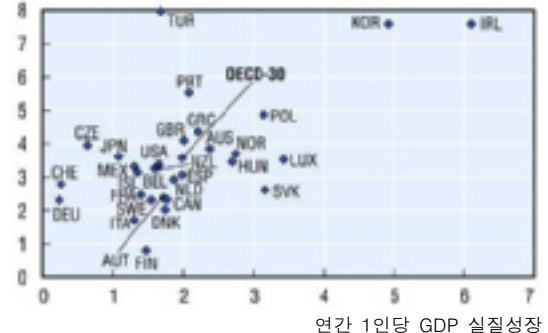
공공 및 민간 의료비(GDP의 백분율)



HE4.3. 1990년대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GDP의 증가

Annual real growth per capita for GDP and total health expenditure, 1990-2002, percentages

연간 1인당 국민의료비 실질성장



1. 호주, 일본, 한국은 1990-2001년, 터키는 1990-2000년, 헝가리는 1991-2002년, 슬로바키아는 1997-2002년임.

Source: OECD (2004), OECD Health Data 2004, first edition,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health/healthdata](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501111843525>

Further reading: ■ OECD (2004),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에 여러 제한을 가진 노인에게 장기요양이 종종 보건 의료시스템 외부의 여러 시설에 의해서 제공되는데, 장기요양이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것처럼 장기요양에 관한 지표는 보건지표에 포함된다. 장기요양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시설 또는 가정에서 공식적인 진료서비스를 통하여도 제공된다. 노인의 시설수용화는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범위를 갖는 시설을 포함한다. 요양원(nursing home), 노인보호주거시설(assisted living facilities), 주간보호 및 휴식간호(centres for day and respite-care) 등이 있다. 때로는 수발 역시 장기입원을 통하여 급성병원의 병상에서 제공되기도 한다. 집에 있는 허약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식 서비스 또는 이러한 서비스에 지불될 수 있는 현금이전(cash-transfers) 형태의 공식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시설수용률은 시설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여기에는 북유럽 국가의 공동주택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 형태는 제외된다. 공공 프로그램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개인서비스 제공; 주간보호 및 휴식간호 형태와 그리고 비공식적 도움(예: 상담, 소득지불 또는 노인을 돌보는데 사용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 급부)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서비스 형태 등 여러 방법으로 홈케어를 지원한다. 가정과 시설의 구별 그리고 국가 자료원(지역 중앙정부, 보건과 사회의료기관)의 다양성에 따른 측정문제가 존재한다. 개인예산의 형태로 집에서 요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의 증가, 요양지원에서 고객지향 고용과 비공식적 요양에 대한 지불은 요양허용과 소득보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절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해의 홀로 사는 노인 비율에 관한 자료는 가구원 수입 및 지출조사 상세표에 기초한다.

노인에 대한 시설수용률은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림 HE.1). 2000년 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북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5-7%를 나타낸 반면, 서부유럽은 4%로 낮다. 고령자 시설수용률의 국가간 차이는 고령인구의 장애율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는 없다.

자료를 제공한 모든 국가에서 고령인구에 대한 시설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였다. 이러한 탈 시설화(institutionalisation)의 감소는 특히 공공부조 안에서 요양서비스를 오점으로 느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시설에서 요양서비스의 높은 비용, 그리고 자율적, 독립적 생활을 장려하는 정책의 결과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안적 형태가 만들어졌다. 개인 환경에 적합한 전연속적 요양서비스(full continuum of care services)는 보통 모든 국가에서 가능하지 않아 생활의 지원체제는 개발된 반면, 의료 지향적 보호시설 비중은 확실히 감소하였다. 보통 새로운 시설은 대안적 주거제도를 가지고 고령자에게 제공된다. 예로서 북유럽 국가를 보면 허약한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공식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균적으로 그림 HE5.1에서 15개 OECD 국가에서 공식적

요양서비스를 받는 9% 정도의 고령자 또는 집에서 현금 형태로 지원되는 공공요양 지원은 미국의 3% 미만부터 영국의 20%까지 범위를 나타낸다.

공식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는 고령자의 생활형태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고령자(그림 HE5.2) 중 대부분이 그들 스스로 생활한다. 기대여명의 남녀차이 때문에 그들 대다수는 여성이다. 이 비율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한국, 남부 유럽에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나 확대가족(extended family) 환경 내에서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꼭 동거형태가 지속되는 국가가 아니더라도(확대)가족의 구성원들은 홀로 사는 허약한 노인에게 비공식 요양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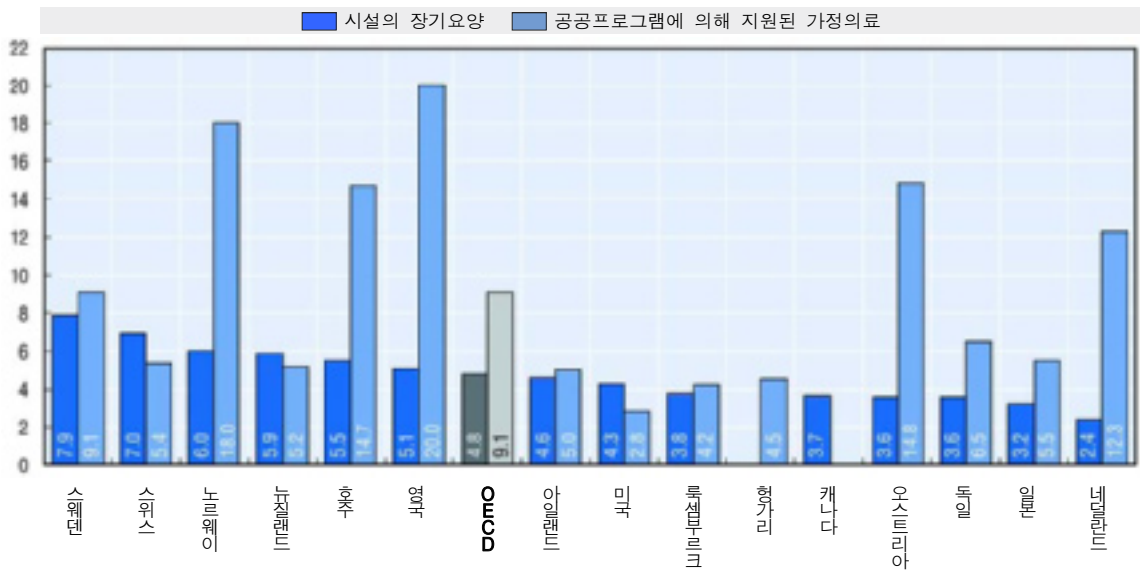
**상태지표:** 기대여명(HE1), 건강보정기대여명(HE2).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국민의료비(HE4).



HE5.1. 자택과 시설에서 공식요양을 받는 노인비율의 국가간 차이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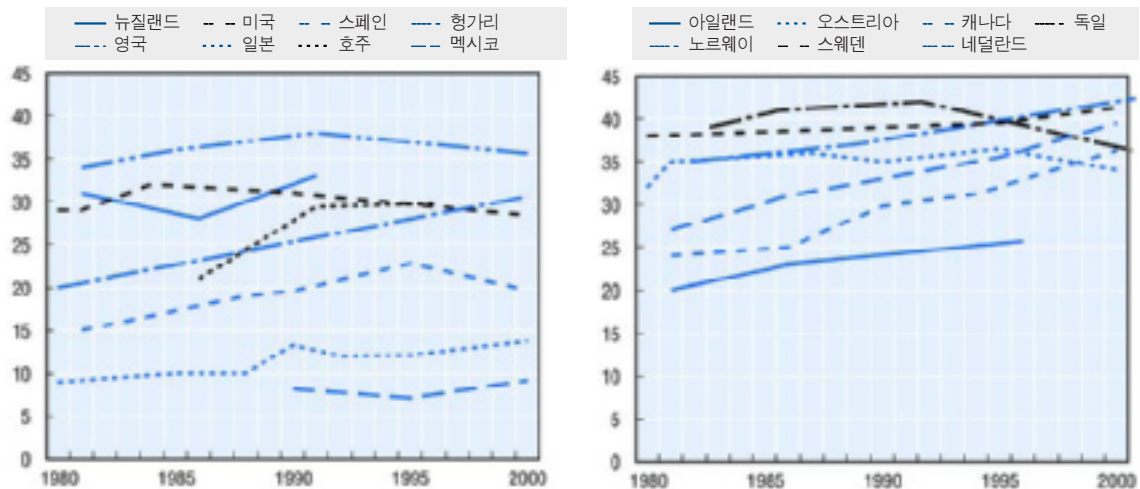
Persons aged 65 and over receiving long-term care in institutions or public support at home as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round 2000



Note: 국가는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65세 이상자 비율의 감소 순임. 자료는 독일 2003년, 영국 2002년, 룩셈부르크 2001년, 미국 1999년(시설요양만), 캐나다는 1998년, 나머지 국가는 모두 2000년 자료임.  
Source: OECD(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forthcoming, OECD, Paris.

HE5.2. 많은 국가에서 홀로사는 노인 비중이 증가함

Proportion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living alone, percentages



Source: OECD (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forthcoming, OECD,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213755005800>

Further reading: ■ OECD (2004), Towards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 OECD, Paris; OECD (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forthcoming,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측정은 국가간 삶의 질 비교에 있어서 생활수준의 객관적 측정에 유용한 보완물이다(EFILWC, 2003). 이러한 자료는 개인의 건강, 교육, 수입, 개인의 성취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주관적 평가의 측정을 제공한다. 지표는 2개의 표준질문에 대한 설문응답에 기초한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만족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이다. 이 책에서 나중에 제시된 사회적 고립과 단체참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주관적 웰빙의 지표들은 1999-2002년의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1-10의 증가척도(increasing scale)로서 삶의 만족에 대한 응답률, 그리고 지표는 7 이상 점수를 나타내는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 준다. 행복감은 4개 부류(“very happy”, “quite happy”, “not very happy”, “not at all happy”)에 따라 점수화된다. 지표는 비교적 행복 또는 매우 행복(quite very happy)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로 나타낸다.

세계가치조사는 세계인구의 85%를 포함하는 80개 국가를 포함한다. 공통 설문지의 이용은 생, 일, 가족, 환경, 정치, 종교의 인식 같은 양상의 큰 범위의 신념과 가치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이전에 이러한 조사는 1981-82년, 1990-91년 그리고 1995-96년에 실시되었다. 비록 각국에서 사용되는 설문지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정확한 용어는 각국의 특성의 반영으로 때때로 조정이 요구되는 질문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대부분 OECD 국가의 표본수는 1,000개 정도이다(큰 국가일수록 큼; 예: 터키).

어떤 개인에 대한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은 가정생활, 일, 문화 그리고 여가활동 같은 넓은 영역에서 개인 목표의 성취에 달려 있다. 그림 CO1.1은 2000년경에 만족과 행복에 대한 응답률의 단순평균에 의해 OECD 국가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 OECD 국가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그들의 인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위스는 85%를 초과한다.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행복률을 가진 국가는 95%를 넘는다. 대다수 OECD 국가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행복감을 느꼈다. 그림 CO1.1에서 순위가 낮은 국가는 “만족” 또는 “행복”으로 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것은 터키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을 포함한다.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만족률과 높은 행복률로 결합되어 있다. 국가간에 주관적 웰빙의 두 가지 측정치는 높은 상관성을 갖으며, 이러한 상관성은 1990-91년의 0.74에서 1999-2002년의 0.85로 증가되었다. 4차례 조사에 의하면 평균 생활 만족과 행복은 국가 순위에 크게 일치한다.

주관적 웰빙은 여러 측면에서 관련될 수 있으나, 특히 높은 소득이 높은 주관적 웰빙을 가져오는가가 관심사이다. 그림 CO1.2의 첫 번째 패널은 1인당 소득(구매력평가율에서)에 대한 각국의 만족에 대한 응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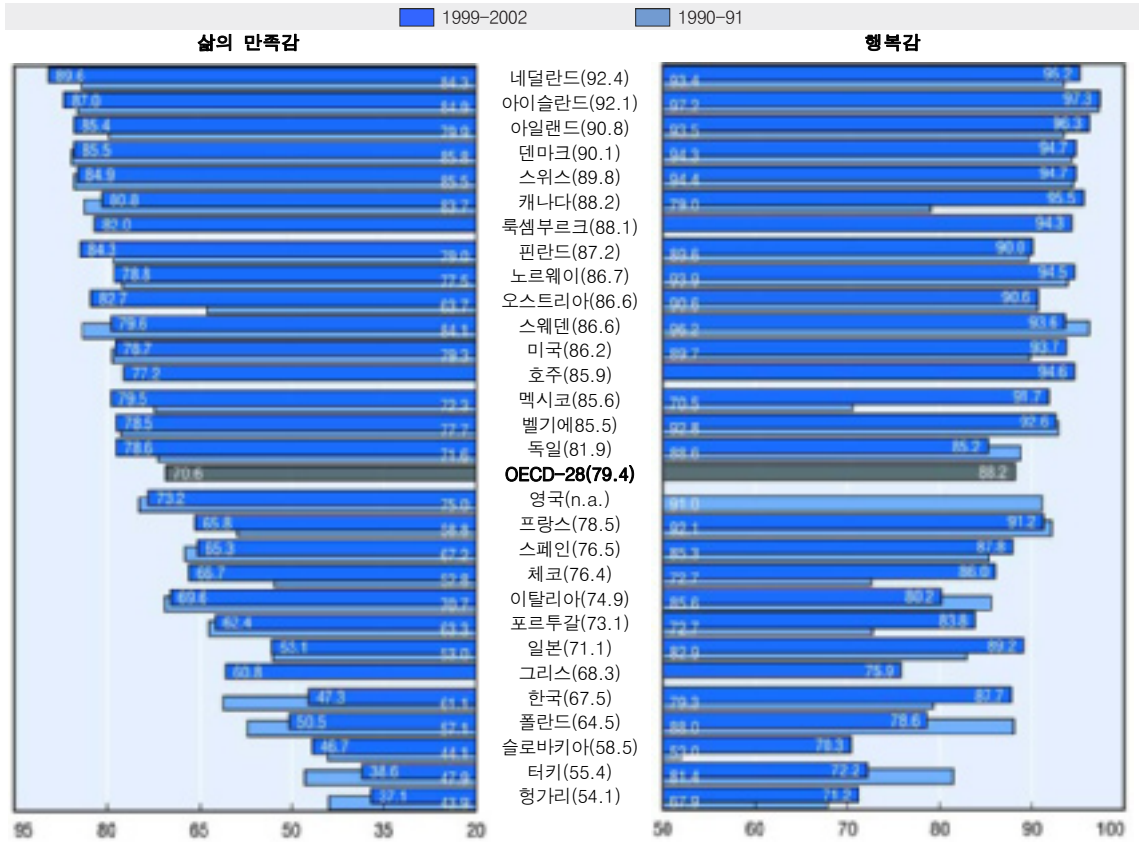
평균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평균적 삶의 만족감은 1인당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주어진 1인당 소득에 대한 평균적 삶의 만족감은 국가간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1인당 소득 USD 30,000에서 평균 삶의 만족감은 일본의 6.5부터 덴마크의 8.3까지 다양하다. 유사하게 터키와 멕시코는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OECD 국가인데, 평균적 삶의 만족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각 국가의 1인당 평균 GDP와 개인간 만족에 대한 응답의 분산(variance)간에는 역관계가 뚜렷하다(그림 CO1.2 두 번째 패널). 응답자들의 변이가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관찰되었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낮다. 즉, 1인당 평균소득의 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에 대한 응답의 다양성이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은 보다 높은 1인당 소득이 삶의 만족 차이를 더 낮게 설명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역시 이것은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는 소득의 불평등이 더 낮은 경향과 역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태지표:** 소득불평등(EQ2), 고용(SS1), 교육수준(SS7), 건강보정기대여명(HE2), 사회적 고립(CO2), 자살(CO6).

CO1.1.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 1999-2002와 1990-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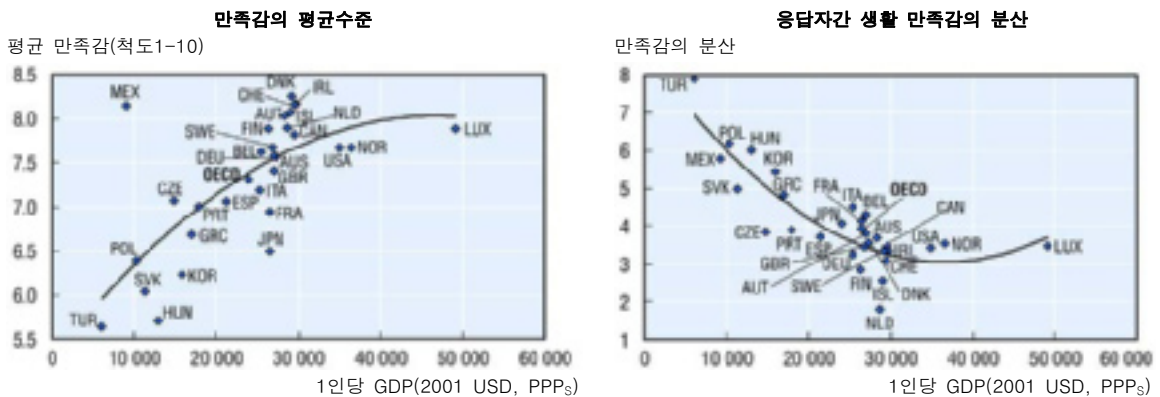
Percentage of total respondents



n.a. = 해당자료 없음.

Note: 1990-91년 독일은 서독만을 말함. 영국은 Great Britain만을 말함. 국가는 괄호 안에 있는 1999-2002년의 평균 만족감과 행복감 수준 감소 순임. 각 줄 위와 막대 아래에 있는 수치는 각각 1990-91년, 1999-2002년 응답을 나타냄.

CO1.2.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은 높은 만족감을 일으키며, 국가 내에서 낮은 차이를 보임



Source: Estimates based on Inglehart, R. et al. (2004), "Human Beliefs and Values: A Cross-cultural Sourcebook", based on the 1999-2002 Values Surveys, Siglo XXI Editores, México.

StatLink: <http://Dx.doi.org/10.1787/236488100807>

**Further reading:** ■ EFILWC (2003), Quality of Life in Europe: an illustrative report,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Dublin. ■ Diener E. and E. M. Suh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einer and Schwartz (eds.), Well-Being -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Rassel Sage Foundation, New York.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사회적 고립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적 접촉은 다양한 환경(근무 장소, 사회활동, 가정)에서 발생한다. 개인에 의하여 기록된 접촉의 빈도를 측정할 자료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록된 자료의 대부분은 1999-2002년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s)로부터 왔다. 다른 사람과 접촉한 빈도를 묻는 질문은 보통 가족, 친구, 직장동료 또는 교회, 회교사원, 유대교당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스포츠/문화행사 등에서 만난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사회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 주 1회; ii) 한달에 1-2회; iii) 드뭄; iv) 없음. 이 절에서 보고된 사회적 고립의 지표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드물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을 측정한다. 가족구성원과 접촉에 관한 자료는 제한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접촉의 이러한 범주는 아래의 복잡한 지표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홀로 사는 사람들이 활기있는 직업인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다면 사회적 고립의 특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집단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 절은 회원국의 가구원 소득조사를 이용함으로써 홀로 살고, 아이가 없는 성인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고통의 징후이며 원인이다. 사회적 고립은 가정파탄, 실직, 질병과 재정적 어려움을 수반한다. 일단 사회적으로 격리되면 기여구성원(contributing member)으로서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 가족, 친구에 대한 개인적 열망을 실현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하향 소용돌이(downward spiral)일 수가 있다. 도덕심에 영향을 주는 배타적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의 부족은 사회·경제적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대한 응답률은 OECD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림 CO2.1). 다른 사람과 드물게 어울린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과 멕시코의 15%부터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3%미만까지 범위를 보인다.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아,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의 0.2%부터 멕시코의 4.7%까지 범위를 보인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양쪽의 비율은 저·중간소득층보다 (자체 보고된) 고소득층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고령층(50세 이상)은 최상의 주 생산연령층(30-39세)과 청년층(15-29세) 응답자들보다 접촉빈도가 더 낮다.

표 CO2.2는 사회적 접촉의 여러 형태를 분류해 놓았다. 모든 국가에서 친구와 접촉이 많지 않다고 (드뭄 또는 없음)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은 사회단체에서 동료/타인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 보다 낮다. 일부 국가의 경우, 그들이 사회적으로 단지 활발하지 않은 것보다 직장동료와 같이 사회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더욱 일반적이다. 많은 국가

에서 대부분 사람은 교회, 스포츠 또는 문화 단체에서 사람과 시간을 드물게 보내거나 보낸 적이 거의 없다.

가족구성원과 접촉에 대한 정보는 일부 OECD 국가에서만 보고되고 있는데, 다른 사회적 접촉보다 훨씬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에서 다른 가족구성원과 접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보통 5%보다 적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는 4명 중 1명 이상의 응답자가 가족구성원과 시간을 드물게 또는 전혀 보낸 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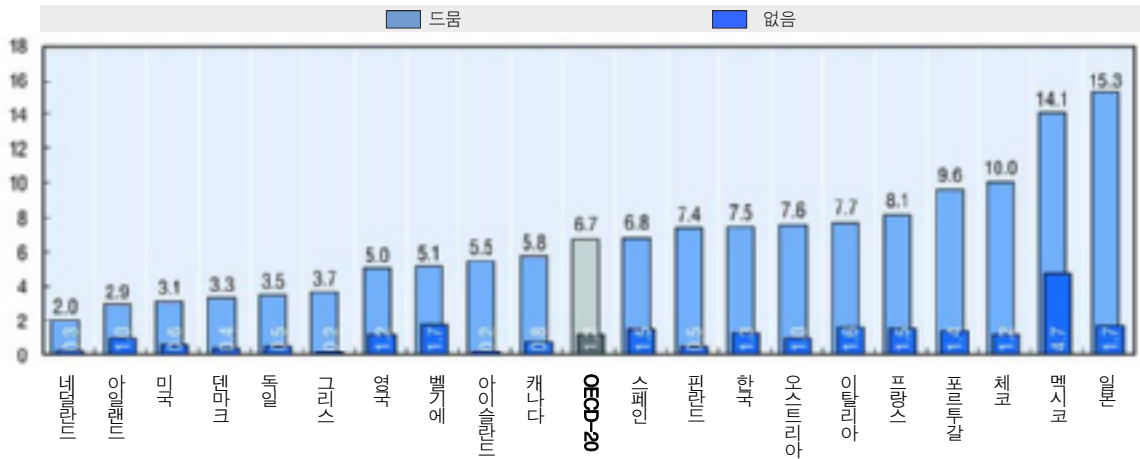
반면 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 빈도가 낮다는 것을 항상 뜻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특히 집안에서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사람에게 높다. 홀로 사는 사람의 비율은 멕시코의 2% 미만부터 벨기에, 스웨덴의 25% 이상까지 범위를 보이고 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홀로 사는 확률은 특히 노인에게서 높는데,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 이상이다. 이 비율은 북유럽 국가에서 40%가 넘는 반면, 멕시코와 터키는 6% 이하이다.

**상태지표:** 실업(SS2), 실직가구(SS3), 청년실업(SS9), 주관적 웰빙(CO1), 단체참여(CO3), 자살(CO6).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CO2.1. 친구, 동료, 사회집단에서 타인과 보내는 시간이 드물거나 보내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

Percentages, 1999-2002



Note: “드름”에 대한 비율은 상대(친구, 동료, 사회단체의 타인)의 범주에 “드름” 또는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포함됨. “없음”으로는 모든 범주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포함됨.

CO2.2. 여러 상황에서 타인과 접촉 빈도

Percentages of respondents who rarely or never spend time with others, 1999-2002

	친구와 접촉		일로부터 동료와 접촉		사회단체에서 사람과 접촉		가족원과 접촉		홀로사는 응답자의 백분율
	드름	없음	드름	없음	드름	없음	드름	없음	
오스트리아	9.9	2.0	26.5	37.4	45.9	25.8	..	..	11.7
벨기에	13.6	5.2	34.3	31.2	29.1	20.2	..	..	26.0
캐나다	8.1	1.8	28.2	30.3	46.0	24.4	17.5	4.2	10.0
체코	15.3	3.9	33.3	26.2	49.5	32.0	..	..	9.7
덴마크	7.5	1.8	40.0	23.0	35.1	17.7	..	..	17.9
핀란드	10.9	1.0	33.8	19.1	45.7	24.8	..	..	17.6
프랑스	11.0	2.5	24.0	44.7	57.5	43.3	..	..	11.5
독일	12.3	1.7	39.9	21.8	24.5	12.8	..	..	17.8
영국	5.2	2.1	26.8	30.4	46.1	32.2	..	..	12.0
그리스	6.9	1.2	26.0	17.7	44.9	26.0	..	..	6.7
헝가리	22.0	11.8	..	..	..	..	..	..	8.9
아이슬란드	10.1	0.5	44.7	15.7	54.8	27.0	..	..	..
아일랜드	5.2	1.6	20.4	27.1	28.1	16.7	..	..	7.5
이탈리아	13.3	4.6	26.4	35.0	47.5	30.6	..	..	7.4
일본	30.1	3.7	32.3	21.3	62.2	45.0	26.7	1.5	6.8
한국	18.1	3.7	18.6	17.8	51.1	30.3	23.3	2.2	..
룩셈부르크	9.8	2.7	..	..	..	..	..	..	..
멕시코	19.8	16.1	19.5	35.9	36.7	19.3	11.0	4.4	1.8
네덜란드	6.7	1.3	35.7	18.9	30.8	20.0	..	..	16.2
폴란드	22.9	9.9	..	..	..	..	..	..	3.8
포르투갈	16.3	5.6	16.5	30.2	36.4	16.2	..	..	5.0
슬로바키아	17.4	2.8	..	..	..	..	..	..	..
스페인	9.7	4.1	15.9	37.5	50.6	30.9	8.7	3.3	4.1
스웨덴	5.0	0.3	37.0	9.3	23.0	14.4	..	..	25.2
터키	4.2	4.0	5.4	40.0	..	0.1	13.5	4.4	6.3
미국	6.3	1.5	26.6	19.5	30.0	13.8	15.9	1.9	10.2
<b>OECD-22</b>	<b>11.2</b>	<b>3.2</b>	<b>27.8</b>	<b>26.8</b>	<b>41.7</b>	<b>23.8</b>	<b>..</b>	<b>..</b>	<b>..</b>

1. 홀로사는 응답자의 비율은 편부모가 포함되지 않고, 벨기에, 스페인은 1995년 자료임.

2. 영국은 Great Britain만을 말함.

Source: Estimates based on Inglehart, R. et al. (2004), “Human Beliefs and Values: A Cross-cultural Sourcebook”, based on the 1999-2002 Values Surveys, Siglo XXI Editores, México.

StatLink: <http://Dx.doi.org/10.1787/847811387032>

**Further reading:** ■ Gallie D. and S. Paugman (2004), “Unemployment,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f Social Exclusion Theory”, in D. Gallie (ed.), Resisting Marginalisation, Unemployment Experience and Social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사람들의 공식 및 비공식 사회단체의 참여 정도는 사회통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차원(dimension)이다. 비공식 네트워크는 양적으로 나타내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본 절의 지표는 공식 단체와 협회의 구성원에 대한 참여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식단체에서도 참여가 활발한지 아닌지 구별해 내기 어렵다. 해당 단체에 개인의 활동성 평가를 위해 개인이 각 단체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정도가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단체참여에 대한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s)로부터 왔다. 일부 국가자료가 1995-96년 자료이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1999-2002년 자료이다. 최근 대부분 조사에서 응답자가 특별한 형태의 단체에 속하는지 설문한다. 이전 조사에 반해서 그들이 역시 “활동적” 또는 “비활동적” 구성원으로 생각되는지 물어본다. 대부분 최근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무급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단체인지 역시 물어본다. 단체참여의 밀도에 대한 지표는 응답자의 평균 단체참여수로 정의된다. 최소한 한 단체에서 무급 일을 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사에서 포함된 단체는 다양한 조직과 지원을 포함하는데, 이 단체는 종교관련 단체, 스포츠와 문화협의단체, 노동단체를 포함하는 정치적 성향의 단체, 특별한 목적이나 단일 이슈의 운동단체 등 4개로 분류하였다(Inglehart et al., 2004).

단체참여활동의 밀도는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 특히 구성원의 유형에 의하여 크게 결정된다. 한 단체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거나,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강한 사회에서는 다른 단체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생활 속에서 시민사회 참여도는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에서 상당히 강하다.

그림 CO3.1은 응답자가 속한 평균단체수가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3개 이상인 반면 일부 남동부 유럽 국가에서는 1개 미만이다. 그들이 속해있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평균 단체참여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된(캐나다, 한국, 슬로바키아와 함께) 3개국에서 가장 높고(50% 이상) 스페인, 헝가리, 포르투갈, 터키(10% 미만)에서 가장 낮다. OECD 국가간에 단체참여와 봉사활동은 큰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 응답자는 1.5개 단체에 참여한다.

그림 CO3.2는 대부분 개인이 속한 단체의 형태는 국가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높은 단체참여율은 교회단체와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서 나타난다. 응답자의 약 75%가 각 부문의 단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와

호주에서는 대략 3명의 응답자 중 2명이 스포츠단체 또는 문화관련 단체의 회원이다.

국가 내에서 단체참여는 단체 활동의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면 덴마크는 정치단체와 전문가 협회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종교에 관련된 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역으로, 한국에서는 후자가 전자보다 상당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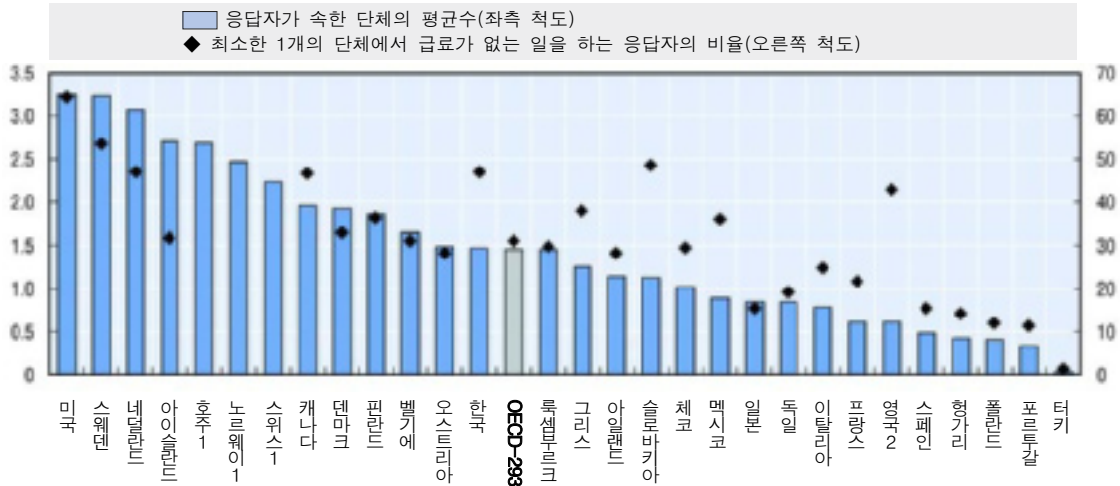
개인 경제의 발전과 보호 그리고 고용관련 이해기관(예: 무역단체, 전문가협회, 정당)의 참여는 주생산 연령층(30-49세)이 청년층(15-29세) 또는 고연령층(50세 이상)보다는 더욱 보편적이다. 실제로 OECD를 통하여 최적의 생산가능인구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단체에 속하고 젊은 연령층보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단체참여와 소득수준은 정(+)적 상관성이 존재한다. 전체 OECD 국가를 보면, 응답자가 속한 단체의 평균수와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수입에 따라 모두 증가한다.

**상태지표:** 고용(SS1), 사회적 고립(CO2).



CO3.1. 단체활동의 국가간 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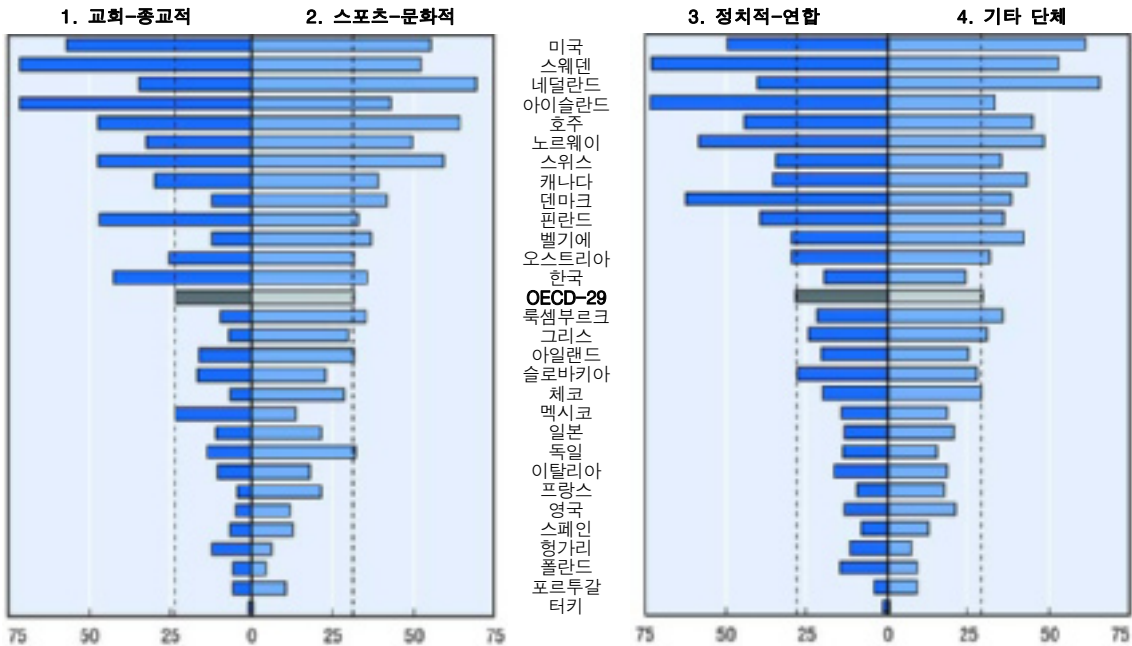
Density of associational activity, 1999-2002



1.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는 1995-96년 자료임. 이들 국가의 경우 급료가 없이 하는 일의 자료는 없음.
2. 영국은 Great Britain만임.
3. OECD 평균은 뉴질랜드를 제외함.

CO3.2. 단체참여는 형태에 따라 다양함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are active or inactive group members, by type of group



Note. 국가는 응답자가 속하는 평균 단체수의 감소 순임. “스포츠-문화적” 범주에는 여가활동을 포함. “정치적-연합”에는 정당, 지방정치집단, 노동조합, 전문인협회 포함. “기타 단체”는 청년근로,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보전 및 생태집단과 건강, 평화, 인권, 여성운동과 같은 단일이슈 운동을 포함. 세로 선은 OECD 평균(뉴질랜드 제외)임.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1995-96년 자료임. 영국은 Great Britain만 함.

Source: Estimates based on Inglehart, R. et al. (2004), “Human Beliefs and Values: A Cross-cultural Sourcebook”, based on the 1999-2002 Values Surveys, Siglo XXI Editores, México.

StatLink: <http://Dx.doi.org/10.1787/418783833417>

Further reading: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aris.

## 정의와 국가간 차이

10대 출산율은 15-19세 모 1,000명당 출생건수(사산아 및 사망건수 제외)로서 정의한다(15-19세 연령별출산율). 자료는 유럽 협의회와 미국센서스국 인구과의 국제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회원국의 등록인구에 기초한 것이다.

10대의 출산은 대체적으로 어머니, 어린이 그리고 사회의 불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에 종종 정책적 문제로서 인식된다. 10대 출산은 학교중퇴, 급여가 낮은 직업 그리고 복지수급자로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10대가 출산한 아이들은 저체중 같은 보건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10대 출산의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역시 성공적이지 못하고 무관심의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10대 출산율은 평균적으로 1980년에 1000명당 34명의 출생에서 2000년대 초반 1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CO4.1). 10대 출산은 일본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10대 출산율의 수준은 국가간 차이가 크다(그림 CO4.2). 2002년 10대 출산율은 한국, 일본, 스위스에서 상당히 낮았으나 미국, 터키, 멕시코는 3개 또는 그 이상의 요인으로 인해 OECD 평균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미국의 높은 10대 출생은 주로 젊은 소녀(15-17세), 또는 일부 인종 (10대의 히스패닉과 흑인의 출생률은 백인의 출생률을 50%와 80% 정도 초과함, Census Bureau, 2003)에서 높은 출산율을 반영한다. 미국의 연구를 보면, 10대 출산의 경우 산전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는 드물고, 임신 동안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출산모의 상황은 국가간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획된 10대 임신은 거의 드물고 주로 피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부터 나타난다(UNICEF, 2001). 첫 성경험 연령이 대부분 OECD 국가에서 낮아진 반면, 10대 출산의 요인은 대체로 국가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0대 출산관련 정책은 국가마다 다르다(가족 계획). 유럽대륙에서 10대 출산 수준은 미국보다 낮고 지난 30년 넘게 출산의 감소가 더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경험은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피임의 허용이 10대 출산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또한, 10대 출산율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박탈된 집단에서 더 높다. 10대 편모가정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대 빈곤층 중 하나이며 많은 경우 유일한 주 소득원으로서 정부보조금에 의존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10대 출산의 증가 원인으로 주로 복지가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빈곤의 경험, 학교의 중퇴 그리고 교육실패는 역시 10대 출산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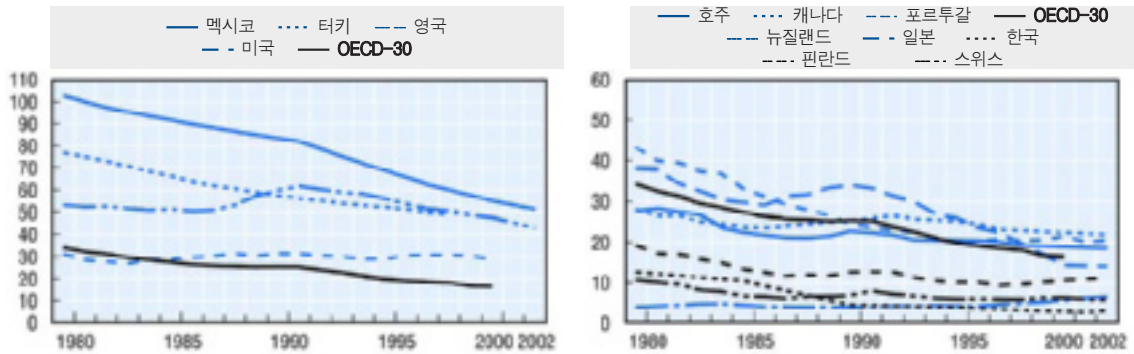
젊은 여성이 출산시기를 선택하여 자녀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어머니가 될 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에게 좋은 가정환경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하는 것 등의 정책 중재가 이 분야에서 중요하다.

**상태지표:** 상대빈곤(EQ1), 소득불평등(EQ2), 약물 이용과 관련사망(CO5).

**대응지표:** 교육수준(SS7), 공공사회지출(EQ5), 국민 의료비(HE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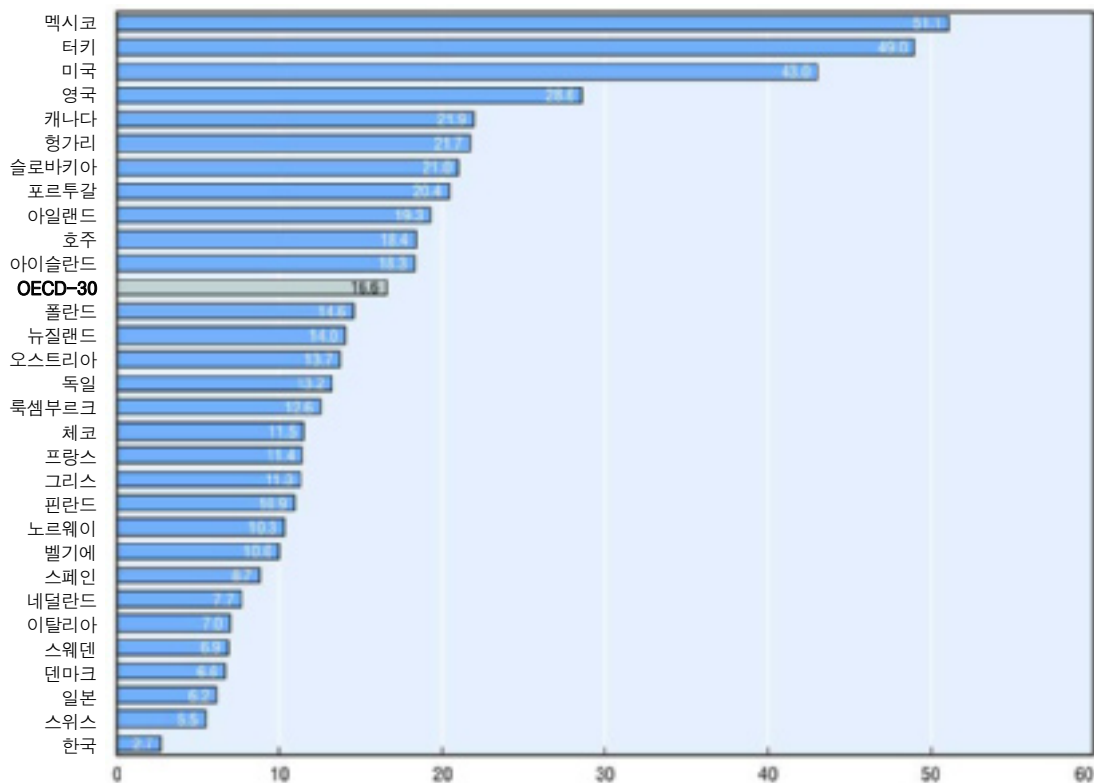
CO4.1. 10대 출산의 전반적 감소

Births to mothers aged 15-19 per 1,000 women (aged 15-19), 1980-2002



CO4.2. 10대 출산율의 국가간 큰 차이

Births to mothers aged 15-19 per 1,000 women (aged 15-19), 2002<sup>1</sup>



1.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는 2001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은 2000년, 그리스는 1999년, 벨기에는 1997년 자료임.

Source: Council of Europe (2003), Recent Demographic Developments in Europe; US Bureau of the Census, International Data Base [www.census.gov/ipc/www/idbSprd.html](http://www.census.gov/ipc/www/idbSprd.html); Jap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Vital Statistics of Japan; United States: DHHS, National Vital 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228334614167>

**Further reading:** ■ Census Bureau (2003), "Fertility of American Women: June 2002", Current Population Reports, Washington DC. (see also [www.teenpregnancy.org](http://www.teenpregnancy.org)). ■ UNICEF (2001), "A League Table of Teenage Births in Rich Nations",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약물이용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징후이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책임감을 탈출하거나 피하려는 노력이 약물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적절한 취업기회, 가족관계 유지, 개인목표의 실현을 해칠 수 있다. 불법적인 약물은 역시 범죄와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문제는 보통 노숙을 포함하며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한 “문제가 되는 이용자”(problem users)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 관련있다.

첫 번째 지표는 15-64세 연령군의 백분율로서 조사에 앞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최소한 한 번 불법 약물을 소비하였고 보고한 사람의 수를 참조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신원의 비밀이 보장되는 조사였으나 상당한 응답 편향(response bias)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약물사용의 정의, 조사의 빈도와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론의 다른 차이 등 국가간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약물관련 사망(여기서 표현된 두 번째 지표)은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약물관련 사망정보는 100만명당 약물관련 사망건수로 나타난다. EU국가에서 약물관련 사망통계는 일반적으로 약물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급성중독, 약물남용, 중독 또는 약물이 원인이 된 사망),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 후 사망까지 이르는 시간이 더 긴 경우를 말한다. 국가통계 간에 직접비교는 보고체계와 정의의 다양성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면 약물관련 사망을 통해 약물이용의 심각한 형태의 두드러진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약물이용 관련 정보를 보면 대마(cannabis), 암페타민(amphetamines), 아편(opiates), 엑스타시(ecstasy) 그리고 코카인(cocaine) 같은 다양한 물질이 언급된다. 단연 대마초는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상당히 널리 계속적으로 소비되는 약물이다. “자체 보고된” 대마초의 사용빈도(prevalence)는 상대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보다 높은 반면, 일본과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CO5.1), 이런 차이는 방법론적 차이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성인인구의 상당한 비율(2-4%사이)은 역시 엑스타시(특히 호주, 체코, 아일랜드)와 암페타민(호주와 뉴질랜드)의 이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약물이용의 추세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다. 대마초의 이용은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MCDDA, 2003).

약물관련 사망이 가져오는 위험은 약물과 이용 패턴에 따라 다양하다. 보고절차에 따른 차이 때문에

약물과 관련된 사망 추세도 국가간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 국가에서 약물관련 사망이 증가하였다(그림 CO5.2). 그 이후 국가간 양상이 보다 더 다양하게 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약물관련 사망은 안정화되었거나(예: 덴마크와 영국) 또는 감소하기도 하였다(예: 프랑스와 이태리).

몇몇 국가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아편이용이 증가하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그러하다. 다른 국가에서, 약물관련 사망의 안정화는 이용 패턴의 변화(주사의 감소 같은) 또는 정책중재(아편대체 프로그램의 확산)의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상태지표:** 기대여명(HE1), 자살(CO6).

**대응지표:** 국민의료비(HE4).

CO5.1. 약물소비의 국가간 차이

Annual prevalence of use of cannabis, amphetamines and ecstasy, latest year,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aged 15-64<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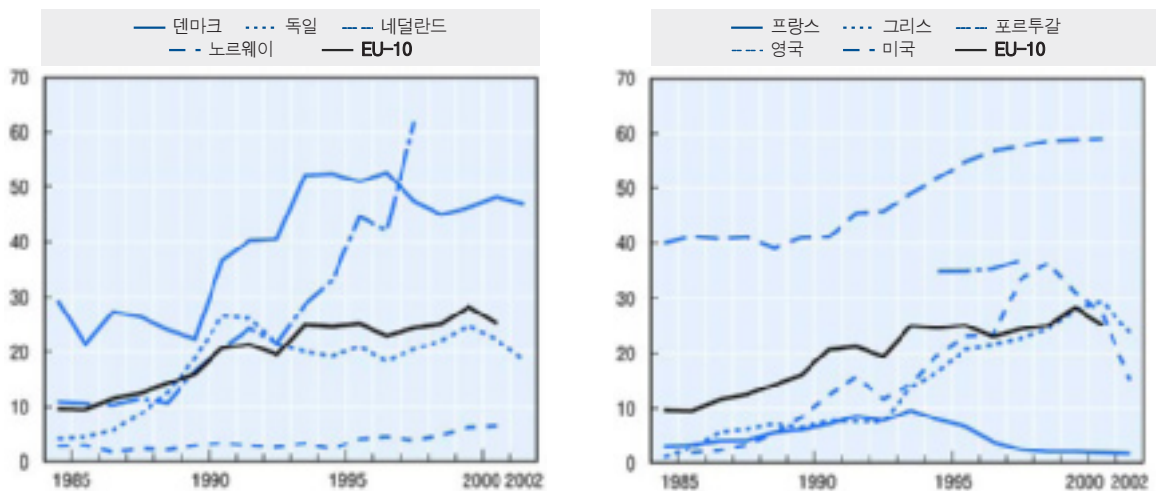
		대마	엠페타민	엑스타시
호주	2001	15.0	4.0	3.4
오스트리아	2002	5.6	0.3	0.6
벨기에	2001	6.1	0.6	0.9
캐나다(온타리오)	2000	10.8	1.0	1.8
체코	2002	10.9	1.1	2.5
덴마크	2000	6.9	1.3	0.5
핀란드	2002	2.9	0.5	0.5
프랑스	2002	9.8	0.2	0.3
독일	2000	6.0	0.6	0.7
그리스	1998	4.4	0.1	0.1
헝가리	2001	2.2	0.7	1.0
아이슬란드	2000	5.0	0.6	0.9
아일랜드	2002	9.0	1.6	3.4
이탈리아	2002	6.2	0.1	0.2
일본	2001	0.1	0.3	-
한국	late 90s	0.1	0.2	-
룩셈부르크	1999	4.0	0.4	0.4
멕시코	2002	0.6	0.1	0.0
네덜란드	2001	6.1	0.6	1.5
뉴질랜드	2001	13.4	3.4	2.2
노르웨이	1999	4.5	1.0	0.6
폴란드	2000	2.4	0.6	0.2
포르투갈	2001	3.3	0.1	0.4
슬로바키아	1999	3.6	0.4	0.8
스페인	2001	9.7	1.2	1.8
스웨덴	2000	1.0	0.1	0.2
스위스	1999	7.0	0.2	0.4
터키	2003	1.8	0.2	0.3
영국	2003	10.6	1.6	2.0
미국	2002	11.0	1.4	1.3
<b>OECD-30</b>		<b>6.0</b>	<b>0.8</b>	<b>1.0</b>

1. 덴마크는 16-64세, 독일은 18-65세, 헝가리는 18-65세, 아일랜드는 18세 이상, 이탈리아는 15-44세, 일본은 15-99세, 멕시코는 12-65세, 스웨덴은 15-75세, 영국은 16-59세, 미국은 12세 이상이며, 나머지 국가는 15-64세 자료임.

Source: UNODC (2004), World Drug Report,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www.unodc.org/unodc/en/world\\_drug\\_report.html](http://www.unodc.org/unodc/en/world_drug_report.html)).

CO5.2. 1990년대 중반 이후 약물관련 사망의 안정화

Acute drug-related deaths per 1,000,000 persons, 1985 to 2002



Source: EMCDDA (2003), Annual Report 2003: the State of the Drugs Problem in European Union and Norway,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Lisbon ([www.emcdda.eu.int](http://www.emcdda.eu.int)); United States: Office of Applied Studies,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ssociation (SAMHSA), Drug Abuse Network 1998 ([www.samsha.gov](http://www.samsha.gov)).

StatLink: <http://dx.doi.org/10.1787/184760004607>

Further reading: ■ UNODC (2004), World Drug Report,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www.unodc.org/unodc/en/world\\_drug\\_report.html](http://www.unodc.org/unodc/en/world_drug_report.html)).

## 정의와 국가간 차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사는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비록 자살의 90%가 정신장애, 특히 우울증 또는 약물 남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애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을 한 모든 사람이 “정신병”(mentally ill)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자살한 소수만이 정신병학 관찰 또는 치료 하에 있다. 자살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것은 경제, 가정 및 개인문제와 관련하여 위기의 기간(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단절, 알코올, 약물이용, 실직 등)에 더 많이 나타난다.

아래 보여주는 자살에 대한 자료는 10만명당 “사망원인”의 공식 등록에 기초한다. 많은 국가에서 자살을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유족 및 친구는 사망자가 자살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자살율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이 행정기록이기 때문에 국가간 자료의 비교성(comparability)은 필연적으로 감소된다. 아이슬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낮은 발생건수와 일부 국가의 미보고 사망자 비율의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래 정보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는 대부분은 국가간 자살 빈도수의 실제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까지 20년 넘게 평균자살율은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여 폭은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그림 CO6.1, 왼쪽 패널). 비록 자살이 남자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나, 이러한 감소는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된다. 실제로 남자의 자살율이 여자보다 2배 높다. 비록 지난 20년 넘게 연령별 차이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자살의 빈도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그림 CO6.1, 오른쪽 패널). 노인(65세 이상)의 자살율은 지난 20년 넘게 상당히 감소되어 왔고, 이는 현 사회의 노인복지 수준의 향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층의 경우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자살율은 23개 OECD 국가간 큰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지중해 국가의 자살율은 10만명당 5명 이하부터 헝가리, 일본, 벨기에, 핀란드의 10만명당 20명 이상까지 범위를 보인다(그림 CO6.2). 25세 이하 연령의 경우 핀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에서 자살을 더욱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살율은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3개

국가에서 198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대조적으로 멕시코와 남부 유럽 국가는 젊은층에서 자살율이 가장 낮다.

약물중독, 실업의 지속, 사회적 고립은 자살자의 특징이지만 근본 원인이 매우 복잡하며 단일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회와 가족환경으로부터 외부 압력과 더불어 복합적 어려움은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젊은 연령층의 극단적 반응을 낳게 할 수도 있다. 자살시도는 자살이 실제 성공하는 것보다 좀 더 흔히 볼 수 있다. 예방은 자살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하며, 청소년기의 건강, 교육, 사회화 과정을 폭 넓게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Ruzicka and Choi,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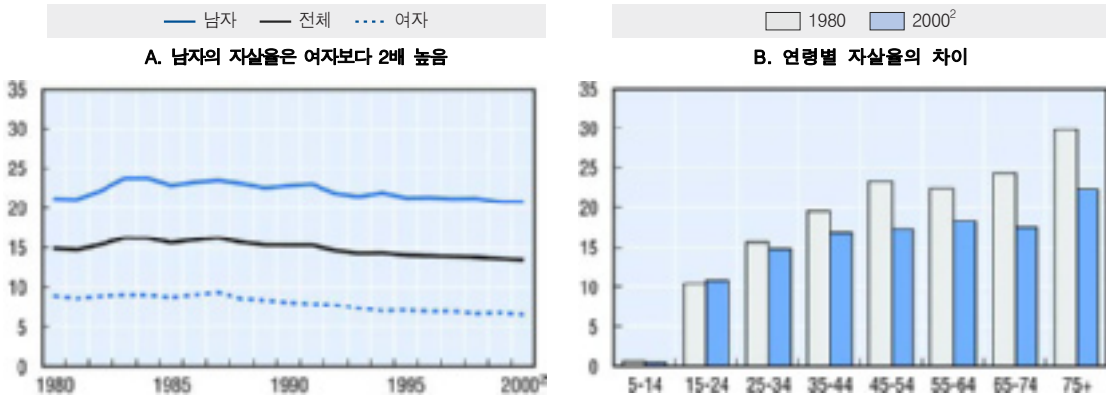
**상태지표:** 실업(SS2), 사회적 고립(CO2), 약물이용과 관련사망(CO5).

**대응지표:** 공공사회지출(EQ5), 국민의료비(HE4).



CO6.1. 지난 20년간 감소하는 자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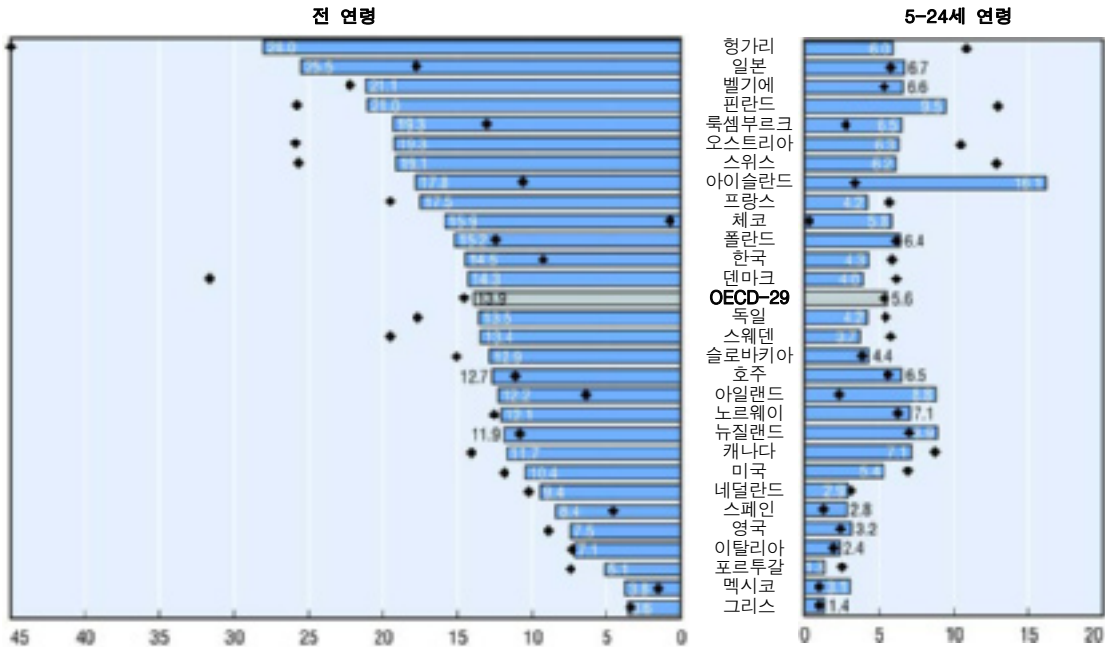
*Suicides per 100,000 persons, by gender and age, average of 23<sup>1</sup> OECD countries*



1. 벨기에, 체코, 독일, 한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함.
2.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영국은 1999년 자료임.

CO6.2. OECD 국가간 자살율의 차이

*Suicides per 100,000 persons, latest year<sup>1</sup> (bars) and 1980<sup>2</sup> (diamond markers)*



1. 벨기에는 1997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영국은 1999년,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미국은 2000년, 호주, 체코, 독일,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은 2001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는 2002년, 일본은 2003년 자료임.
2. 폴란드는 1983년, 체코는 1985년, 독일은 1990년, 슬로바키아는 1992년 자료임.

Source: World Health Organisation, "Live your Life", Mental Health Project on Suicide prevention ([www.who.int/mental\\_health](http://www.who.int/mental_health)); Jap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Vital Statistics of Japan.

StatLink: <http://dx.doi.org/10.1787/431364466722>

**Further reading:** ■ OECD (2003), Health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3, OECD, Paris; OECD (2004), OECD Health Data, OECD, Paris (see also [www.oecd.org/health/healthdata](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 Ruzicka, L. and C.Y. Choi (1999), "Youth Suicide in Australia", Working Papers in Demography, No. 78,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본 서적의 원본은 Society at a Glance-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ISBN 9264007121, 제목으로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하였습니다.

본 번역은 OECD와 합의서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The Original version of this book was published under the title Society at a Glance -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ISBN 9264007121, © 2005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Paris.  
This transla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OECD.  
It is not an official OECD translation.

[www.oecd.org/publishing/translations](http://www.oecd.org/publishing/translations) - Translated versions of OECD publications  
[www.oecdbookshop.org](http://www.oecdbookshop.org) - OECD online bookshop  
[www.sourceoecd.org](http://www.sourceoecd.org) - OECD e-library  
[www.oecd.org/oecddirect](http://www.oecd.org/oecddirect) - OECD title alerting service

발행처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발행인 이영호  
발행일 2006년 8월  
인쇄처 이문기업(주)

---

Joint OECD/Korea Regional Centre on Health  
and Social Policy  
<http://www.OECDKoreaRCHSP.org>



한 눈에 보는  
OECD 사회지표 2005

# RCHSP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신 42-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TEL : (02)355-5472 / FAX : (02)355-5970  
<http://www.OECDKoreaRCHSP.org>